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 술 보 증 기 금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기 금

2025.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개관

Ⅰ. 결산 총괄 ····· 1

1. 세 입 ····· 1
2. 세 출 ····· 2
3. 기 금 ····· 3
4. 총수입·총지출 ····· 4
5. 예비비 ····· 4
6. 재무제표 ····· 5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Ⅰ. 일반회계·지특회계·소특회계 결산 개관 ····· 17

[일반회계] ····· 17

1. 세입결산 ····· 17
2. 세출결산 ····· 19
3. 재무제표 ····· 2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5

1. 세입결산 ····· 35
2. 세출결산 ····· 37
3. 재무제표 ····· 4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44

1. 세입결산 ····· 44

2. 세출결산 ····· 44

3. 재무제표 ····· 46

Ⅱ. 검토의견 ····· 50

[일반회계] ····· 50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 50

(1) 수탁 R&D 사업에 대한 과제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수납관리 강화 필요 ····· 51

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57

(1) 국회 심의 없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비 지출 문제 ····· 57

(2) 사업출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 부적정 ····· 61

3. 여성기업육성(4234-302) ····· 65

(1) 조사연구: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 필요 ····· 66

4. 장애인기업육성(4234-303) ····· 70

(1)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사업비 반영 필요 ····· 71

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4835-301) ····· 78

(1) 혁신바우처 집행잔액에 대한 조속한 정산 필요 ····· 79

6.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 83

(1)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자부담률 상향 검토 필요 ····· 84

7.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 88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적시 인원충원 필요 ····· 89

8.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 93

(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정책패키지 간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 94

9.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98
(1)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및 투자실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필요 ····· 99
10. K-바이오 랩허브 구축(5132-314) ····· 105
(1)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연례적인 사업비 이월을 지양할 필요 ····· 105
11.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 ····· 110
(1) 경산스타트업파크: 추가적인 건립 지연이 없도록 사업 관리 필요 ····· 111
(2) 경산스타트업파크: 지방비 매칭 사업에서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 ····· 113
12. 마이스터고 육성(5441-301) ····· 117
(1)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국회 반영 신규 내역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1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2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2151-310) ····· 122
(1) 연례적 대규모 행사비용 별도 편성 필요 ····· 123
2. 지식산업센터(제주)(5151-302),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 127
(1)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마련 및 적정규모 예산 편성 필요 ····· 128
(2) 보조금 교부원칙 준수 및 보조금 집행기간을 고려한 교부 필요 ····· 131
3. 창업인프라지원(5153-301) ····· 134
(1) 창업보육센터 자격 자진반납 원인분석에 기반한 사업 재설계 필요 ···· 13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결산 개관 ····· 143
1. 총 괄 ····· 143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146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148
4. 재무제표 ····· 151

Ⅱ. 검토의견 ····· 158

1. 재도약지원자금 융자(5161-301) ····· 158
(1) 대손비율 관리 필요 ····· 158
(2)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자금 효과 감소 문제 ····· 162
2.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167
(1) 민간부문 출자비중 및 결성실적 제고 필요 ····· 167
3. 연수사업(5451-307) ····· 175
(1)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지연추진 재발방지 필요 ····· 176

기술보증기금

Ⅰ. 기금보증기금 결산 개관 ····· 183

1. 총 괄 ····· 183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186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188
4. 재무제표 ····· 191

Ⅱ. 검토의견 ····· 198

1. 민간출연금(59-594) ····· 198
(1)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199
2.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204

(1) 사고율 급증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필요 ····· 205
3.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 210
(1) 유동화증권 특수성에 기반한 사고율 예측 등 정교한 계획 수립 필요 ····· 211
4.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2441-303) ····· 216
(1) 민간투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216
(2)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필요 ····· 221
5. 팩토링금융(2441-311) ····· 224
(1) 매입심사 강화를 통해 부실 사고율 등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22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개관 ····· 231
1. 총 괄 ····· 231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233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234
4. 재무제표 ····· 237

Ⅱ. 검토의견 ····· 244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 244
(1) 안정적인 재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산정방식 개선 필요 ····· 245
(2) 재정 외 운용 부담금의 국가재정 내 편입 검토 필요 ····· 248
2.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4131-316) ····· 252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연 및 보조금 이월 주의 필요 ····· 253
3.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257
(1) 지역상권역량강화: 보조금의 이월 요건 준수 필요 ····· 258
4.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263

(1)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연 및 보조금 집행관리 주의 필요 ····· 264
5.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 270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금 집행 필요 ····· 271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적정 지원규모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작성 필요 ····· 276
6.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 281
(1) 온누리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집행 필요 ····· 282

참고자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291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292
3. 중소기업 현황 ····· 294
4. 창업기업 현황 ····· 297
5. 벤처기업 현황 ····· 298
6.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 299
7. 소상공인 현황 ····· 300
8. 전통시장 현황 ····· 302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 303
10.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 307
11. 신보, 기보, 지신보의 보증대상 및 한도, 총 보증금액 비교 ····· 309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개관

Ⅰ.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 (C-A)
일반회계	195,171	226,418	220,904	-	5,514	25,73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300	30,629	30,524	-	105	12,224
합 계	213,471	257,047	251,428	-	5,619	37,957

주: 2024년부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총괄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괄 세입 처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의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2,134억 7,100만원이며, 2,570억 4,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514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56억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변동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	불용액
		전년 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일반회계	6,193,643	-	-	1,787 △1,787	-	6,193,643	6,107,172	1,111	85,36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93,064	-	-	-	-	393,064	391,870	-	1,19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73,077	-	-	-	-	73,077	73,077	-	-
합 계	**6,659,784**	-	-	1,787 △1,787	-	**6,659,784**	**6,572,119**	**1,111**	**86,555**

주: 총계기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3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6조 6,597억 8,400만원이었고, 이 중 6조 5,72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65억 5,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3. 기　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지출액	2024년			증감	
		당초 (A)	수정 (B)	지출액 (C)	(C-B)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710,770	11,138,894	11,410,110	11,309,555	△100,555	△0.9
기술보증기금	3,864,584	3,154,269	3,154,269	4,288,085	1,133,816	35.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894,899	7,508,489	7,508,489	8,403,501	895,012	11.9
합　계	**21,470,253**	**21,801,652**	**22,072,868**	**24,001,141**	**2,028,828**	**9.2**

주: 총계기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며, 각 기금별 지출액 규모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조 3,095억 5,500만원, 기술보증기금 4조 2,880억 8,5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조 4,035억 100만원 등 총 24조 11억 4,100만원임.

4.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 기준 결산액은 9조 7,65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9,954억원(25.5%) 증가하였고, 총지출 기준 결산액은 14조 9,47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70억원(7.4%) 증가하였음.

총수입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A)	2024 예산	2024 결산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62,457	195,171	220,904	△67,286	△15.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65	18,300	30,524	4,459	17.1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3,384	-	-	△3,384	순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194,330	4,978,986	4,912,260	717,930	17.1
기술보증기금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324,925	3,276,302	4,601,314	1,276,389	38.4
합 계	**7,811,161**	**8,468,759**	**9,765,002**	**1,995,394**	**25.5**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A)	2024 예산	2024 결산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3,221,651	3,034,226	3,027,738	△193,913	△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5,807	393,064	391,870	△193,937	△33.1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218,298	73,077	73,077	△145,221	△66.5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849,952	6,611,253	6,496,196	646,244	11.0
기술보증기금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044,738	5,109,592	4,958,596	913,858	22.6
합 계	**13,920,445**	**15,221,212**	**14,947,477**	**1,027,032**	**7.4**

5. 예비비: 해당없음

6.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4		2023	
자산				
Ⅰ.유동자산		**138,733**		**130,72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694		1,408
2. 단기금융상품		43,389		33,260
3. 단기투자증권		24,759		25,723
4. 미수채권	1,987		1,794	
미수채권대손충당금	282	1,704	179	1,615
5. 단기대여금	67,620		68,985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545	66,075	1,265	67,720
6. 기타유동자산		1,111		994
Ⅱ.투자자산		**340,576**		**348,436**
1. 장기금융상품		1,417		1,893
2. 장기대여금		73,451	311,973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305,424		33,803	278,170
3. 장기투자증권	41,275	264,149		67,860
4. 기타투자자산		1,558		513
Ⅲ.일반유형자산		**14,083**		**14,277**
1. 토지		7,955		7,705
2. 건물	4,247		4,085	
건물감가상각누계액	614	3,633	436	3,649
3. 구축물	228		229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76	152	69	160
4. 기계장치	684		65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556	128	538	117
5.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	1,019		1,015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887	132	867	148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4		2023	
6. 기타일반유형자산	206		200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52	55	144	56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029		2,442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181**		**205**
1. 소프트웨어		175		195
2. 기타무형자산		6		10
Ⅵ.기타비유동자산		**4,040**		**3,718**
1. 장기미수채권	112		83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106	6	82	1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4,034		3,717
자산계		**497,613**		**497,356**
부채				
Ⅰ.유동부채		**68,676**		**70,517**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4,503		66,637
2. 기타유동부채		4,173		3,880
Ⅱ.장기차입부채		**388,558**		**379,116**
1. 공채		190,648		191,374
2. 장기차입금		197,910		187,742
Ⅲ.장기충당부채		**13,733**		**12,403**
1. 퇴직급여충당부채		715		688
2. 기타장기충당부채		13,018		11,715
Ⅳ.기타비유동부채		**1,741**		**4,262**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1,741		4,262
부채계		**472,707**		**466,298**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26,210**		**126,210**
Ⅱ.적립금 및 잉여금		**(107,578)**		**(101,516)**
Ⅲ.순자산조정		**6,274**		**6,364**
순자산계		**24,906**		**31,058**
부채와순자산계		**497,613**		**497,356**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총자산은 49조 7,613억원으로, 전기 49조 7,356억원 대비 257억원(0.1%)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재무제표(요약)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자 산	부 채	비 고
□ 총 계(A)	49,761,316	47,270,704	
① 일반회계	625,746	353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4,127	-	
③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4,000	-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4,593,570	21,006,323	
⑤ 기술보증기금	4,937,437	1,561,451	
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9,346,436	24,702,577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96,980**	**(22,595)**	**74,385**	**87,563**	**(16,831)**	**70,735**
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605	(23)	2,582	2,638	(20)	2,618
2. 중소기업행정지원	17	-	16	16	(1)	16
3. 기술금융지원	14,958	(3,949)	11,009	12,130	(3,906)	8,225
4. 창업환경조성	21,530	(5,353)	16,177	22,239	(3,518)	18,721
5. 벤처기업활성화지원	112	(23)	89	282	(32)	249
6.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480	(4,943)	7,536	9,663	(3,373)	6,290
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5,359	(36)	15,324	17,645	(69)	17,576
8. 지역중소기업육성	1,954	(195)	1,759	3,005	(167)	2,838
9.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23,311	(8,032)	15,279	14,238	(5,702)	8,536
10. 동반성장지원	357	-	357	394	-	394
11. 중소기업육성지원	1,364	-	1,364	1,423	(3)	1,421
12. 중소기업인력지원	2,933	(40)	2,893	3,890	(40)	3,851
Ⅱ.관리운영비			**3,294**			**3,118**
1.인건비			2,107			1,937
2.경비			1,187			1,181
(1)복리후생비			270			289
(2)소모품비			41			33
(3)인쇄비			10			12
(4)광고선전비			13			13
(5)지급수수료			70			69
(6)세금과공과			49			47
(7)수도광열비			19			19
(8)지급보험료			2			2
(9)피복비와급량비			-			-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10)교육훈련비			25			23
(11)지급임차료			82			71
(12)유류비			1			1
(13)수선유지비			12			11
(14)여비교통비			43			41
(15)업무추진비			42			34
(16)외주용역비			203			186
(17)출연비			51			55
(18)기타이전비용			-			3
(19)감가상각비			190			200
(20)평가손실			-			3
(21)자산처분손실			-			-
(22)국립학교운영비			49			53
(23)연구개발비			9			10
(24)기타비용			4			6
Ⅲ.비배분비용			**5,188**			**4,948**
1.재화및용역제공원가			-			-
2.대손상각비			34			26
3.이자비용			5,117			4,820
4.평가손실			9			1
5.자산처분손실			21			98
6.기타비용			8			3
Ⅳ.비배분수익			**5,309**			**4,839**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268			317
2.이자수익			1,557			1,552
3.평가이익			-			1
4.자산처분이익			1,245			287
5.기타수익			2,238			2,682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77,558**			**73,962**
Ⅵ.비교환수익 등			**8,857**			**8,544**
1.부담금수익			7,357			6,723
2.제재금수익			25			28
3.기타재원조달및이전			1,474			1,793
Ⅶ.재정운영결과(Ⅴ-Ⅵ)			**68,702**			**65,41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10조 5,463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3조 6,76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6조 8,702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26,210**	**(90,169)**	**5,057**	**41,098**
1. 보고금액	126,210	(90,169)	5,057	41,098
Ⅱ.재정운영결과		**65,418**		**65,418**
Ⅲ.재원의조달및이전		**54,071**		**54,071**
1. 재원의조달		57,828		57,828
(1) 국고수입		57,599		57,599
(2) 제재금수익		10		10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8		58
(5) 기타재원조달		160		160
2. 재원의이전		3,757		3,757
(1) 국고이전지출		2,919		2,919
(2) 무상이전지출		838		838
Ⅳ.조정항목			**1,307**	**1,307**
1. 투자증권평가손익			1,360	1,360
2. 파생상품평가손익			(5)	(5)
3. 기타순자산의증감			(49)	(49)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26,210**	**(101,516)**	**6,364**	**31,057**
Ⅵ.당기 기초순자산	**126,210**	**(101,516)**	**6,364**	**31,057**
1. 보고금액	126,210	(101,516)	6,364	31,057
Ⅶ.재정운영결과		**68,702**		**68,702**
Ⅷ.재원의조달및이전		**62,640**		**62,640**
1. 재원의조달		65,956		65,956
(1) 국고수입		65,721		65,721
(2) 제재금수익		15		15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7		57
(5) 기타재원조달		163		163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2. 재원의이전		3,316		3,316
(1) 국고이전지출		2,514		2,514
(2) 무상이전지출		802		802
Ⅸ.조정항목			**(90)**	**(90)**
1. 투자증권평가손익			(12)	(12)
2. 파생상품평가손익			(47)	(47)
3. 기타순자산의증감			(30)	(30)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126,210**	**(107,578)**	**6,274**	**24,906**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2조 4,906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3조 1,057억원 대비 6,151억원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제재금수입·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6조 5,956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6조 8,702억원,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316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17,082,066**	-
1. 국가채권현재액	16,091,953	-
2. 국유재산현재액	968,637	-
3. 물품현재액	21,476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49,761,316**	**47,270,704**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32,679,250**	**47,270,704**
1. 보고대상기관차이(A)	34,283,872	26,264,028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2,137	20,911,370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785,285)	102,069
4. 대상차이(D)	178,526	(6,763)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자산 : 34,283,872,174,920원
  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9,346,435,518,909원
  2) 기술보증기금 : 4,937,436,656,011원
- 부채 : 26,264,027,888,045원
  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4,702,576,557,727원
  2) 기술보증기금 : 1,561,451,330,318원

②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
- 자산 : 2,136,856,530원
  1) 미수채권 : 2,136,856,530원
- 부채 : 20,911,370,000,000원
  1) 정부내장기예수금 : 20,911,370,000,000원

③ 결산조정항목 차이
- 자산 : (-)1,785,284,680,364원

1) 미수채권 : 16,197,849,223원
2) 단기대여금 : (-)54,574,802,042원
3) 기타유동자산 : (-)30,334,850,719원
4) 장기대여금 : (-)1,718,654,588,028원
5) 건물 : 1,781,390,390원
6) 기계장치 : 122,845,270원
7)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55,932,000원
8) 기타일반유형자산 : 121,380,000원
9)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163,542원

- 부채 : 102,068,788,982원
1) 기타유동부채 : 94,044,798,042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 6,773,257,807원
3) 기타장기충당부채 : 1,250,733,133원

④ 대상차이

- 자산 : 178,525,694,125원
1) 현금및현금성자산 : 895,532,507원
2) 기타유동자산 : 78,920원
3) 기타투자자산 : 1,260,475,752원
4)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176,369,606,946원

- 부채 : (-)6,762,949,777원
1) 기타유동부채 : 10,308,030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 (-)6,773,257,807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Ⅰ. 일반회계·지특회계·소특회계 결산 개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195,171**	**226,418**	**31,247**	
재산수입	58,660	61,752	3,092	
- 토지대여료	-	0.03	0.03	지방청 행정재산(토지) 대여에 따른 수입
- 건물대여료	350	456	106	지방청 행정재산(건물) 대여에 따른 수입
- 기타관유물대여료	6	1.6	△4.4	관사 대여에 따른 수입
- 기타재산이자수입	58,304	61,294	2,990	출연·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경상이전수입	136,411	164,608	28,197	
- 과태료	650	252	△398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 과징금	761	2,947	2,186	출연·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과징금
- 위약금	-	0.8	0.8	지체상금에 따른 일시적 수입
- 가산금	-	7	7	과징금·과태료 등의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135,000	161,401	26,401	출연·보조금 사업의 정산·환수금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	58	△2	
- 기타잡수입	60	57	△3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 기타영업외잡수익	-	1	1	
관유물매각대	40	-	△40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0	-	△40	노후자산 및 불용물품 매각 수요 감소

주: 합계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951억 7,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64억 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312억 4,700만원(16.0%) 증액하여 징수결정하였으며,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1,614억 1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612억 9,400만원) 등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 사유
합 계	195,171	226,418	220,904	-	5,514	
기타경상이전수입[1]	135,000	161,401	158,515	-	2,886	출연·보조사업 미환수금 등 2,743 소송비용액 미회수금 143
기타재산이자수입[2]	58,304	61,294	60,857	-	437	출연·보조사업 발생이자 등 437
과징금	761	2,947	960	-	1,987	R&D 제재부가금 등 580
과태료	650	252	102	-	150	수출사업 제재부가금 등 1,407
위약금	-	0.8	0.8	-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등 150
가산금	-	7	-	-	7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 가산금 7
토지대여료	-	0.03	0.03	-	-	
건물대여료	350	456	409	-	47	건물대여료 미납 47
기타관유물대여료	6	1.6	1.6	-	-	
기타잡수입	60	57	57	-	-	
기타영업외잡수익	-	1	1	-	-	
고정자산매각대	40	-	-	-	-	

주: 합계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51억 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12억 4,700만원이 증가한 2,264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6%에 해당하는 2,209억 4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2.4%에 해당하는 55억 1,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주요 미수납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28억 8,600만원), 과징금(19억 8,700만원), 과태료(1억 5,000만원) 등이 있으며 주로 납기미도래, 납부자의 경영상황 악화 및 징수유예에 따른 분할 납부 등으로 발생하였음.

1)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 반환, 정산잔액 등으로 구성
2)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4년도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6조 1,936억 4,300만원이고, 이 중 6조 1,071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되었으며, 853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6,193,643	-	-	1,787 △1,787	-	6,193,643	6,107,172	1,111	85,361
<무역및투자유치(113)>	213,586	-	-	-	-	213,586	213,531	-	55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3100)	213,586	-	-	-	-	213,586	213,531	-	55
수출지원기반활용 (3131-301)	111,860	-	-	-	-	111,860	111,838	-	22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3133-301)	91,499	-	-	-	-	91,499	91,466	-	33
국제 중소기업 협력ODA (ODA)(3133-305)	10,227	-	-	-	-	10,227	10,227	-	-
<산업·중소기업일반(116)>	3,318,537	-	-	1,319 △1,319	-	3,318,542	3,234,692	-	83,840
□중소기업행정지원(7200)	159,120	-	-	1,319 △1,319	-	159,125	155,259	-	3,856
인건비(2개 사업) (7201-110, 7209-130)	112,852	-	-	200 △200	-	112,852	109,962	-	2,890
기본경비(89개 사업) (7211 27개, 7224 59개, 7,225 3개)	28,655	-	-	1,073 △1,073	-	28,660	28,118	-	532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7232-503)	6,928	-	-	-	-	6,928	6,909	-	19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7233-301)	4,052	-	-	46 △46	-	4,052	3,915	-	137
관사구입및임차(7241-304)	345	-	-	-	-	345	280	-	65
청사시설관리(7241-306)	6,288	-	-	-	-	6,288	6,075	-	213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	3,159,417	-	-	-	-	3,159,417	3,079,433	-	79,984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전출(8420-881)	1,524,368	-	-	-	-	1,524,368	1,444,384	-	79,98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전출(8420-882)	1,635,049	-	-	-	-	1,635,049	1,635,049	-	-
<창업및벤처(118)>	716,217	-	-	-	-	716,217	716,217	-	-
□창업환경조성(5100)	706,371	-	-	-	-	706,371	706,371	-	-
창업저변확대(5132-301)	23,018	-	-	-	-	23,018	23,018	-	-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377,656	-	-	-	-	377,656	377,656	-	-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206,506	-	-	-	-	206,506	206,506	-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5132-314)	971	-	-	-	-	971	971	-	-
중소기업재기지원(5133-301)	16,629	-	-	-	-	16,629	16,629	-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D(R&D)(5133-302)	1,667	-	-	-	-	1,667	1,667	-	-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	77,424	-	-	-	-	77,424	77,424	-	-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5134-307)	1,000	-	-	-	-	1,000	1,000	-	-
글로벌창업허브구축(5134-311)	1,500	-	-	-	-	1,500	1,500	-	-
□벤처기업활성화지원(5200)	9,846	-	-	-	-	9,846	9,846	-	-
벤처기업경쟁력강화(5231-301)	6,179	-	-	-	-	6,179	6,179	-	-
벤처캐피탈선진화(5231-302)	2,786	-	-	-	-	2,786	2,786	-	-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5231-307)	881	-	-	-	-	881	881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119)>	1,945,303	-	-	468 △468	-	1,945,303	1,942,732	1,111	1,46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1200)	100,000	-	-	-	-	100,000	100,000	-	-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80,000	-	-	-	-	80,000	80,000	-	-
기술보증기금출연(1231-882)	20,000	-	-	-	-	20,000	20,000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2100)	1,426,072	-	-	-	-	1,426,072	1,425,458	-	614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	219,054	-	-	-	-	219,054	218,440	-	614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2111-304)	10,888	-	-	-	-	10,888	10,888	-	-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2111-305)	6,900	-	-	-	-	6,900	6,900	-	-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2111-308)	400	-	-	-	-	400	400	-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2111-312)	2,000	-	-	-	-	2,000	2,000	-	-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12,959	-	-	-	-	12,959	12,959	-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2131-304)	3,146	-	-	-	-	3,146	3,146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423,205	-	-	-	-	423,205	423,205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2134-303)	94,210	-	-	-	-	94,210	94,210	-	-
공정·품질기술개발(R&D)(2134-305)	12,394	-	-	-	-	12,394	12,394	-	-
창업성장기술개발(R&D)(2134-309)	531,683	-	-	-	-	531,683	531,683	-	-
중소기업R&D역량제고(R&D)(2134-310)	1,000	-	-	-	-	1,000	1,000	-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2134-377)	43,665	-	-	-	-	43,665	43,665	-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R&D)(2134-398)	3,622	-	-	-	-	3,622	3,622	-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2134-416)	3,317	-	-	-	-	3,317	3,31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2134-422)	38,644	-	-	-	-	38,644	38,644	-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R&D)(2134-429)	863	-	-	-	-	863	863	-	-
기술공유형통합기술개발(R&D)(2134-465)	4,595	-	-	-	-	4,595	4,595	-	-
디지털전환통합기술개발(R&D)(2134-467)	2,756	-	-	-	-	2,756	2,756	-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2135-503)	3,412	-	-	-	-	3,412	3,41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2136-501)	7,359	-	-	-	-	7,359	7,359	-	-
□지역중소기업육성(3300)	**15,680**	**-**	**-**	**-**	**-**	**15,680**	**15,656**	**-**	**24**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3335-304)	12,385	-	-	-	-	12,385	12,361	-	24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기반구축(3337-307)	3,295	-	-	-	-	3,295	3,295	-	-
□동반성장지원(4200)	**35,672**	**-**	**-**	**-**	**-**	**35,672**	**35,660**	**-**	**12**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4231-301)	14,670	-	-	-	-	14,670	14,658	-	12
여성기업육성(4234-302)	10,485	-	-	-	-	10,485	10,485	-	-
장애인기업육성(4234-303)	10,517	-	-	-	-	10,517	10,517	-	-
□중소기업육성지원(4800)	**136,564**	**-**	**-**	**468 △468**	**-**	**136,564**	**136,102**	**-**	**462**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4834-305)	9,506	-	-	20 △20	-	9,506	9,449	-	57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사업(4835-301)	55,805	-	-	-	-	55,805	55,805	-	-
마케팅지원사업(4835-305)	26,677	-	-	-	-	26,677	26,568	-	109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5,722	-	-	-	-	5,722	5,704	-	18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4837-301)	16,480	-	-	-	-	16,480	16,480	-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4838-301)	3,928	-	-	448 △448	-	3,928	3,859	-	69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14,241	-	-	-	-	14,241	14,237	-	4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4839-472)	4,205	-	-	-	-	4,205	4,000	-	205
□중소기업인력지원(5400)	**231,315**	**-**	**-**	**-**	**-**	**231,315**	**229,856**	**1,111**	**348**
산학협력인력양성(5431-301)	48,185	-	-	-	-	48,185	48,111	-	74
인력유입인프라조성(5431-302)	123,339	-	-	-	-	123,339	123,339	-	-
마이스터고육성(5441-301)	25,426	-	-	-	-	25,426	24,041	1,111	274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5461-301)	34,365	-	-	-	-	34,365	34,365	-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5461-301)	34,365	-	-	-	-	34,365	34,365	-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 산 액	5,547,684	7,090,786	8,689,816	4,962,237	6,193,643
전 용 액	3,265 △3,265	2,430 △2,430	101,015 △101,015	2,188 △2,188	1,787 △1,787
이 용 액	-	-	-	-	-
예 비 비	211,568	4,046,857	1,378,500	-	-
전 년 도 이 월 액	4,596	8,121	258	3,270	-
추 경	8,029,210	10,513,041	38,180,528	-	-
예산현액	13,793,058	21,658,805	48,249,102	4,965,506	6,193,643
지 출 액	13,779,432	21,646,677	48,240,022	4,955,839	6,107,172
다음연도 이 월 액	8,121	258	3,269	-	1,111
불 용 액	5,505	11,870	5,810	9,668	85,361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해당없음

② 이 용: 해당없음

③ 이 체: 해당없음

④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본경비 등	±1,273	- 기본경비(±1,073) - 인건비(±200)
사업비	±514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46)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20)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및옴부즈만운영(±448)
합 계	±1,787	

2024년도 일반회계 전용액은 17억 8,700만원으로,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부족액 마련을 위해 12억 7,300만원, 청년인턴 기관부담금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비목 변경 등을 위해 5억 1,400만원을 전용하였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1,111	- 마이스터고육성(1,111)
합 계	1,111	

2024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100만원으로,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에서 공공건축 관련 법률에 따른 설계 진행을 위한 법정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11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본부·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428	- 본부인건비(298) - 국립마이스터고인건비(2,592) - 기본경비(538)
사업비 집행잔액	81,933	- 수출지원기반활용(22)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33) - 중소벤처행정정보화(19)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137) - 관사구입 및 임차(65) - 청사시설관리(213)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전출(79,984)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614) -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24) -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12)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57) - 마케팅지원사업(109) - 공공구매제도운영(18)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및옴부즈만운영(69) -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205) - 산학협력인력양성(74) - 마이스터고육성(274)
합 계	**85,361**	

202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853억 6,1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본부·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4억 2,8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819억 3,300만원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4		2023	
자산				
Ⅰ.유동자산		**75**		**41**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55		44	
미수채권대손충당금	28	28	18	26
3. 기타유동자산		47		15
Ⅱ.투자자산		**13**		**12**
1. 기타투자자산		13		12
Ⅲ.일반유형자산		**6,119**		**6,395**
1. 토지		4,777		4,778
2. 건물	1,303		1,293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53	1,050	178	1,115
3. 구축물	130		131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55	75	41	90
4. 기계장치	311		288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09	102	205	83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271		275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11	60	212	63
6. 기타일반유형자산	206		200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52	55	144	56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09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32**		**52**
1. 소프트웨어		26		42
2. 기타무형자산		6		10

(단위: 억원)

	2024	2023
Ⅵ.기타비유동자산	**19**	**48**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19	48
자산계	**6,257**	**6,549**
부채		
Ⅰ.유동부채	**4**	**3**
1. 기타유동부채	4	3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4**	**3**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2,030**	**2,030**
Ⅱ.적립금 및 잉여금	**1,637**	**1,913**
Ⅲ.순자산조정	**2,587**	**2,603**
순자산계	**6,254**	**6,546**
부채와순자산계	**6,257**	**6,549**

일반회계의 2024년도 총자산은 6,257억원으로 전기 6,549억원 대비 292억원(4.4%)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276억원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임. 2024년도 총부채는 4억원으로 전기 3억원 대비 1억원(24.4%)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타유동부채가 1억원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292억원(4.5%) 감소한 6,254억원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27,939	-	27,939	29,840	-	29,840
1.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134	-	2,134	2,167	-	2,167
2.창업환경조성	7,064	-	7,064	7,069	-	7,069
3.벤처기업활성화지원	102	-	102	266	-	266
4.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	-	-	350	-	350
5.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4,255	-	14,255	14,811	-	14,811
6.지역중소기업육성	162	-	162	187	-	187
7.동반성장지원	357	-	357	394	-	394
8.중소기업육성지원	1,364	-	1,364	1,393	-	1,393
9.중소기업인력지원	2,501	-	2,501	3,202	-	3,202
Ⅱ.관리운영비			1,832			1,775
1.인건비			1,166			1,112
2.경비			666			662
(1)복리후생비			188			189
(2)소모품비			28			18
(3)인쇄비			7			9
(4)광고선전비			2			2
(5)지급수수료			14			16
(6)세금과공과			10			10
(7)수도광열비			11			11
(8)지급보험료			1			-
(9)피복비와급량비			-			-
(10)교육훈련비			1			1
(11)지급임차료			37			35
(12)유류비			-			1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13)수선유지비			10			8
(14)여비교통비			30			29
(15)업무추진비			13			12
(16)외주용역비			79			68
(17)출연비			51			55
(18)감가상각비			123			131
(19)자산처분손실			-			-
(20)국립학교운영비			49			53
(21)연구개발비			8			9
(22)기타비용			3			5
Ⅲ.비배분비용			**14**			**4**
1.대손상각비			10			4
2.자산처분손실			-			-
3.기타비용			4			-
Ⅳ.비배분수익			**2,208**			**2,646**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4			4
2.이자수익			23			3
3.자산처분이익			1			2
4.기타수익			2,180			2,637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7,577**			**28,973**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7,577**			**28,973**

일반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2조 9,785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2,208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2조 7,577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2,030**	**1,904**	**2,621**	**6,554**
1. 보고금액	2,030	1,904	2,621	6,554
Ⅱ.재정운영결과		**28,973**		**28,973**
Ⅲ.재원의조달및이전		**28,982**		**28,982**
1. 재원의조달		49,786		49,786
(1) 국고수입		49,558		49,558
(2) 제재금수익		10		10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8		58
(5) 기타재원조달		160		160
2. 재원의이전		20,804		20,804
(1) 국고이전지출		2,625		2,625
(2) 무상이전지출		18,179		18,179
Ⅳ.조정항목			**(18)**	**(18)**
1. 자산재평가이익			(18)	(18)
Ⅴ.전기기말순자산(Ⅰ-Ⅱ+Ⅲ+Ⅳ)	**2,030**	**1,913**	**2,603**	**6,546**
Ⅵ.당기 기초순자산	**2,030**	**1,913**	**2,603**	**6,546**
1. 보고금액	2,030	1,913	2,603	6,546
Ⅶ.재정운영결과		**27,577**		**27,577**
Ⅷ.재원의조달및이전		**27,301**		**27,301**
1. 재원의조달		61,306		61,306
(1) 국고수입		61,072		61,072
(2) 제재금수익		15		15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7		57
(5) 기타재원조달		163		163
2. 재원의이전		34,005		34,005
(1) 국고이전지출		2,209		2,209
(2) 무상이전지출		31,796		31,796
Ⅸ.조정항목			**(16)**	**(16)**
1. 자산재평가이익			(16)	(16)
Ⅹ.당기 기말순자산(Ⅵ-Ⅶ+Ⅷ+Ⅸ)	**2,030**	**1,637**	**2,587**	**6,254**

일반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6,254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6,546억원 대비 292억원(4.5%)이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6조 1,306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2조 7,577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조 4,005억원, 조정항목 16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622,975**	**-**
1. 국가채권현재액	3,377	-
2. 국유재산현재액	598,123	-
3. 물품현재액	21,475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625,746**	**352**
Ⅲ. 차이내역(Ⅱ-Ⅰ=A+B+C+D+E)	**2,772**	**352**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2,137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629)	7,116
4. 대상차이(D)	1,264	(6,763)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없음

②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
- 자산 : 2,136,856,530원
  1) 미수채권 : 2,136,856,530원

③ 결산조정항목 차이
- 자산 : (-)629,071,493원
  1) 미수채권 : (-)2,735,780,120원
  2) 기타유동자산 : 24,997,425원
  3) 건물 : 1,781,390,390원
  4) 기계장치 : 122,845,270원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 55,932,000원
  6) 기타일반유형자산 : 121,380,000원

7)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 163,542원
- 부채 : 7,115,525,136원
1) 기타유동부채 : 342,267,329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 6,773,257,807원

④ 대상차이
- 자산 : 1,263,911,014원
1) 현금및현금성자산 : 422원
2) 기타유동자산 : 78,920원
3) 기타투자자산 : 1,260,475,752원
4)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3,355,920원
- 부채 : (-)6,763,042,177원
1) 기타유동부채 : 10,215,630원
2) 퇴직급여충당부채 : (-)6,773,257,807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18,300**	**30,629**	**12,329**	
기타재산이자수입	1,300	5,157	3,857	출연·보조금 사업 발생이자 증가
과징금	-	58	58	
기타경상이전수입	17,000	25,414	8,414	출연·보조금 사업 반환금 증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8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6억 2,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123억 2,900만원(67.2%)을 증액하여 징수결정하였으며,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254억 1,4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51억 5,700만원)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 사유
합 계	**18,300**	**30,629**	**30,524**	**-**	**105**	
기타경상이전수입[3]	17,000	25,414	25,318	-	96	-보조금 집행 잔액 96
과징금	-	58	58	-	-	
기타재산이자수입[4]	1,000	5,157	5,148	-	9	-보조금 사업 정산 이자 9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83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2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06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99.6%에 해당하는 305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음.

3)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 반환, 정산잔액 등으로 구성
4)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 3,930억 6,400만원 중 3,918억 5,800만원이 지출되고 11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393,064	-	-	-	-	393,064	391,858	-	1,194
□지역자율계정	152,668	-	-	-	-	152,668	152,667	-	1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63,770	-	-	-	-	63,770	63,770	-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자율)(3337-306)	4,000	-	-	-	-	4,000	4,000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4154-301)	60,041	-	-	-	-	60,041	60,041	-	-
상권활성화 사업(자율)(4154-305)	24,857	-	-	-	-	24,857	24,856	-	1
□지역지원계정	212,265	-	-	-	-	212,265	212,261	-	4
창업인프라지원(5153-301)	8,468					8,468	8,464	-	4
산학연CollaboR&D(R&D)(2151-302)	27,143	-	-	-	-	27,143	27,143	-	-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R&D)(2151-309)	6,653	-	-	-	-	6,653	6,653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2151-310)	7,514	-	-	-	-	7,514	7,514	-	-
지역특화산업육성(3336-302)	80,181	-	-	-	-	80,181	80,181	-	-
지역특화산업육성+(R&D)(3336-304)	46,787	-	-	-	-	46,787	46,787	-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3336-334)	1,021	-	-	-	-	1,021	1,021	-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3339-305)	19,619	-	-	-	-	19,619	19,619	-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3339-306)	9,918	-	-	-	-	9,918	9,918	-	-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3339-310)	4,961	-	-	-	-	4,961	4,961	-	-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574	-	-	-	-	17,574	17,574	-	-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7251-301)	1,675	-	-	-	-	1,675	1,675	-	-
창업인프라지원(제주)(5151-301)	137	-	-	-	-	137	137	-	-
지식산업센터(제주)(5151-302)	4,249	-	-	-	-	4,249	4,249	-	-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3336-302)	5,013	-	-	-	-	5,013	5,013	-	-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R&D)(3336-304)	3,620	-	-	-	-	3,620	3,620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제주)(4154-301)	2,880	-	-	-	-	2,880	2,880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0,557	-	-	-	-	10,557	9,374	-	1,189
창업인프라지원(세종)(5154-301)	62	-	-	-	-	62	62	-	-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5,200	-	-	-	-	5,200	5,200	-	-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3336-302)	2,796	-	-	-	-	2,796	2,796	-	-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3336-320)	1,310	-	-	-	-	1,310	1,310	-	-
상권활성화 사업(세종)(4156-305)	1,189	-	-	-	-	1,189	-	-	1,189

(2) 예산변경 내역: 해당없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없음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1,194	- 상권활성화 사업(자율)(1) - 창업인프라지원(4) - 상권활성화 사업(세종)(1,189)
합 계	1,194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액은 상권활성화 사업(자율, 세종),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11억 9,400만원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4		2023	
자산				
Ⅰ.유동자산		**1**		**10**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1		10	
미수채권대손충당금	-	1	-	10
Ⅱ.투자자산		**-**		**-**
Ⅲ.일반유형자산		**441**		**167**
1.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441		167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계		**441**		**177**
부채				
Ⅰ.유동부채		**-**		**-**
1. 기타유동부채		-		-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441**		**177**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441**		**177**
부채와순자산계		**441**		**1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4년도 총자산은 441억원으로 전기 177억원 대비 264억원(149.7%)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3,645	(296)	3,349	5,691	(265)	5,426
1.중소기업행정지원	17	-	16	16	(1)	16
2.창업환경조성	819	(40)	779	1,524	(62)	1,462
3.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413	(36)	377	834	(35)	799
4.지역중소기업육성	1,792	(195)	1,597	2,819	(167)	2,651
5.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604	(25)	579	498	-	498
Ⅱ.관리운영비			-			-
Ⅲ.비배분비용			-			-
1.대손상각비			-			-
Ⅳ.비배분수익			-			5
1.기타수익			-			5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349			5,421
Ⅶ.재정운영결과(Ⅴ-Ⅵ)			3,349			5,4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3,645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29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3,349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1	-	1
1. 보고금액	-	1	-	1
Ⅱ.재정운영결과		5,421		5,421
Ⅲ.재원의조달및이전		5,597		5,597
1. 재원의조달		5,858		5,858
(1) 국고수입		5,858		5,858
2. 재원의이전		261		261
(1) 국고이전지출		261		261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기말순자산(Ⅰ-Ⅱ+Ⅲ+Ⅳ)	-	177	-	177
Ⅵ.당기 기초순자산	-	177	-	177
1. 보고금액	-	177	-	177
Ⅶ.재정운영결과		3,349		3,349
Ⅷ.재원의조달및이전		3,614		3,614
1. 재원의조달		3,919		3,919
(1) 국고수입		3,919		3,919
(2) 제재금수익		1		1
2. 재원의이전		305		305
(1) 국고이전지출		305		305
Ⅸ.조정항목	-	-	-	-
Ⅹ.당기기말순자산(Ⅵ-Ⅶ+Ⅷ+Ⅸ)	-	441	-	4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441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177억원 대비 264억원(149.7%)이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은 재정운영결과 3,349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05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919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106**	**-**
1. 국가채권현재액	106	-
2. 국유재산현재액	-	-
3. 물품현재액	-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44,127**	**-**
Ⅲ. 차이내역(Ⅱ-Ⅰ=A+B+C+D+E)	**44,021**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31)	-
4. 대상차이(D)	44,052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해당없음

②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
- 해당없음

③ 결산조정항목 차이
- 자산 : (-)31,032,643원
  1) 미수채권 : (-)31,032,643원

④ 대상차이
- 자산 : 44,052,000,005원
  1) 현금및현금성자산 : 5원
  2)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44,052,000,000원
- 부채 : 92,400원
  1) 기타유동부채 : 92,400원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세외수입 징수 등 총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내역이 없음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730억 7,7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73,077	-	-	-	-	73,077	73,077	-	-
<창업및벤처(118)>	4,000	-	-	-	-	4,000	4,000	-	-
□벤처기업활성화지원(5200)	4,000	-	-	-	-	4,000	4,000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64-301)	4,000	-	-	-	-	4,000	4,000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119)>	69,077	-	-	-	-	69,077	69,077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2100)	69,077	-	-	-	-	69,077	69,077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134-302)	40,604	-	-	-	-	40,604	40,604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2134-303)	8,465	-	-	-	-	8,465	8,465	-	-
창업성장기술개발(R&D) (2134-309)	1,983	-	-	-	-	1,983	1,983	-	-

구 분	당초	전년 이월	예산변동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R&D)(2134-352)	10,389	-	-	-	-	10,389	10,389	-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R&D)(2134-353)	4,354	-	-	-	-	4,354	4,354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2134-354)	3,282	-	-	-	-	3,282	3,282	-	-

(2) 예산변경 내역: 해당없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없음

(5) 불용내역: 해당없음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4	2023
자산		
Ⅰ.유동자산	-	-
Ⅱ.투자자산	2,140	2,100
1. 장기투자증권	2,140	2,100
Ⅲ.일반유형자산	-	-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계	2,140	2,100
부채		
Ⅰ.유동부채	-	-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2,140	2,100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2,140	2,100
부채와순자산계	2,140	2,1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도 총자산은 2,140억원으로 전기 2,100억원 대비 40억원(1.9%)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691	-	691	1,883	(33)	1,850
1.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691	-	691	1,883	(33)	1,850
Ⅱ.관리운영비			-			-
Ⅲ.비배분비용			-			-
Ⅳ.비배분수익			-			1
1.기타수익			-			1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691			1,849
Ⅶ.재정운영결과(Ⅴ-Ⅵ)			691			1,84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24년도 재정운영에 691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재정운영결과 691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1,800	-	1,800
1. 보고금액	-	1,800	-	1,800
Ⅱ.재정운영결과		1,849		1,849
Ⅲ.재원의조달및이전		2,149		2,149
1. 재원의조달		2,183		2,183
(1) 국고수입		2,183		2,183
2. 재원의이전		34		34
(1) 국고이전지출		34		34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2,100	-	2,100
Ⅵ.당기 기초순자산	-	2,100	-	2,100
1. 보고금액	-	2,100	-	2,100
Ⅶ.재정운영결과		691		691
Ⅷ.재원의조달및이전		731		731
1. 재원의조달		731		731
(1) 국고수입		731		731
Ⅸ.조정항목	-	-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2,140	-	2,14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4년도 기말순자산은 2,140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2,100억원 대비 40억원(1.9%)이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691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731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214,000**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214,000	-
3. 물품현재액	-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214,000**	**-**
Ⅲ. 차이내역(Ⅱ-Ⅰ=A+B+C+D+E)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
4. 대상차이(D)	-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차이 없음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은 일반회계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나뉘어 총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는 16개 사업 1조 2,043억 1,600만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6개 사업 690억 7,7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9개 사업 1,186억 2,8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1개 사업 11억 9,900만원으로, 전체 R&D 사업예산 총 1조 3,932억 2,000만원 중 1조 3,93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총괄 결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 수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계획액)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계획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A)							
일반회계	16	1,204,316	1,204,316	-	-	1,204,316	1,204,316	-	-	1,344,215
소부장 특별회계	6	69,077	69,077	-	-	69,077	69,077	-	-	35,711
지특회계	9	118,628	118,628	-	-	118,628	118,628	-	-	137,025
소진기금	1	1,199	1,199	-	-	1,199	1,199	-	-	-
계	32	1,393,220	1,393,220	-	-	1,393,220	1,393,220	-	-	1,516,951

□ 검토의견

(1) 수탁 R&D 사업에 대한 과제 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수납 관리 강화 필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 따라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의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탁받아 기획·평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5],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환수결정액의 미수납이 과다하고, R&D 사

5) 시정요구명: (34)R&D 사업 종료과제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업 종료과제의 정산 및 정산대상액의 국고반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서도[6], R&D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장기미납된 R&D 제재부가금의 징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주의'를 요구한 바 있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종료된 과제의 미반납현황 중 2024년까지 연도별로 정산금이 미반납된 과제 건수는 총 753건으로, 미반납액이 296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그 중에는 2020년 및 2021년 정산이 종료된 과제도 125건(34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정산금 반납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R&D 종료과제의 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산학연협력기술개발 (2151-301)	294	6	-	-	-	-	-	-	-	-	294	6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2134-303)	242	3	837	17	1,071	20	1,625	26	3,047	41	6,822	107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2134-302)	219	2	93	5	1,379	16	988	17	2,787	58	5,466	98
창업성장기술개발 (2134-309)	267	14	809	35	1,363	40	2,709	85	5,054	128	10,202	302
공정품질기술개발 사업(2134-305)	170	18	193	11	133	9	80	7	159	9	735	54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2134-321)	-	-	-	-	-	-	-	-	-	-	-	-
산학연 Collabo R&D(2151-302)	49	6	28	5	96	7	250	13	32	6	455	37
중소기업R&D역량 제고(2134-310)	-	-	-	-	17	2	96	7	55	2	168	11

6) 시정요구명: (59)R&D 관련 제재부가금 징수비목 정정 및 장기미납액 징수 제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2134-342)	-	-	189	2	3	2	-	-	-	-	192	4
창업성장기술개발 (소특)(2134-309)	-	-	-	-	1,036	13	58	3	264	3	1,358	19
해외인증규격적합 제품기술개발 (R&D)(2134-345)	-	-	12	1	-	-	30	3	-	-	42	4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2134-350)	-	-	-	-	6	1	-	-	-	-	6	1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2134-340)	-	-	-	-	21	2	11	1	-	-	32	3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2134-352)	-	-	-	-	1	1	55	1	159	5	215	7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2134-341)	-	-	-	-	223	2	-	-	-	-	223	2
예비가젤형기술개발 (2134-346)	-	-	-	-	563	3	100	1	-	-	663	4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2151-307)	-	-	-	-	10	1	-	-	-	-	10	1
현장수요형 스마트 공장 기술개발사업 (2134-318)	-	-	-	-	3	1	-	-	-	-	3	1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개발(소특) (2134-303)	-	-	-	-	491	2	1	1	-	-	492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생활혁신형기술 개발(4131-320)	-	-	-	-	163	2	-	-	-	-	163	2
지역중소기업공동 수요기술개발 (2151-306)	-	-	-	-	-	-	277	7	-	-	277	7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2134-354)	-	-	-	-	-	-	218	2	-	-	218	2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소특) (2134-302)	-	-	-	-	-	-	97	2	31	1	128	3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2134-384)	-	-	-	-	-	-	171	3	-	-	171	3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2134-388)	-	-	-	-	-	-	44	1	7	2	51	3
글로벌창업기업기술 개발(2134-382)	-	-	-	-	-	-	264	1	-	-	264	1
현장수요맞춤형방역 물품기술개발 (2134-371)	-	-	-	-	-	-	18	4	-	-	18	4
지역특화산업육성 +(R&D)(3336-304)	-	-	-	-	-	-	324	11	60	3	384	14
산업단지대개조지역 산업R&D(3336-327)	-	-	-	-	-	-	3	1	-	-	3	1
지역특화산업육성 +(R&D)(3336-320)	-	-	-	-	-	-	-	-	-	-	-	-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R&D)(2134-416)	-	-	-	-	-	-	-	-	-	-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2151-308)	-	-	-	-	-	-	114	9	-	-	114	9
리빙랩 활용 기술 개발 지원 (R&D)(2134-398)	-	-	-	-	-	-	-	-	100	7	100	7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2134-344)	-	-	-	-	-	-	7	1	93	4	100	5
산학연플랫폼협력 기술개발사업 (2151-309)	-	-	-	-	-	-	-	-	15	5	15	5
성과공유형 공통 기술 R&D(R&D) (2134-408)	-	-	-	-	-	-	-	-	18	4	18	4
소상공인스마트기술 육성(R&D) (4131-326)	-	-	-	-	-	-	-	-	-	-	0	0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R&D) (2134-405)	-	-	-	-	-	-	-	-	18	1	18	1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 (2134-377)	-	-	-	-	-	-	-	-	29	7	29	7
소재부품장비 전략 협력 기술개발 (R&D)(2134-353)	-	-	-	-	-	-	-	-	49	5	49	5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R&D) (2134-378)	-	-	-	-	-	-	-	-	4	1	4	1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강화 (R&D)(2163-307)	-	-	-	-	-	-	123	3	-	-	123	3
혁신제품고도화기술 개발 지원사업 (2134-429)	-	-	-	-	-	-	-	1	25	1	25	2
합 계	1,241	49	2,161	76	6,579	124	7,663	211	12,006	293	29,650	753

주: 2024.12.31.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발생액은 각각 306억 6,800만원 및 259억 2,000만원인데, 2024년까지 수납된 금액은 각각 164억 4,600만원(53.6%) 및 26억 8,800만원(10.4%)에 불과함.

2020~2024년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연도별 환수 결정액 (a)		9,848	9,652	4,257	4,109	2,802	30,668
환수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0	3,126 (31.7)	[해당없음]				3,126
	2021	4,630 (47.0)	3,991 (41.3)				8,621
	2022	5,530 (56.2)	4,762 (49.3)	1,999 (47.0)			12,291
	2023	5,766 (58.5)	5,271 (54.6)	2,146 (50.4)	1,124 (27.4)		14,307
	2024 (b)	5,904 (60.0)	5,576 (57.8)	2,352 (55.3)	2,443 (59.5)	171 (6.1)	16,446
미수납 총액 (c) = (a)-(b)		3,944	4,076	1,905	1,666	2,631	14,222

주1: 2024.12.31. 기준
주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 결정액에서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0~2024년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적용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a)		132	65	196	967	11,930	12,630	25,920
제재부가금 누적 수납액 (누적 수납률)	2020	66 (50.0)	(해당없음)					66
	2021	71 (53.8)	17 (26.2)					88
	2022	71 (53.8)	64 (98.5)	0 (0.0)	0 (0.0)			135
	2023	71 (53.8)	64 (98.5)	0 (0.0)	162 (16.8)	391 (3.3)		688
	2024 (b)	71 (53.8)	64 (98.5)	0 (0.0)	162 (16.8)	2,072 (17.4)	319 (2.5)	2,688
미수납 총액 (c) = (a)-(b)		61	1	196	805	9,858	12,311	23,232

주1: 2024.12.31. 기준
주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
주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직접 수납·징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7]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음. 동시에 협약위배, 연구결과불량 등 기존 환수금에 포함되었던 항목을 제재부가금으로 분류 변경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7) 법률 제17343호, 2020.6.9, 제정, 2021.1.1. 시행

과제 정산금, 제재처분 환수금 및 관련 제재부가금의 장기 미수납 문제는 국고 손실로 인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회의 연례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R&D 사업의 종료 후 정산금, 제재처분 환수금 및 관련 제재부가금의 미수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R&D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015~, 출연 및 보조)은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조 중소·중견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맞춤 지원을 제공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2,190억 5,4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9,054	219,054	-	-	-	219,054	219,054	-	-	236,076

□ 검토의견

(1) 국회 심의 없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비 지출 문제

동 사업의 3개 내역사업인 ‘제조혁신 구축지원’,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사업의 2024년도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 2,190억 5,400만원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출연·보조의 형태로 수행하는 사업 및 과제들의 예산 규모는

1,800억 1,400만원임.

2024년 내역사업별 사업수행주체 및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비고
제조혁신 구축					
■ 선도형 제조혁신	출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72,111	50%	-
■ 제조혁신 자동화	출연	한국로봇 산업 진흥원	25,000	50%	-
	보조	한국생산 기술 연구원	7,040	50%~ 100%	-
■ 스마트 공장 수준확인	보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500	100%	-
제조혁신 인프라 조성	보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4,080	50%~ 100%	스마트마이스터 활용 지원, 공급기업 역량 진단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7,000	50%	AS 지원
	출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830	50%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출연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493	100%	국가표준정책연구, 제조데이터표준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들 과제 및 사업의 추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산하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구체적인 수행 업무로는, 스마트공장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 인력, 장비 등

지원,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R&D 사업 기획, 평가 및 관리,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각 세부과제별 사업예산의 일부를 추진단 운영비로 계상 및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도 사업예산 총액 1,870억 1,400만원의 9.2%에 해당하는 172억 6,500만원이 추진단 운영비로 계상되었고, 이 중 172억 1,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내내역사업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비 계상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세부과제	사업예산 (A)	지원 과제수	추진단운영비		
				최종 계상액 (B)	사업 예산 대비 비율 (B/A)	결산액
제조혁신 구축	선도형제조혁신	172,111	1,087개	16,848	9.8	16,848
	스마트공장수준확인	1,500	1,533개	44	2.9	44
제조혁신 인프라조성	AS지원	7,000	364개	175	2.5	133
	스마트마이스터활용 지원	3,780	1,101개	55	1.5	55
	클라우드종합솔루션	830	1컨소	30	3.6	30
	공급기업역량진단	300	300개	10	3.3	10
제조데이터 생태계구축	국가표준정책연구	270	1식	40	14.8	29
	제조데이터표준화	1,223	50개장비	63	5.2	63
합 계		187,014	-	17,265	9.2	17,2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당초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동 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운영비에 대한 별도의 편성 내역 및 소명이 미비한 상황임.

이와 같이 추진단 운영비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내부의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계획(안)'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승인만을 거쳐 추진단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계획(안) 기준 운영비 세부계상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구분			'23년 편성 (A)	'24년 편성 (B)	증감(B-A), %	
사업비	직접 사업비	사업비	130,068	169,084	39,016	30
사업운영 경비	인건비	정규직	1,827	2,613	786	43
		무기직	56	57	1	2
		비정규직	502	835	333	66
		소계	2,385	3,505	1,120	47
	운영비	일반수용비	3,217	4,654	1,436	45
		초과근무 식대	6	17	11	173
		위탁운영비	4,431	7,650	3,219	73
		소계	7,655	12,320	4,666	61
	여비	국내여비	77	114	36	47
		국외여비	52	60	8	16
		소계	129	174	44	34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77	81	4	5
		관서업무비	10	10	0	2
		소계	87	91	4	4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1,399	1,810	411	29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15	30	15	100
	간접비	간접비	253	-	△253	순감
소 계			11,923	17,931	6,007	50
합 계			141,991	187,014	45,023	3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처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비의 적정 규모와 관련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추진단의 운영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차년도 적정 운영비 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우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향후 출연사업 운영비를 별도 내역으로 구분 편성하여 추진단 운영비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2) 사업출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 부적정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구분되며, 이 중 사업출연금은 개별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편성된 사업출연금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 비용, 사옥 운영비용, 기관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비, 방한용품 구매비용 등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출연금 기관운영경비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시작	종료	계약 금액	관련 정부 지원 현황			
				회계·기금	세부사업	세목	금액
2024년 TIPA ValueUP 프로그램 운영 용역	2024-07-14	2025-07-14	320	일반회계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2134-422)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 (360-06)	140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30
2024년 신규 직원 임용에 따른 기자재 구매	2024-07-18	2024-08-21	101	지특회계	지역특화산업 육성(3336-302)	기관운영 출연금 (350-01)	9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2134-422)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 (360-06)	75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18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 용역	2024-11-03	2025-11-02	379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운영 (R&D) (2136-501)	연구개발 경상경비 (360-02)	3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2134-422)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 (360-06)	22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6

TIPA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1차 구축	2024-12-18	2025-10-14	1,093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2134-422)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 (360-06)	187
				지특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지특)(R&D) (2151-310)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 (360-06)	96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R&D) (2136-501)	연구개발 장비시스템구축비 (360-04)	100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676
TIPA 차세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2024-12-18	2025-03-31	245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일반)(R&D) (2134-422)	연구개발 기획평가 관리비 (360-06)	57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R&D) (2136-501)	연구개발 장비시스템구축비 (360-04)	108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75
신인사제도 개편 용역	2024-12-09	2025-06-07	126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50
TIPA 정보보안 컨설팅	2024-12-16	2025-10-11	92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91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방한용품 구매	2024-12-17	2024-12-31	49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111-303)	사업 출연금 (350-02)	4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8], 예산과목 변경은 전용·세목조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예산과목 변경 없이 예산 과목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예산 집행 시 당초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참고

3. 여성기업육성(4234-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여성기업육성’(1999~, 보조)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9]에 따라 여성 창업자 등 여성경제인에게 창업·판로·수출·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 기관·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4억 8,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보조)되었음.

2024년도 여성기업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여성기업육성	10,485	10,485	-	-	-	10.485	10,485	-	-	10,485
조사연구	744	744	-	-	-	744	744	-	-	744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검토의견

(1) 조사연구: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변경 필요

동 사업 중 ‘조사연구’ 내역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0]를 근거로 여성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통계조사(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의 수행 및 여성기업 관련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7억 4,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보조)되었음.

2024년도 ‘조사연구’의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내역사업명	집행내역
조사연구 (744백만원)	- 여성기업 실태조사: 250백만원(1건 × 250백만원) - 여성기업 정책분석: 394백만원(19건 × 20.7백만원)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100백만원(1식 × 1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내역사업은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정책분석’ 및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의 세부 사업내역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 중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

1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고, ‘여성기업 정책분석’은 정책분석 보고서 및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사업이며,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기업 관련 통계, 경영정보, 행사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을 운영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정책분석’ 및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사업 모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여성기업 조사연구 등 내역사업 사업수행체계

□ 여성기업 실태조사 내내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	조사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	→	통계 공표
센터		센터		센터→중기부		센터

주: 국가승인통계로 KOSIS 등 통계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재 및 공표

□ 여성기업 정책분석 내내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	연구 수행	→	결과보고	→	보고서 발간
센터		센터		센터→중기부		센터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내내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	유지보수 용역계약	→	사업수행
센터		센터		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동 내역사업에서 지원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1]를 근거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근거 법률에서는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의 주체를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12]임.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사무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3]에 보조하고 있어 사업수행체계 내지는 지원형식이 적절

---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있음.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등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업 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인 경우에는 민간보조 →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14].

이러한 민간보조사업의 개념 및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사무의 경우 관련 예산을 민간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만, 효율적·전문적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기관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 내역사업을 현재와 같이 민간경상보조(320-01목)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등 그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p.104.

4.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장애인기업 육성’(2007~, 보조)은 장애인 창업지원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은 105억 1,7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15억 5,000만원[15]임. 동 사업은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센터운영’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임.

2024년도 장애인기업 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기업 육성	10,517	10,517	-	-	-	10,517	10,517 [11,550]	-	-	10,597
장애인 창업육성	3,169	3,169	-	-	-	3,169	3,169 [4,263]	-	-	3,169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3,095	3,095	-	-	-	3,095	3,095 [3,084]	-	-	3,095
센터운영	4,253	4,253	-	-	-	4,253	4,253 [4,203]	-	-	4,333

15) ‘장애인 창업육성’ 내역사업에서 2023년에 교부되었으나 실집행되지 않은 보조사업비(11억원)가 2024년에 집행되어 실집행액이 집행액보다 큼.

□ 검토의견

(1)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사업비 반영 필요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내역사업 중 ‘중증장애경제인 경영안정화’ 내내역사업은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업무보조 인력을 지원하여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안정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보조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며, 전액 실집행되었음.

중증장애경제인 경영안정화 내내역사업 집행내역(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내역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150	150	1인 중증장애인기업 46개사에 보조공학기기(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지원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지원	200	200	1인 중증장애인기업 40개사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합계	350	350	

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출자료를 재정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3년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16]되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세부사업의 ‘기술사업화’ 내내역사업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505호, 2023. 6. 20., 일부개정)은 2023년 12월 21일 시행되었음.

2024년 장애인기업 성장기반추축 내역사업 예산집행계획(2023년 대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비고
합계	3,095	3,095	-	
기술사업화	1,109	859	△250	
시제품 제작 지원	**709**	**459**	**△250**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400	400	-	
공공구매촉진	1,014	914	△100	
보조공학기기 지원	150	-	△150	내내역 이동
판로지원시스템	104	154	50	
공공판로 컨설팅	130	130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120	120	-	
공공구매 제도운영	414	414	-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96	96	-	
수출역량강화	552	552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32	132	-	
수출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420	420	-	
중증장애경제인 경영안정화	-	350	350	
보조공학기기 지원	-	150	150	내내역 이동
업무지원인 서비스	**-**	**200**	**200**	
장애인기업 정책조사연구	420	420	-	
조사연구	420	420	-	

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출자료를 재정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24년 보조사업 예산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기술사업화' 내내역사업 중 '시제품 제작 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2억 5,000만원 감액되어 이 중 2억원이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으로 사용되었음.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사업목적</td><td>○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하여 장애인기업의 성장 촉진</td></tr>
<tr><td>지원내용</td><td>○경영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보조하는 업무지원인 제공
<table>
<tr><th>구분</th><th>지원한도</th><th>지원업무</th></tr>
<tr><td>업무보조형</td><td>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자부담 10%, 부가세 본인부담)</td><td>제품포장, 행정보조, 이동지원, 서류정리 및 대독, 정보검색, 고객 상담보조, 업무일정 관리, 업무전화 응대, 대화기록 지원, 기타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보조 등</td></tr>
<tr><td>의사소통형</td><td rowspan="2">지원한도 300만원
(자부담 10%, 부가세 본인부담)</td><td>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td></tr>
<tr><td>경영지도형</td><td>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 컨설팅 등</td></tr>
</table></td></tr>
<tr><td>지원대상</td><td>○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사업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사업주: 모집공고 전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td></tr>
<tr><td>지원한도 및 방식</td><td>○업무보조형: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자부담 10%, 부가세 본인부담)
-매월 1일 전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자부담 10%, 부가세)을 지정계좌로 납부(업무지원인 임금 시간당 9,860원)
-본인부담금 납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업무지원 서비스 중단·취소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수행업체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선정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의 경우 기업에서 선 지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td></tr>
</table>

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4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24.5.2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4년에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40개사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업무보조형 32개사, 경영지도형 8개사)를 제공하였으며, 수혜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38.7% 증가하는 등 경영안정화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근로

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을 보내 장애경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17]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8]

즉,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인바, 「정부조직법」[19]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9)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탁에 관한 규정」[20]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민간기관이 수탁을 기피하거나 위탁업무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나,[2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에도 관련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유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

---

2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원인 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예산의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동 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초기단계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2024년에는 수혜기업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음.

시제품 제작 지원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실적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목업 제작비용 지원	・2023년: 25개사, 6억원 ・2024년: 14개사, 4억원
시제품제작	・조립성 및 기능성 검토를 위한 모형제작 단계로 금형 제작 전단계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제품 상용화 목적의 시제품 금형 제작비용 지원	

자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출자료를 재정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하게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예산 중 2억원을 전용하여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사업 추진 방식은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의 안정성도 훼손하는 것으로 보임.[22)]

이와 관련하여,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2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수요가 충분하나(경쟁률: ‘24년 3.5:1, ‘25년 3.4:1), 다른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동 사업 예산을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사용하기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함.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이 발의되어 있음.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24]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수는 8,802개사(2023년 기준)로 파악되고 있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25]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동 사업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2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221호, 2025.1.3. 발의)
24)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2025.3.
25) 관련기사
- 한겨레, "'빛 좋은 개살구' 된 업무지원인제...속타는 중증장애 1인 기업", 2025.7.16.자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8183.html)

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4835-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1999~, 보조)은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수요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수행기관에 해당 비용을 보조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558억 5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55,805	55,805	-	-	-	55,805	55,805	-	-	61,386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음.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컨설팅 (5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컨설팅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기술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 검토의견

(1) 혁신바우처 집행잔액에 대한 조속한 정산 필요

동 사업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서 2022~2024년 당해연도 교부된 민간경상보조금의 실집행률이 95%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최근 3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상 민간경상보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4	55,605	55,605	55,605	55,605	55,605	55,113	492	99.1
2023	55,605	55,605	55,605	55,605	55,605	54,685	920	98.3
2022	61,505	61,505	61,505	61,505	61,505	59,266	2,329	96.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설명자료를 재정리

특히, 2024년 결산상 실집행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교부된 민간경상보조금 556억 500만원 중 551억 1,3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99.1%인 것으로 설명하였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바우처의 2024년 12월 말 기준 실제 사업비 정산 금액은 직접비 244억 1,100만원과 간접비 40억 8,100만원 등 284억 9,200만원(집행률 5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상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실집행액 551억 1,300만원보다 실제 266억 2,100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 혁신바우처 유형별 사업비 정산 및 바우처 잔액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대분류	수요기업 선정 차수별 분류	선정시기	지원 대상 수	평균 보조 율	선정 당시 최대 바우처 사용금액 (A)	2024년 12월 말 기준 사업비 정산 금액 (B)	바우처 잔액 (A-B)
일반	1	2024-02	506	64.7%	16,478	8,148	8,330
	2	2024-06	39	72.2%	1,538	175	1,363
	3	2024-07	46	72.2%	2,010	138	1,873
탄소	1	2024-02	315	60.1%	12,204	5,689	6,516
지역자율	2	2024-04	358	68.9%	13,342	4,922	8,420
중대재해	1	2024-02	81	66.6%	2,938	992	1,946
	2	2024-05	78	65.6%	2,953	723	2,229
	3	2024-07	55	66.1%	2,007	232	1,775
재기	수시접수	2023-12 부터 예산 소진시	555	82.6%	4,617	3,394	1,223
합계			2,033	68.8%	58,087[1)]	24,411[2)]	33,675[3)]

주: 1) (최대바우처 사용금액) 자부담 미납 등의 사유로 자진 포기 및 잔액 등 실효 발생을 대비하여 예산의 약 115% 수준으로 선정
2) (집행금액) 협약 금액(관리기관-수요기업) → (정산금액) 중도취소(자진포기 등), 정산 감액 등 반납 후 확정
3) (바우처잔액) 예산이 아닌 최대 바우처 사용금액 대비 잔액으로 실 바우처 잔액과 차이
4) 직접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설명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바우처 선정 시기가 2024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더라도, 수요기업의 자부담 납부 이후 실제 바우처 사용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유의 가상계좌에 계상된 바우처 금액이 실제 인출되는 시기가 다음연도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였음.

다만,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바우처 미사용 금액에 대한 최종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23년 바우처 사업 사용잔액이 중간 정산 결과 25억원 가량 발생하였고, 2025년 6월 말까지 해당 미집행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26].

2023년 혁신바우처 사업비 정산·집행 잔액 현황

(단위: 원)

구분		세부사업용도	계획(A)	집행금액(B)	집행잔액(A-B)
혁신 바우처	직접비	지원보조금	46,369,542,000	43,993,327,600	2,376,214,400
		민간위탁사업비	1,680,000,000	1,680,000,000	0
	간접비		2,540,458,000	2,509,476,812	30,981,188
	소계		50,590,000,000	48,182,804,412	2,407,195,588,
재기 바우처	직접비	지원보조금	4,628,800,000	4,557,500,000	71,300,000
	간접비		386,200,000	330,052,824	56,147,176
	소계		5,015,000,000	4,887,552,824	127,447,176
합계			55,605,000,000	53,070,357,236	2,534,642,76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와 같은 정산 지연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 직후 제출되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실집행 금액을 협약금액과 정산금액으로 구분 기재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기업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게 하여 실집행액과 정산액을 일치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7]

---

26)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원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등 사업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기바우처 사업의 미종료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사업 구분 등을 통해 정산이 미리 끝난 혁신바우처 사업의 정산액을 우선 반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7)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를 앞당겨 시행하고 사업기간을 당해연도 11월 말까지로(재기제외) 설정하여 중간정산 시점 실집행액과 정산액을 일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설명함.

6.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 사업 및 결산 개요

‘공공구매제도운영’(2006~, 직접 및 보조)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각종 법적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동 사업은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4년도 예산현액 57억 2,200만원 중 57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공공구매제도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공구매제도운영	5,722	5,722	-	-	-	5,722	5,704	-	18	5,703
공공구매이행력 제고	2,897	2,897	-	-	-	2,897	2,879	-	18	2,978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825	1,825	-	-	-	1,825	1,825	-	-	1,825
공공기관 문제해결 매칭지원	1,000	1,000	-	-	-	1,000	1,000	-	-	900

□ 검토의견

(1)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자부담률 상향 검토 필요

‘공공구매제도운영’ 사업 중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내역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현장에서 성능·기술 등의 현장검증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매칭을 지원하고 현장 실증비용을 보조(과제당 3,000만원 한도, 80% 지원, 중소기업 자부담 20%)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10억원으로 전액 집행(보조)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을 전담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 보조(민간경상보조)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현장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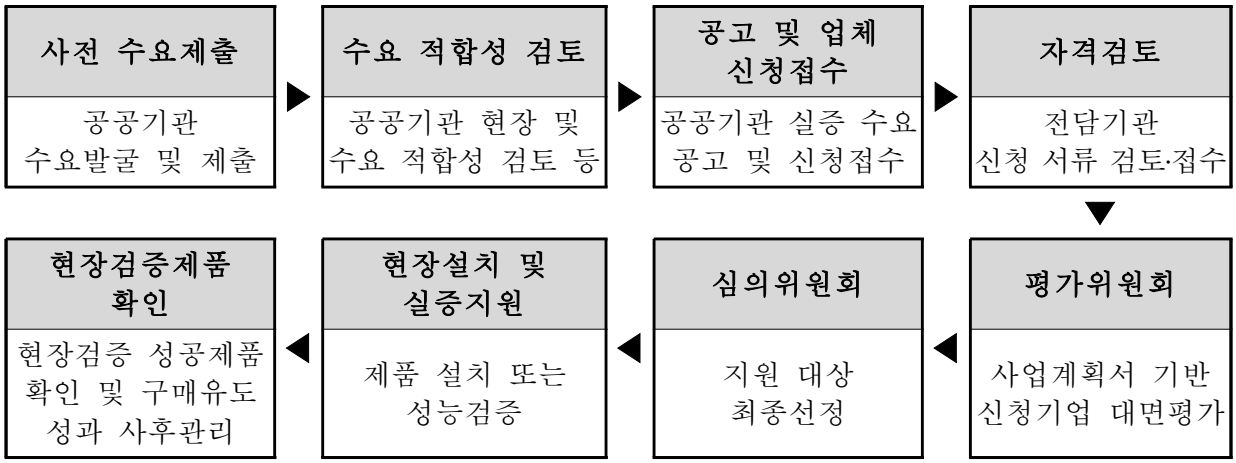
보조사업자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공공기관이 현장 실증을 요청한 경우인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실증테스트를 요청한 경우인 “중소기업 제안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실증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사업참여 유형

참여 유형	유형 내용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중소기업 제안형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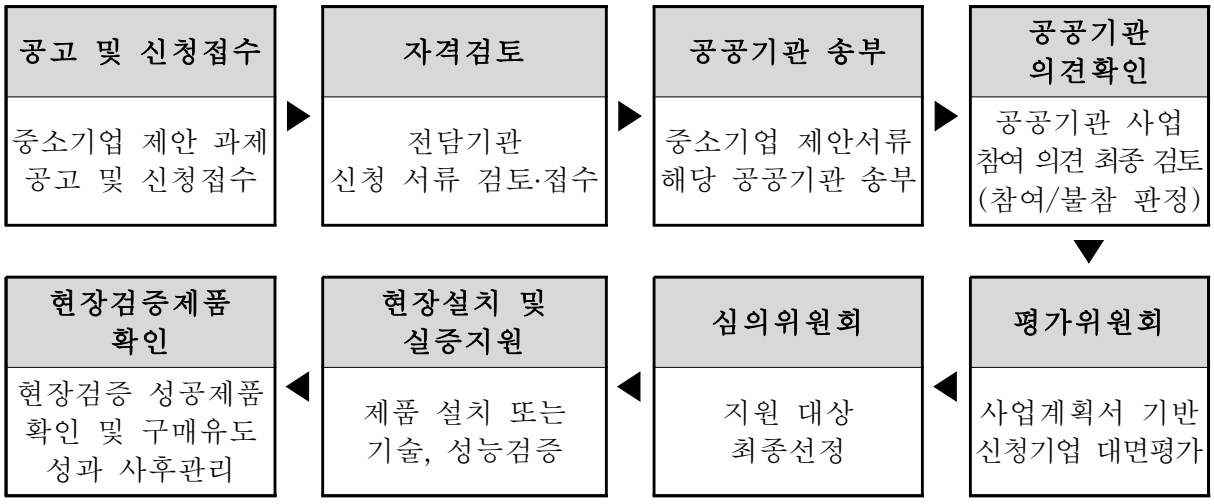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공공기관 수요형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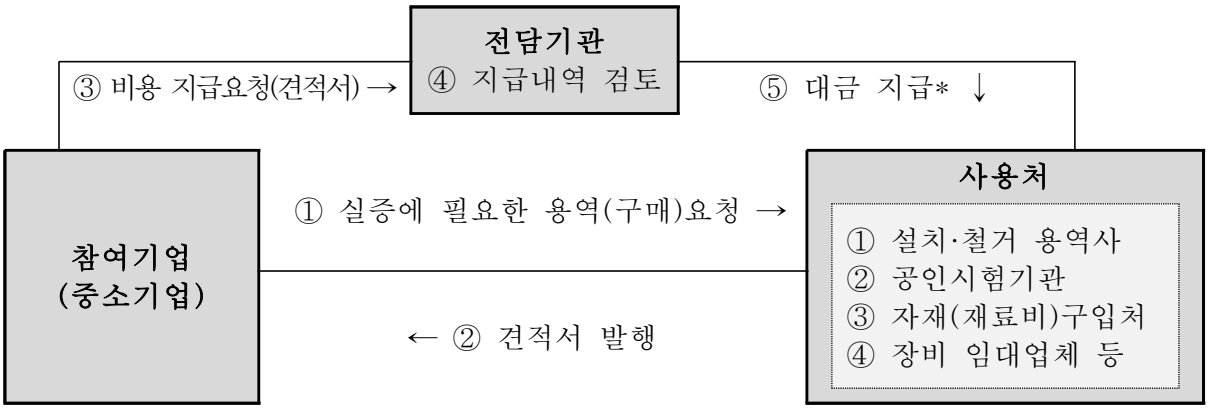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기업 제안형 선정절차



주: '공공기관 송부'와 '공공기관 의견확인'의 중간 단계에서 신청기업-공공기관 간 사전협의 진행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현장실증비 지급방식



주: 전담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용역, 공인시험기관, 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직접 비용 지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내역사업은 202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실제 판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보조사업임에도 전체 사업비 중 행정비용(사업관리비 1억원, 시스템유지보수비 5,000만원, 평가운영비 7,500만원 등 2억 2,500만원)의 비율이 25%에 달해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하다는 지적[28]이 있음.

즉, 사업 규모에 비해 별도 보조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운영비 등)이 다소 과다하다는 점에서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29].

28)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pp.3160~3166.
29)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의 행정비용 비율이 높긴 하지만, 공공기관 수요발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매칭 등을 진행하는 사업구조 특성상 많은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예산 세부내역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1,000백만원 -사업관리비: 100백만원 -시스템유지보수: 50백만원 -현장검증: 750백만원(25개×30백만원) -평가운영비(선정평가운영비 등): 100백만원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900백만원 -사업관리비: 100백만원 -시스템유지보수: 50백만원 -현장검증: 675백만원(25개×27백만원) -평가운영비(선정평가운영비 등): 75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또한, 동 내역사업은 수혜자인 중소기업이 현장검증 비용의 20%를 부담하는 구조[30]로 설계되는 등 수혜자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직접수혜자의 협소성(2023년도 실제 지원기업 23개사에 불과[31])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자부담률을 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32]도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행정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자부담률 상향 검토 필요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이라는 입장임.

30) 실증비용 중 정부가 최대 80% (3,000만원 한도)를 지원, 지원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함.

31) 현재까지 2023년도 23개사를 지원하여 97.2억원, 2024년도 30개사를 지원하여 87.5억원의 조달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지원기업 53개사 중 18개사는 조달실적이 없음.

32)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4, pp.3160~3166.

7.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2000～, 직접 및 보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 ‘중소기업지원사업 분석’의 3개 사업이 있음.

2024년도 예산현액 142억 4,100만원 중 14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 조사연구평가	14,241	14,241	-	-	-	14,241	14,237	-	4	14,404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운영	6,595	6,595	-	-	-	6,595	6,595	-	-	6,712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통계기반구축	3,601	3,601	-	-	-	3,601	3,597	-	4	3,863
중소기업지원 사업 분석	4,045	4,045	-	-	-	4,045	4,045	-	-	3,829

□ 검토의견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적시 인원충원 필요

동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내역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제4항[33]을 근거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65억 9,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보조)하였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내역사업 집행절차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 지원 계약		▪ 정책연구 및 현안이슈 조사연구 ▪ 연구과제 결과공유		▪ 지원사업 평가 및 연구 성과물을 통한 정책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33)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음의 표는 동 내역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의 실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65억 9,500만원의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교부받은 예산액 65억 9,500만원 중 65억 4,8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99.3%)하고 4,7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파악됨.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운영	6,595	6,595	6,595	6,595	-	6,595	6,548	-	47	99.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다음의 표는 2025년도 1분기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8개 기관)별 직원(정규직) 결원율을 나타낸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직원(정규직) 결원율은 15.7%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8개 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1분기말 기준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별 결원율

(단위: 명, %)

기관명	임원(상임)		직원(정규직)			
	정원	현원	정원 (A)	현원	결원 (B)	결원율 (B/A)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	1	**115**	**97**	**18**	**15.7**
창업진흥원	1	1	183	160	23	12.6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	5	287	254	33	11.5
한국벤처투자	3	2	145	130	15	10.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3	86	79	7	8.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0	45	43	2	4.4
공영홈쇼핑	4	3	372	364	8	2.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1	234	231	3	1.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직원(정규직) 결원율이 15.7%에 달한다는 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기능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연의 과업수행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34].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인력충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2025년도 1분기 중 1차례 공개채용을 시행하였

34)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연구직 인력이 부족하여 증가하고 있는 외부 연구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직 인력 1인당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도 증가하는 등 연구직 현원들이 직무수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함.

으나, 직원(정규직)을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35].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직원충원(정규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기능과 같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연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5)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지속적인 공개채용을 통해 조속히 인력을 충원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원활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8.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사업화지원’(2009~, 보조 및 출연)은 창업기업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년도 예산현액 3,776억 5,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창업사업화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업사업화지원	377,656	377,656	-	-	-	377,656	377,656	-	-	403,567
예비창업패키지	69,945	69,945	-	-	-	69,945	69,945	-	-	49,000
초기창업패키지	59,360	59,360	-	-	-	59,360	59,360	-	-	45,500
창업도약패키지	59,255	59,255	-	-	-	59,255	59,255	-	-	59,255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103,096	103,096	-	-	-	103,096	103,096	-	-	130,996
글로벌스타트업육성	18,525	18,525	-	-	-	18,525	18,525	-	-	(사업 이관)
창업중심대학	67,475	67,475	-	-	-	67,475	67,475	-	-	77,475

□ 검토의견

(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정책패키지 간 연계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역사업은 AI 등 딥테크 분야[36]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발하여 기술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30억 9,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37].

동 사업은 창업 후 10년이 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우량 기업에게 매년 2억원(평균 1.5억원)의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하고, 지원종료 후에는 매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추가 후속지원도 제공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 개요

○ (개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을 영위하는 창업 10년 내 스타트업
○ (지원실적) 2024년 507개사 (기본지원 467개사 + 후속지원 40개사)
○ (추진체계) 총 3단계로 지원, 단계별 평가를 통해 매출액 등에서 우수 성과를 거둔 상위 10% 이내 스타트업은 다음 단계 지원
○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자금 및 연계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6) 딥테크(deep tech) 분야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분야로서 특정 분야의 기술 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술분야를 의미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 등이 있음.

37) 동 사업은 2020~2022년 ‘BIG3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사업’, 20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분야) 사업’,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지원분야가 각각 3개, 5개, 10개로 확대되었음.

딥테크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 상용화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진입 및 확산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절 없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므로, 정책패키지 간 연계성과 참여 연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다른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직접적인 사업화자금 지원 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R&D 지원, 수출바우처 등 다른 창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심사 간소화 및 가점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연계 지원실적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 수행 시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채택[38]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연계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함.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의 다른 지원과의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수행시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원방식의 질적 제고를 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3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4.11.

그런데, 2024년 연계 지원현황을 보면 기술보증, R&D, 수출바우처 등의 영역에서 2023년에 비해 지원율이 상승했고, 특히 기술보증은 14.2% → 39.6%, R&D는 14.9% → 65.0%로 지원율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정책자금은 14.5%, 수출바우처는 15.7% 등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한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연도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 지원현황

(단위: 개, %)

구분	2023			2024			2025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기업 수	지원기업	지원율
정책자금	275	40	14.5	503	73	14.5	577	29	5.0
기술보증		39	14.2		199	39.6		122	21.1
R&D		41	14.9		327	65.0		-	-
수출바우처		27	9.8		79	15.7		73	12..7

주: 2025년은 지원기업 선정시점을 감안하여 분석에서 제외함(2025.4.23. 선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연계지원 현황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		
		지원기업 (B1)	지원율 (B1/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2)	지원율 (B2/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3	4.5	300	24	36.4	1,233
바이오헬스	156	14	9.0	517	66	42.3	1,364
미래 모빌리티	91	22	24.2	978	35	38.5	1,164
친환경에너지	55	11	20.0	969	23	41.8	1,512
로봇	57	16	28.1	256	27	47.4	1,201
빅데이터·AI	35	2	5.7	625	11	31.4	1,911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2	9.5	200	7	33.3	964
우주항공·해양	12	3	25.0	233	4	33.3	874
차세대원전	5	-	-	-	1	20.0	200
양자기술	5	-	-	-	1	20.0	1,235

계	503	73	14.5	458	199	39.6	1,308
구 분	전체 지원기업 (A)	R&D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B3)	지원율 (B3/A)	평균 지원액	지원기업 (B4)	지원율 (B4/A)	평균 지원액
시스템반도체	66	50	75.8	432	9	13.6	31.6
바이오헬스	156	91	58.3	823	18	11.5	39.5
미래 모빌리티	91	59	64.8	928	12	13.2	33.8
친환경에너지	55	41	74.5	512	11	20.0	34.6
로봇	57	40	70.2	422	16	28.1	36.1
빅데이터·AI	35	27	77.1	555	7	20.0	30.8
사이버보안·네트워크	21	8	38.1	304	5	23.8	32.6
우주항공·해양	12	5	41.7	462	1	8.3	45.0
차세대원전	5	3	60.0	270	-	-	-
양자기술	5	3	60.0	424	-	-	-
계	503	327	65.0	5,132	79	15.7	3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은 과학·공학 기반의 원천·독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성공 시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 스타트업(모방형 스타트업, 기존 기술 활용 스타트업)에 비해 연구개발 위험(R&D risk)[39], 시장-제품 위험(market-product risk)[40]이 높은 고위험·고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초기 자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고 초기 및 후속 투자, 규제 완화 등 재정적·제도적 집중 지원이 필요함[41].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 정책자금, 기술보증, R&D, 수출바우처 등 다른 정책패키지와의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39) 기술 상용화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을 말함.
40)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시장에서 실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함.
41) 김정호, 「딥테크 스타트업의 현황과 지원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2023.6, pp. 101-102.

9.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사업 및 결산 개요

‘민관협력창업자육성’(2014~, 보조 및 출연)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년도 예산현액 2,065억 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민관협력창업자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06,506	206,506	-	-	-	206,506	206,506	-	-	186,281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130,363	130,363	-	-	-	130,363	130,363	-	-	113,28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11,143	11,143	-	-	-	11,143	11,143	-	-	(20,000) 이관
아기유니콘 육성	22,000	22,000	-	-	-	22,000	22,000	-	-	(22,000) 이관
글로벌 기업 협업프로그램	43,000	43,000	-	-	-	43,000	43,000	-	-	53,000

□ 검토의견

(1)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및 투자 실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필요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내역사업은 엔젤투자회사 등 민간부문에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R&D 및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기술창업프로그램(TIPS)[42]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 예산현액은 1,303억 6,300만원이고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내역사업 세부내역

○ 2024년도 예산: 130,363백만원
-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87,283백만원) : 872개사 * 100백만원
- 프리팁스[43](5,000백만원) : 50개사 * 100백만원
- 포스트팁스[44](29,880백만원) : 83개사 * 360백만원
- 글로벌팁스(4,000백만원): 20개사 * 200백만원
- 팁스타운 운영비(4,2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말 누적 기준으로 창업기업 3,754개사 중 1,922개사가 총 16조 9,390억원의 후속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정부지원금 1조 7,411억원 대비 약 10배, 민간 운영사 선투자액 8,871억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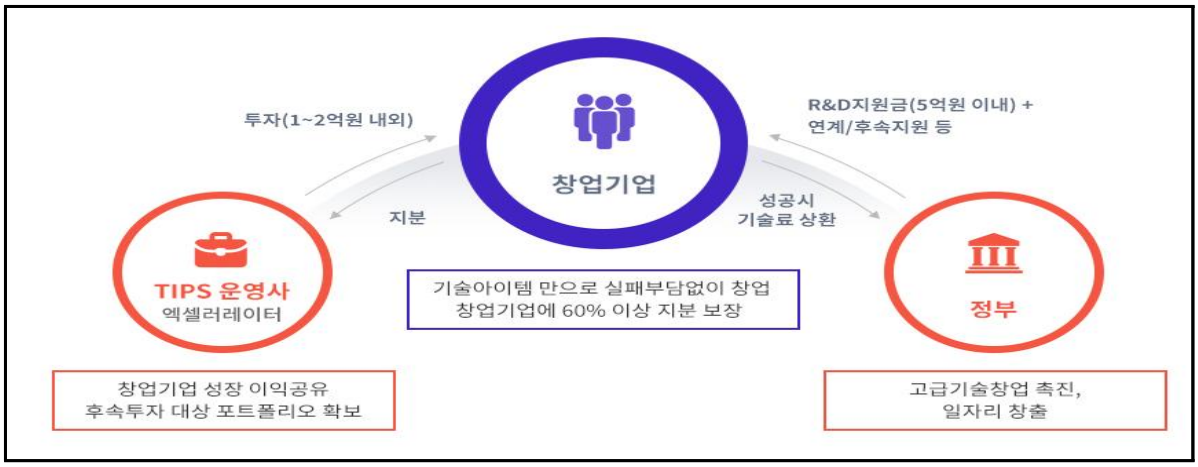
42)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43) 프리팁스(Pre-TIPS):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예비 팁스 창업기업으로 육성, 엔젤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44) 포스트팁스(Post-TIPS): 팁스 성공기업에 대한 상용화·해외진출·마케팅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팁스 이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약 19배 수준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음.

또한, TIPS 지원 후 전체 신규 채용은 22,549명으로 기업당 8.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TIPS 선정기업 중 29개사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하였으며 M&A 성공 창업기업은 87개사라고 제시하였음.

TIPS 프로그램은 민간 투자사인 TIPS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先 투자 후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매칭하여 R&D, 사업화, 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임.

TIPS 프로그램 사업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는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의 발굴 및 투자, 보육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TIPS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엔젤투자 및 추천, 보육·멘토링·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음.

TIPS 운영사의 역할

○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 창업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 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진출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2024.3.19.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운영사는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등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투자재원 및 실적, 지원인프라, 프로그램 등 초기 기술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팁스 운영사 유형별 평가기준

일반형·예비형	특화형
투자·발굴 역량 및 실적	특화분야 투자·발굴 역량 및 실적
보육 역량 및 실적	좌동
지원 인프라 및 프로그램	좌동
향후 지원계획 및 지속가능성	좌동

주: 특화형 운영사는 2022년까지 선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말 기준 122개의 TIPS 운영사가 활동 중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TIPS 운영사 신청기관의 창업지원실적에 따라 일반형, 특화형[45], 예비형[46]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창업기업 추천권 규모를 달리 부여

45) 특화형은 운영사의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운영사임.
46) 예비형은 창업기업 지원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지정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서, 예비 운영

하고 있으며, 유형별 TIPS 운영사는 일반형 107개, 특화형 4개, 예비형 11개임.

TIPS 운영사 유형별 현황

구분	합계	일반형	특화형			예비형
			바이오·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게임·스포츠	청년창업	
개수	122	107	2	1	1	1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1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TIPS 운영사의 신청 자격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47]에 한정하던 것이 폐지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TIPS 운영사 범위를 확대하였음.

TIPS 운영사 신청 자격 요건 변경 내용

기존		현행(2022년～)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털 ③ 기업형 벤처캐피털(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의 신청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한해에 평균 5.8개 내외로 선정하던 신규 운영사는 2022년에 8개가 신규 선정되었고 2023년 32개, 2024년 19개의 새로운 TIPS 운영사가 선정되었음[48].

사 선정 후에 일정 기간 활동과 실적점검을 통해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됨.

47) 액셀러레이터: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투자, 보육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창업기획자'로 정의하고 있음.

48) 특화형 및 예비형을 제외한 일반형 운영사만을 대상으로 함.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후 3년간(2022-2024년) 새로이 선정된 TIPS 운영사의 실적이 법개정 전(2021년까지) TIPS 운영사의 실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됨.

먼저 창업기업 추천권 연간 소진율(연간 창업기업 추천 건수 / 연간 창업기업 추천권 배정 건수)이 2013~2021년에 선정된 운영사는 평균 86.9%인데, 2022~2024년에 선정된 운영사는 평균 77.0%로 9.9%p 낮았음.

또한, 창업기업 당 평균 투자액은 2013~2021년에 선정된 운영사가 2억 4,160만원이고, 2022~2024년에 선정된 운영사는 2억 1,660만원으로 2,500만원 적었음.

팁스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및 투자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천권 소진율	평균 투자액
'13~'21년 선정 운영사	86.9	241.6
'22~'24년 선정 운영사	77.0	216.6

주: 전체 운영사 중 일반형이면서 계속 운영 중인 운영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물론 2022년 이후 신규 선정된 TIPS 운영사의 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적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천권은 운영사의 활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르게 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이 선정된 운영사의 추천권 소진율과 투자실적은 제고할 여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량 있는 TIPS 운영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성과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새로 참여한 TIPS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사별로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는 등 성과 기반의 사업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10. K-바이오 랩허브 구축(5132-314)

□ 사업 및 결산 개요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2023~, 출연)은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여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구축,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 예산현액 9억 7,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	971	971	-	-	-	971	971	-	-	1,561

□ 검토의견

(1)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연례적인 사업비 이월을 지양할 필요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송도 지역에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여 의약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네트워킹 등의 경영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활용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

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9년으로 계획되어 있음.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일정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일 정
사업단 구성 등	사업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2023년
기반 및 시설 구축 (3년)	첨단 연구장비 도입 및 시설 구축공사 등	2023~2025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1차)	바이오 스타트업 맞춤 R&D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엑셀러레이터 컨설팅 지원 등 (60개 기업, 입주-졸업 전주기 지원)	2026~2028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2차)	상 동	2029~2031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예산은 네트워크 플랫폼[49] 구축비용 및 사업단 운영·관리 비용 등 총 9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 2024년도 예산 내역

□ **2024년 예산: 971백만원**

①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기획: 350백만원

② 사업단 운영 및 관리: 621백만원
- 인건비(13명, 6개월): 344백만원
- 운영비(임대료 및 관리비 등, 7개월): 277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9) 네트워크 플랫폼: K-바이오 랩허브 웹사이트, 입주기업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결합된 온라인 플랫폼(주요기능: 산·학·연·병 업무 협약기관과 입주기업간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경영 및 R&D 수행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그런데, 2023~24년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고이월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의 실집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3년에 사업비 15억 1,300만원 전액을 출연받았으나 그 중 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출연예산의 80.6%인 12억 2,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세목	피보조기관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K-바이오 랩허브 구축 (R&D)	1,513	1,513	360-05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513	-	1,513	293	1,22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9억 7,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2,0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21억 9,100만원 중 17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7,400만원을 다시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세목	피보조기관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K-바이오 랩허브 구축 (R&D)	971	971	360-05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971	1,220	2,191	1,704	374	1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실집행률 저조 및 과다 이월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집행기관 이월금을 고려하여 2024년 본예산에 필수 소요 금액만 편성하였고, 매월 실집행 점검 중으로 집행 부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실집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출부 확인 결과, 2024회계연도 역시 이월액이 발생했으며 특히 전년도 이월액 중 1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가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정된 국가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월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등의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연례적인 사업비 이월은 사업추진의 지연 때문인데, 당초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일정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입지 조성 및 구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K-바이오 랩허브의 정상 운영을 시작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특화지원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약바이오 기업을 본격적으로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었음[50].

50) 동 사업에서 연세대학교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는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및 네트워크 커뮤니티 시설 건축 등 기반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2023년 6월 출범 예정이었던 사업추진단은 추진단장 임용 포기 및 직원 채용 재공모 등의 사유로 2024년 2월에야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시점이 모두 순연되어 예산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음.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말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2028년부터 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보다 약 2년의 사업 순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51].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2022년 8월 통과) 결과에 따라 2025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이는 건축 관련 행정절차 및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기간이었고,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9년 2월로 공정기간이 재산정되었으나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인천광역시의 행정절차 간소화 노력 등을 통해 2027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사업 순연 방지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사업 추진 시 실행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에 기반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비 편성에 있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이월 및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1) 현재 기본설계('25.1월 완료) 및 설계적정성 검토('25.6월 완료)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2차 협의와 실시설계 및 경제성 검토(VE)가 추진되고 있으며, 종료 연도 연장을 위한 절차(R&D 전략계획서 수정 제출, 총사업비 협의 등) 중에 있음.

11.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생태계기반구축’(2014~, 보조 및 출연)은 혁신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제조창업 저변확대를 위한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및 창업존 운영,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조성,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을 통하여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은 774억 2,40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창업생태계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업생태계기반구축	77,424	77,424	-	-	-	77,424	77,424	-	-	87,238
창조경제혁신센터	36,368	36,368	-	-	-	36,368	36,368	-	-	40,850
메이커활성화지원	25,158	25,158	-	-	-	25,158	25,158	-	-	30,372
중장년기술창업센터	3,318	3,318	-	-	-	3,318	3,318	-	-	5,916
창업존운영	4,482	4,482	-	-	-	4,482	4,482	-	-	-
1인창조기업활성화	4,598	4,598	-	-	-	4,598	4,598	-	-	-
스타트업파크	3,500	3,500	-	-	-	3,500	3,500	-	-	10,100

□ 검토의견

(1) 경산스타트업파크: 추가적인 건립 지연이 없도록 사업 관리 필요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집적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현재 총 5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의 스타트업파크가 선정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예산으로 부산 스타트업 파크(신규) 설계비 5억원과 경산 스타트업파크 건축비(2차) 30억원 등 총 35억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스타트업파크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세목	피보조기관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부산SP	500	500	320-07	창업진흥원	500	-	500	500	-	-
경산SP	3,000	3,000	320-07	창업진흥원	3,000	-	3,000	3,000	-	-
합 계	3,500	3,500	-	-	3,500	-	3,500	3,500	-	-

2022년에 선정된 경산 스타트업파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당역을 중심으로 ICT 창업벤처 및 기업지원 특화지역으로서 스타트업파크, 지식산업센터, 행복주택 등이 집적된 임당 유니콘 파크를 구축하려는 것임.

경산 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당초 2022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는 2023년 9월이 되어서야 완료되었고 2023년 12월에 공사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됨.

중소벤처기업부는 건설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의 지연으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경산 스타트업파크의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6년 1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52].

52) 현재 지하 2층 ~ 지상 6층 규모 중 지하 1층 벽체 작업 및 1층 바닥 공사 진행 중으로 전기,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산 스타트업파크 건립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경산스타트업파크: 지방비 매칭 사업에서 자기부담금 우선집행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수 필요

경산 스타트업파크 건립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서 2022년~2026년에 국비 126억원과 지방비 278억원을 합쳐 총 사업비 404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53].

경산 스타트업파크 연도별 예산 편성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2022년	800	500	300
2023년	14,100	6,100	8,000
2024년	16,100	3,000	13,100
2025년	3,000	3,000	-
2026년(안)	6,400	-	6,400
합 계	40,400	12,600	27,8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통신, 소방 공사 및 전체층 철근 콘크리트 마감공사(~'26.2.), 내·외부 마감공사(~'26.7.)를 통해 '26년 12월 준공 예정

53) 당초 사업비는 340억원(국비 126, 지방비 214)이었으나, 공사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방비 64억원('26년) 증액

그런데 경산 스타트업파크 예산의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 설계비 선금 5억원을 국비로 지급하고 매칭 지방비 3억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2023년 1차 공사[54] 계약에 대한 선금 61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면서 매칭 지방비는 설계비 잔금 등 명목으로 4억 3,000만원(누적 매칭 지방비 83억원의 5.2%)만을 사용하였으며, 2024년 관급자재 구매 및 2·3차 공사비로 국비 30억원을 집행하면서 매칭 지방비는 1차 공사비 기성금 등 명목으로 21억 2,600만원(누적 매칭 잔여 지방비 209억 7,000만원의 10.1%)의 지방비만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

경산 스타트업파크 연도별 예산 집행

(단위: 백만원)

집행시기	집행내역	국비	지방비
2022년 12월	설계비 선금	500	-
2023년 3월	설계비 잔금	-	341
2023년 12월	1차 공사비 선금 및 감리 1차 선급금	6,100	89
2024년 8월	관급자재 구매	-	821
2024년 9월	1차 공사비 기성금	-	855
2024년 12월	24년 노무비	18	114
	관급자재 구매	2,113	-
	2-3차 공사비 기성금	869	3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4) 1차 공사 : (건축) 터파기, 기초공사, 철근공사, (전기·통신·소방) 설계검토, (건축) 기초공사, 철근공사, (전기) 배관공사, 배선공사, (통신) 설비별 전선관 케이블 포설, (소방) 소방배관 설치, (CM)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 대행 등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인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 당해연도 편성된 국비 전액을 먼저 투입하여 설계비와 공사비의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차년도 이후에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제1항[55]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물론 같은 지침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기부담분을 당장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5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하여 지침 문언상 제23조제2항의 예외 사유에 자기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거나, 전액 국비 우선 집행은 불허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여부에 관계없이 국비 우선 집행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56]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매우 당연하게도 지방비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산 스타트업파크의 경우와 같이 확보한 지방비를 차년도 내지 차차년도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국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경산 스타트업파크 건립 사업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이 요구됨.

5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2. 마이스터고 육성(544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마이스터고 육성’(2012~, 직접)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립 마이스터고등학교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등 3개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우수한 현장 중심형 기술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습 기자재와 학교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 254억 2,600만원 중 240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마이스터고 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마이스터고 육성	25,426	25,426	-	-	-	25,426	24,041	1,111	274	25,068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1,153	1,153	-	-	-	-	-	1,111	42	-

□ 검토의견

(1)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국회 반영 신규 내역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동 사업 중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내역사업은 노후화로 벽체 균열, 누수, 누전 등이 발생하고 있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을 증·개축함으로써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5,300만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11억 1,100만원을 이월하고 4,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동 내역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관련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11억 5,300만원이 계상됨[57].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결과(마이스터고 육성)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정부안	국회 증액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마이스터고 육성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24,273 (-)	1,153 (1,153)	25,426 (1,153)

자료: 「2024년도 예산안(정부 제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수정안」 중 관련 내역(p. 83)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57)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3년도 ‘마이스터고 육성’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이미 완료(2023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2023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총 325억 7,400만원[58]을 투입(당초 계획, 전액 국고)하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의 증·개축(대지 130,849㎡, 건축연면적 10,965㎡, 지하 1층～지상 5층)을 추진 중이고,

당초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2026년에 걸쳐 증·개축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부터 증·개축된 생활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정[59]되었음.

국회에서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내역사업 관련 2024년도 예산이 신규로 반영된 취지를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증·개축 시공을 위한 필요절차를 수행하였어야 함.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사전기획 용역(2024년 3월～5월)과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2024년 5월～7월) 등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에 실시설계 입찰에 대한 공모를 요청(2024년 7월)하였으나, 총사업비 중 설계비 예산이 공사 규모 대비 부족하여 입찰공모가 어렵다는 조달청 의견이 있었고,

58) 당초 총사업비 32,574백만원: 공사비(28,612백만원), 실시설계비(1,153백만원), 감리비(1,980백만원), 시설부대비(철거포함, 829백만원)
59) 설계: 2024년 / 시공: 2025년～2026년 / 건립 및 활용 시점: 2027년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획재정부에 실시설계비 증액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며,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2024년 10월, 설계비 2억 4,000만원 증액)[60]된 후 입찰공모를 진행하여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2024년 12월말에 이르러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관련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 것은 2024년도 중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의 증·개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생활관 건물의 노후화에 조속히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임.

또한,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관련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계상한 11억 5,30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2023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출[61]한 실시설계 소요비용을 반영한 것임. 그럼에도 총사업비 중 설계비 예산이 공사 규모 대비 부족하여 입찰공모가 어렵다는 조달청의 의견이 있었으며 실시설계비 증액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협

60) 변경된 총사업비 32,814백만원: 공사비(29,375백만원), 실시설계비(1,393백만원), 감리비(1,980백만원), 시설부대비(철거포함, 66백만원)
61) 당초 총사업비 32,574백만원: 공사비(28,612백만원), 실시설계비(1,153백만원), 감리비(1,980백만원), 시설부대비(철거포함, 829백만원)

의를 추가로 진행하였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사전절차가 면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 관련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증·개축’과 유사한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절차를 면밀하게 수행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2151-310)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2022~, 출연)는 중소기업 R&D 사업 추진을 위하여 R&D 사업 기획, 과제평가, 사업관리에 필요한 기획, 평가, 관리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75억 1,4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지특)(R&D)	7,514	7,514	-	-	-	7,514	7,514	-	-	7,618

□ 검토의견

(1) 연례적 대규모 행사비용 별도 편성 필요

동 사업의 2024년도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비, 평가비, 관리비로 각각 4억 9,700만원, 9억 1,500만원, 4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 인건비 14억 9,900만원, 간접비 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기획평가관리비 세부 편성 내역

구분	금액	세부내역
기획비	497	가. 중장기 전략기획 (116백만원) ・산출내역: 1개× 19.3백만원 × 6개월 ≒ 116백만원 나. 사업기획(예타) (250백만원) ・산출내역: 2개 × 14.7백만원 × 9개월 ≒ 250백만원 다. 사업기획(비예타) (75백만원) ・산출내역: 1개 × 8.3백만원 × 9개월 ≒ 75백만원 라. 사업개선기획 (56백만원) ・산출내역: 1개 × 9.3백만원 × 6개월 ≒ 56백만원
평가비	915	가. 선정평가 (665백만원) ・산출내역: 2,216개 × 30.0만원 ≒ 665백만원 나. 종료평가 (219백만원) ・산출내역: 731개 × 30.0만원 ≒ 219백만원 다. 기타평가 (31백만원) ・산출내역: 104개 × 29.8만원 ≒ 31백만원
관리비	4,434	가. 일반관리 (313백만원) ・산출내역: 사업진도관리 166백만원, 과제정산 19백만원, 법률자문 52백만원, 일반관리기타 76백만원 나. 성과관리 (405백만원) ・산출내역: 성과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79백만원, 성과관리 기타 326백만원 다. 별도조직운영비 (3,716백만원) ・산출내역: 별도조직기평비(지역평가사업단(14개)) 3,716백만원
인건비	1,499	・내부인건비(1,148백만원), 외부인건비(351백만원)
간접비	169	・산출내역: 기획평가비의 3% 내외로 편성(169백만원)
합계	7,51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기획평가관리비 중 관리비는 기술료 징수, 성과추적 조사 등 과제 종료 이후의 성과확산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24년 편성 내역은 사업진도관리 등 일반관리를 위해 3억 1,300만원, 성과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등 성과관리를 위해 4억 500만원, 지역평가사업단(14개)의 기획평가관리비 등 별도조직 운영비로 3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춘천에서 “제2회 지역혁신대전”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동 행사의 대행용역 대금으로 4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3억 5,000만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에서, 1억 1,200만원은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에서 각각 집행하였음.

제2회 지역혁신대전 행사 대행용역 관련 대금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세목	집행내역	집행일	집행액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일반용역비	선금	2024.10.28	112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일반용역비	중도금	2024.11.20	211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일반용역비	잔금	2024.12.19	139
합계				4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출연, 2022~)은 지역 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연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시군구연고산업을 육성하며, 제주 지역에 소재한 산업기술단지의 거점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0억 1,3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특화산업 육성(제주)	5,013	5,013	-	-	-	5,013	5,013	-	-	5,013
지역주력산업 육성	3,783	3,783	-	-	-	3,783	3,783	-	-	3,783
시군구연고산업육성	795	795	-	-	-	795	795	-	-	795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435	435	-	-	-	435	435	-	-	43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대전의 행사 내용에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전시에 의한 기업 홍보,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역혁신 사례발표에 의한 지역혁신기관 성과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 사업의 기관운영출연금에서 지역혁신대전 행사 대행용역 관련 대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나,

제주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를 제주 계정에서만 집행하는 것은 지역별 기업 참여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적

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62].

뿐만 아니라, 2024년 지역혁신대전은 제2회 행사이고, 동 행사는 2023년부터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하여 제1회 행사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2017년부터 매년 열리던 행사인 점을 고려하면[63], 예산 편성 시 과거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 행사의 차년도 시행 여부, 적정 규모, 적정 방식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향후 지역혁신대전과 같은 연례적 대규모 행사는 적정 세부사업 내에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하여 예산 편성 시 이루어지는 평가, 환류, 적정성 심사 등을 거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62)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와 유사한 목적의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지특회계, 3336-302)',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지특회계, 3336-302)'이 있음

63) 2017년(대전, 31백만원 집행), 2018년(전주, 49백만원 집행), 2019년(목포, 40백만원 집행), 2020년(경주, 30백만원 집행), 2021년(대구, 40백만원 집행), 2022년(대구, 179백만원 집행), 2023년(대전, 360백만원 집행)

2. 지식산업센터(제주)(5151-302),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지식산업센터(자율)’(2012~, 보조)는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임. ‘지식산업센터(제주)’(2021~, 보조) 및 ‘지식산업센터(세종)’(2021~, 보조)는 각각 제주, 세종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임.

‘지식산업센터(자율)’의 경우 2024년도 예산현액 637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교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제주)’는 2024년도 예산현액 42억 4,900만원, ‘지식산업센터(세종)’은 2024년도 예산현액 52억원을 전액 집행·교부하였음.

2024년도 지식산업센터 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식산업센터(자율)	63,770	63,770	-	-	-	63,770	63,770	-	-	85,699
지식산업센터(제주)	4,249	4,249	-	-	-	4,249	4,249	-	-	-
지식산업센터(세종)	5,200	5,200	-	-	-	5,200	5,200	-	-	3,805

□ 검토의견

(1)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마련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고[64],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더하여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65].

---

6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사전절차 이행 여부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4.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 등

6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자율)’의 2021~2024년 연도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은 2021년 36.3%, 2022년 38.6%, 2023년 40.5%, 2024년 28.7%로 저조한 실정임.

2021~2024년 지식산업센터(자율)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식산업센터(자율)			
	예산현액	교부액 (A)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2021	61,998	50,648	18,369	36.3
2022	61,154	61,154	23,651	38.6
2023	123,408	123,408	49,392	40.5
2024	63,770	63,770	18,325	**28.7**

주: 전년도 이월액의 실집행액은 각 연도별 실집행액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제주) 및 지식산업센터(세종)의 실집행률 또한 2024년 기준 각각 67.6%, 26.2%로서, 최초 사업추진연도인 2021년도 이후 전반적인 집행 부진 상황이 계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1~2024년 지식산업센터(제주) 및 지식산업센터(세종)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식산업센터(제주)				지식산업센터(세종)			
	예산현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예산현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1	1,000	1,000	264	26.4	1,000	1,000	-	-
2022	750	750	728	97.1	-	-	-	-
2023	10,001	10,001	4,505	45.0	5,995	5,995	-	-
2024	4,249	4,249	2,874	**67.6**	5,200	5,200	1,361	**26.2**

주: 전년도 이월액의 실집행액은 각 연도별 실집행액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초기 행정절차, 설계공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시공 시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절차,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행위에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1년 추진 사업부터는 사업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연차별 공사비 편성비율을 조정[66]했으며, 신규 센터 후보지에 대해서도 건립부지 확보 증빙자료와 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등이 사전에 제출된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2024년 사업추진 시에는 지자체별 센터 건립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른 예산 소요액 파악 및 그에 따른 예산배정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있음.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 전반의 전년도 이월분을 제외한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계속해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교부 단계에서부터 신청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집행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66)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사업 시작연도는 설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10억원)을 편성하고, 2~5년차에 10억원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5:20:50:25로 나누어 편성하는 것으로 운영 중임.

또한, 연례적으로 교부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조금 교부원칙 준수 및 보조금 집행기간을 고려한 교부 필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67].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3월 12일 '지식산업센터(제주)' 사업에 편성된 2024년 보조금 예산현액 42억 4,900만원을 지자체에 일시에 전액 교부하였음.

2024년 지식산업센터(제주) 보조금 교부 내역

지출일자	지 출 건 명	지출금액 (백만원)	지출처 (수령인)
2024.03.12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	4,249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4,24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6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센터의 경우 해당연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공사잔금 지급 등의 사유로 일시에 교부했다고 설명하나, 동 사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방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연도 실집행액(28억 7,400만원, 실집행률 67.6%)을 고려하면 일시 교부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지식산업센터(자율)'의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 수행이 어려운 11월 이후에 교부금을 교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하반기 교부를 지양하는 등 보조금 집행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지식산업센터(자율) 보조금 교부 내역

지출일자	지 출 건 명	지출금액 (백만원)	지출처 (수령인)
2024.03.08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	1,600	경상남도
2024.03.08	〃	3,300	경상북도
2024.03.08	〃	1,000	전북특별자치도
2024.03.11	〃	8,087	충청북도
2024.03.11	〃	1,000	경상남도
2024.03.11	〃	550	경상남도
2024.03.11	〃	3,628	충청북도
2024.03.11	〃	2,545	충청북도
2024.03.11	〃	1,500	경상북도
2024.03.12	〃	3,000	광주광역시
2024.03.12	〃	1,000	광주광역시
2024.03.12	〃	4,800	전라남도
2024.03.12	〃	700	광주광역시
2024.03.12	〃	2,097	전라남도
2024.03.12	〃	1,000	전라남도
2024.03.13	〃	3,000	충청북도
2024.03.22	〃	5,200	강원특별자치도

지출일자	지 출 건 명	지출금액 (백만원)	지출처 (수령인)
2024.03.25	〃	9,094	충청남도
2024.03.29	〃	1,000	대전광역시
2024.03.29	〃	1,000	대전광역시
2024.11.28	〃	456	울산광역시
2024.12.04	〃	3,600	충청남도
2024.12.17	〃	294	울산광역시
2024.12.24	〃	4,319	대구광역시
합 계		63,770	

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날짜 또는 짧은 기간에 두번 교부한 것처럼 보이나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교부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센터건립에 따른 자재대금, 기성금 지급시기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11월 이후에 교부하였다고 설명하나, 이는 해당 지자체의 센터건립 진행이 그만큼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2024년 예산 편성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지자체별 건립 사업 진행률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창업인프라지원(5153-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인프라지원’(1998~, 보조)은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술·경영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현액은 84억 6,800만원이고 8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4년도 창업인프라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업인프라지원	8,468	8,468	-	-	-	8,468	8,464	-	4	7,110

□ 검토의견

(1) 창업보육센터 자격 자진반납 원인분석에 기반한 사업 재설계 필요

‘창업인프라지원’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로 지정·운영하여 초기(예비)창업자에게 사업공간과 경영·기술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데, 2025년 6월말 기준 총 245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음.

창업보육센터 지정·운영 현황

(단위: 개, %)

구분	대학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협단체			민간기관	TP·창경			합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정부	지자체	소계	공공기관	협단체	소계		TP	창경	소계	
BI	35	6	144	185	12	5	7	12	10	15	25	9	1	1	2	245
비율	14.3	2.4	58.8	75.5	4.9	2.0	2.9	4.9	4.1	6.1	10.2	3.7	0.4	0.4	0.8	100

주: TP는 테크노파크, 창경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말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창업보육센터 전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조 4,776억원이고, 2024년말 기준 창업보육센터 전체 입주기업의 고용인원은 19,922명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실적

(단위: 억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22,150	23,667	26,906	26,492	24,776
고용인원	23,476	23,598	23,429	21,997	19,9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부실운영 등으로 인한 취소가 아닌 자격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창업보육센터 자격에 대한 자진반납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2023년 1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15건이 발생함.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자진반납	3	9	5	11	15	43
부실운영	1	-	-	1	-	2
합 계	4	9	5	12	15	4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2024년 창업보육센터 지정 건수는 총 32건인데 같은 기간 자진반납 건수는 이보다 11건이 많은 총 43건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반납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지정	3	13	4	8	4	32
반납	3	9	5	11	15	4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현황(세부)

연도	BI 명	지정취소일	취소사유
2020년 (4건)	서울신기술창업센터	2020-02-20	자진반납
	김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0-03-02	지정취소(부실운영)
	조선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0-05-26	자진반납
	스마트세계로누림터 창업보육센터	2020-09-29	자진반납
2021년 (9건)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창업보육센터	2021-01-08	자진반납
	수원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1-01-19	자진반납
	KTB네트워크㈜	2021-01-19	자진반납
	광주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1-03-08	자진반납
	디자인비즈니스스튜디오	2021-03-08	자진반납
	서울벤처인큐베이터	2021-04-14	자진반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2021-04-14	자진반납
	KAIST 창업보육센터	2021-05-18	자진반납
	IAE창업보육센터	2021-10-12	자진반납
2022년 (5건)	을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2-02-28	자진반납
	Blue BI	2022-02-28	자진반납
	한국광기술원 신기술창업센터	2022-05-12	자진반납
	충북대학교 미래융합 T-팩토리	2022-07-12	자진반납
	르호봇 창업보육센터	2022-10-05	자진반납
2023년 (12건)	잡앤조이&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	2023-04-14	자진반납
	바이오소재실용화 창업보육센터	2023-04-14	자진반납
	아이빌트세종 창업보육센터	2023-04-14	자진반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	2023-04-14	자진반납
	평택대학교 글로벌 피어선 창업보육센터	2023-06-05	지정취소(부실운영)
	출판지식 창업보육센터	2023-06-15	자진반납
	신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3-06-15	자진반납
	문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3-07-05	자진반납
	동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3-07-13	자진반납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2023-11-23	자진반납
	시너지 창업보육센터	2023-11-23	자진반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창업보육센터	2023-11-23	자진반납
2024년 (15건)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01-25	자진반납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04-02	자진반납
	글로벌벤처센터	2024-04-02	자진반납
	인천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2024-04-02	자진반납
	부산창업보육미래센터	2024-04-30	자진반납
	탄소융합부품소재창업보육센터	2024-04-30	자진반납
	스마일빌드 창업보육센터	2024-04-30	자진반납
	울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06-30	자진반납
	강릉영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06-30	자진반납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06-30	자진반납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2024-07-31	자진반납
	동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09-06	자진반납
	연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09-26	자진반납
	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4-12-09	자진반납
	경남테크노파크 로봇 창업보육센터	2024-12-31	자진반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등[68]의 운영 의지 부족, 센터 운영비의 정부 지원 축소[69] 등을 이유로 창업보육센터 자격을 반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함.

창업보육센터 1개당 평균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보조금	42.7	40.4	40.6	31.9	29.0
보조금 구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13.4백만원 **운영비** 29.3백만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14.0백만원 **운영비** 26.4백만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11.6백만원 **운영비** 29.0백만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17.5백만원 **운영비** 14.4백만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19.8백만원 **운영비** 9.2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등 수요자들이 창업보육센터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는 현상은 그간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이 공간 제공 등 물리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 창업생태계의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창업자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을 시사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인프라지원'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공간 제공 등 창업보육 방식과 관련하여 수요자에 대한 심층적

68)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경기) 등 공공기관의 자진반납 사례도 있음.

69)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사업인 창업생태계기반구축과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비 지원의 단계적 보조율 하향, 센터의 자립화 등을 통한 일정수준 감축을 제언하고 있음.

인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하고 변화된 창업생태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24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11조 1,389억원 규모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전년 이월액 포함)을 통해 2,715억원을 증액해 계획현액은 2.4% 증가한 11조 4,104억원으로 운용됨.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티몬·위메프사태,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4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450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4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850억원,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300억원, 재도약촉진 8억원, 중진기금기본경비 4억원을 증액하였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2.13.	-	-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30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확보를 위해 기존 지출 예산 내의 비목(세목) 조정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30	
8.21	기타민간차입금	2,7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400	티몬·위메프 사태, 고금리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한 계획변경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5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400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00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800	
			밸류체인안정화자금	30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2	재도약촉진	8	
			중진기금기본경비	4	
11.28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	재해발생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계획변경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50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계획현액의 99.1%인 11조 3,095억원을 수납하고 지출은 계획현액의 99.1%인 11조 3,095억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4 이월 (f)	차액 (e+f-d)
		2024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49,790	-	-	49,790	49,122	98.7	-	△668
	▪ 융자원금회수	42,350	-	-	42,350	43,416	102.5	-	1,066
	▪ 재산수입	7,024	-	-	7,024	5,406	77.0	-	△1,618
	- 융자이자수입	6,974	-	-	6,974	5,287	75.8	-	△1,687
	- 기타재산수입	50	-	-	50	119	238.0	-	6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109	-	-	109	71	65.0	-	△38
	- 기타잡수입	109	-	-	109	71	65.0	-	△38
	▪ 기타경상이전수입	307	-	-	307	229	74.7	-	△78
	2. 정부내부수입	15,971	-	-	15,971	15,171	95.0	-	△800
	▪ 일반회계전입금	15,243	-	-	15,243	14,443	94.8	-	△800
	▪ 복권기금전입금	728	-	-	728	728	100.0	-	-
	3. 민간차입금	45,498	2,700	-	48,198	48,700	101.0	-	502
	4. 여유자금회수[70]	130	12	3	145	102	70.2	-	△43
	합계	111,389	2,712	3	114,104	113,095	99.1	-	△1,009
지출	1. 사업비	54,635	2,708	3	57,346	56,371	98.3	55	△920
	▪ 융자사업	45,072	2,700	-	47,772	47,687	99.8	-	△85
	▪ 경상사업	4,937	8	-	4,945	4,083	82.6	55	△807
	▪ 자본사업	4,626	-	3	4,629	4,601	99.4	-	△28
	2. 기금운영비	1,389	4	-	1,394	1,393	99.9	-	△1
	3. 정부내부지출[71]	8,092	-	-	8,092	8,092	100.0	-	-
	▪ 공자기금예수원금	8,000	-	-	8,000	8,000	100.0	-	-
	▪ 공자기금예수이자	92	-	-	92	92	100.0	-	-
	4. 차입원금상환	39,900	-	-	39,900	39,900	100.0	-	-
	5. 차입이자상환	7,372	-	-	7,372	7,197	97.6	-	△175
	6. 여유자금운용	-	-	-	-	142	-	-	142
	합계	111,389	2,712	3	114,104	113,095	99.1	55	△954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70) 전기이월금

7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분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 11조 1,389억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2,715억원(2.4%) 증가한 11조 4,104억원이며, 실현된 수입액은 계획현액 대비 99.1%에 해당하는 11조 3,095억원임.

2024년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과부족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49,790	-	-	49,790	49,123	△668
○ 융자원금회수	42,350	-	-	42,350	43,416	1,066
○ 재산수입	7,024	-	-	7,024	5,406	△1,618
- 융자이자수입	6,974	-	-	6,974	5,287	△1,687
- 기타재산수입[72]	50	-	-	50	119	69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109	-	-	109	71	△38
- 기타잡수입[73]	109	-	-	109	71	△38
○ 기타경상이전수입	307	-	-	307	229	△78
□ 정부내부수입	15,971	-	-	15,971	15,171	△800
○ 일반회계전입금	15,243	-	-	15,243	14,443	△800
○ 복권기금전입금	728	-	-	728	728	-
□ 민간차입금	45,498	-	2,700	48,198	48,700	502
□ 여유자금회수 등	130	3	12	145	102	△43
합계	111,389	3	2,712	114,104	113,095	△1,009

융자원금회수는 중소기업 융자금의 정기·조기회수에 따른 융자원금 수입으로 2024년에는 4조 3,416억원을 수납하였음.

72) 예치금이자 등
73) 연수사업 등 경상사업수입

재산수입은 융자이자수입과 사업대기성자금의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및 출자회사 배당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재산수입으로 2024년에는 5,406억원을 수납하였음.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연수수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임차료 등 경상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4년에는 71억원을 수납하였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6[74]에 따른 기술료 수입금 및 「경륜·경정법」제18조에 따른 수익금 법정 배분[75] 출연금으로 2024년에는 229억원을 수납하였음.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조 4,443억원 및 복권기금전입금[76] 728억원을 수납하였고, 융자사업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중진채를 발행하는 민간차입금은 4조 8,700억원을 수납하였음.

---

7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75) 경주사업자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100분의 17.5, 진흥공단인 경우 100분의 4로 수익금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음.

7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수행에 따른 이차보전을 목적으로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수익금의 6.356%를 중진공에 배분함.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당초계획 11조 1,389억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전년 이월액 포함)을 통한 증액분 2,715억원을 포함한 11조 4,104억원임. 이 중 99.1%에 해당하는 11조 3,095억원을 집행하였음.

전용 및 증감액(2,712억원)은 티몬·위메프사태,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융자예산(2,700억원)과 추가 융자예산 집행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한 재도약촉진(8억원), 중진기금 기본경비(4억원) 증액에 따른 것임.

2024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융자사업	45,072	-	2,700	47,772	47,687	-	85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0,078	-	400	20,478	20,399	-	79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2,005	-	450	2,455	2,455	-	-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5,318	-	400	5,718	5,718	-	-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4,789	-	300	15,089	15,083	-	6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	-	850	2,350	2,350	-	-
○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1,382	-	300	1,682	1,682	-	-
□ 경상사업	4,937	-	8	4,945	4,083	55	807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6	-	-	106	105	-	1
○ 글로벌협력기반구축	18	-	-	18	18	-	-
○ 글로벌화지원플랫폼	403	-	-	403	347	55	1
○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4	-	-	34	34	-	-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재도약촉진	108	-	8	116	115	-	1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7	-	-	7	7	-	-
○ 연수사업	239	-	-	239	237	-	2
○ 창업성공패키지	975	-	-	975	974	-	1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취업지원	47	-	-	47	46	-	1
○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3,000	-	-	3,000	2,200	-	800
□ 자본사업	4,626	3	-	4,629	4,601	-	28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4,500	-	-	4,500	4,500	-	-
○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6	-	-	56	56	-	-
○ 전북연수원건립	68	-	-	68	40	-	28
○ 전남연수원건립	2	3	-	5	5	-	-
<사업비 총계>	54,635	3	2,708	57,346	56,371	55	920
□ 차입금원금상환	39,900	-	-	39,900	39,900	-	-
□ 차입금이자상환	7,372	-	-	7,372	7,197	-	175
□ 기금운영비	1,389	-	4	1,394	1,393	-	1
□ 정부내부지출	8,092	-	-	8,092	8,092	-	-
□ 여유자금운용	-	-	-	-	142	-	△142
합계	111,389	3	2,712	114,104	113,095	55	954

불용액은 1,096억원으로, 계획 현액대비 사업비 920억원, 낙찰차액 불용 등 기금운영비 1억원, 계획 대비 신규 발행채권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이자 절감분 175억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글로벌화 지원플랫폼의 당초 계획대비 일정 지연에 따라 55억원이 발생하였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지출) 이월액·불용액 사유

(단위: 억원)

구 분	이월액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55	920	
융자사업	-	85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이차보전금(79),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이차보전금(6) 잔액 불용
경상사업	55	807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1), 글로벌화지원플랫폼(1), 재도약촉진(1), 연수사업(2), 창업성공패키지(1),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1), 비은행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800) 등 낙찰차액,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 -글로벌화지원플랫폼(55) 물류센터 설비구축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월
자본사업	-	28	전북연수원건립(28) 낙찰차액 등 잔액 불용
【기금운영비】	-	1	중진기금기본경비(1) 낙찰차액 등 잔액 불용
【정부내부지출】	-	-	
【차입금이자상환】	-	175	중진채 발행* 계획 대비 신규 발행채권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차입금이자(175) 경감 * (계획) 3.150% → (발행) 3.000%
합 계	55	1,096*	

주: 여유자금운용(보전지출) 제외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4			2023		
자산						
Ⅰ. 유동자산			41,294			41,239
1. 현금및현금성자산			600			643
1) 현금및현금등가물		600			643	
2. 단기금융상품			309			198
1) 기타의단기금융상품		309			198	
3. 단기투자증권			1,015			2,134
1) 채무증권		965			2,134	
2) 지분증권		50				
4. 미수채권		743			433	
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7			8		
2) 미수이자수익	189			183		
3) 기타의미수금	547			243		
미수채권대손충당금		72	671		56	377
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	7			7		
2)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2			1		
3)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63			48		
5. 단기대여금		39,335			38,341	
1) 정부외단기대여금	39,335			38,341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999	38,336		890	37,450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999			890		
6. 기타유동자산			363			436
1) 재고자산		11			20	
2) 파생상품자산		-			52	
3) 선급비용		5			4	
4) 선급법인세		6			8	
5) 지급보증금		341			352	
Ⅱ. 투자자산			248,425			247,163
1. 장기대여금		203,767			207,036	
1) 정부외장기대여금	203,767			207,03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24,087	179,680		22,501	184,535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24,087			22,501		
2. 장기투자증권			67,205			62,134
1) 채무증권		1,373			1,114	
2) 지분증권		65,832			61,019	
3. 기타투자자산			1,539			494

	2024			2023	
1) 투자회원권		13			14	
2) 파생상품자산		1,526			480	
Ⅲ. 일반유형자산			3,277			3,263
1. 토지			1,668			1,669
2. 건물		1,548			1,52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42	1,306		174	1,347
3. 구축물		55			41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3	52		2	39
4. 기계장치		171			172	
1) 이동성기계장치	171			172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8	3		166	6
1) 이동성기계장치감가상각 누계액	168			166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323			324	
1) 사무용기기	319			320		
2) 운반건설기계및차량	4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84	39		279	45
1) 사무용기기감가상각 누계액	280			275		
2) 운반건설기계및차량감가상각누계액	4			4		
6. 기타일반유형자산			-			-
1)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 누계액		-	-		-	-
1)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09			157
1) 건설중인토지		-			-	
2) 건설중인건물		209			157	
Ⅳ. 무형자산			109			109
1. 소프트웨어			109			109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84			78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24			31	
Ⅴ. 기타비유동자산			359			283
1. 장기미수채권		106			82	
1) 장기미수이자수익		-			-	
2) 장기기타의미수금	106			82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106	-		82	-
1) 장기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106			82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359			283
1) 장기지급보증금		359			283	
자산계			293,464			292,057
부채						
Ⅰ.유동부채			54,324			48,906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3,298			47,899
1) 유동성장기공채	53,000			39,900		
유동성장기공채할인발행차금	1	52,998		1	39,899	
2)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			-	
3)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300			8,000	
2. 기타유동부채			1,026			1,007

	2024			2023	
1) 미지급금		10			12	
2) 예수금		46			46	
3) 예수보증금		5			5	
4) 미지급비용		964			943	
5) 선수수익		0			2	
6) 파생상품부채		-			-	
Ⅱ. 장기차입부채			190,648			191,674
1. 공채		190,690			191,423	
공채할인발행차금		42	190,648		49	191,374
2. 장기차입금			-			300
1) 국내장기차입금		-			-	
2) 정부내장기차입금		-			300	
Ⅲ. 장기충당부채			322			305
1. 퇴직급여충당부채			322			304
1) 퇴직급여충당부채	946			906		
퇴직보험예치금	0			1		
국민연금전환금	0			0		
퇴직연금운용자산	624	322		(601)	304	
2. 기타장기충당부채			-			0
1) 소송충당부채		-			0	
Ⅳ. 기타비유동부채			1,732			4,254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1,732			4,254
1) 파생상품부채		1,703			4,227	
2) 장기예수보증금		29			27	
부채계			247,026			245,139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20,571			20,571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3,007			23,560
Ⅲ. 순자산조정			2,860			2,786
순자산계			46,438			46,917
부채와 순자산계			293,464			292,057

2024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자산은 29조 3,464억원으로 전년대비 0.48%인 1,407억원이 증가함. 세부 계정과목별로 보면, 평가 감액 및 원금 일부 수령으로 단기 채무증권이 1,168억원 감소하였으며, 집행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단기저리융자금이 994억원 증가하였음. 또한, 모태펀드 신규출자 등으로 지분증권 4,813억원 증가하

였으며, 기타자산이 76억원 증가함.

부채는 24조 7,026억원으로 전년대비 0.76%인 1,887억원이 증가함. 세부 계정과목별로 보면, 채권 규모의 증가로 장·단기차입금이 전년대비 4,409억원 증가하였으며, 파생상품부채 감소 등으로 기타부채가 2,522억원 감소하였음.

순자산은 4조 6,438억원으로 전기 대비 479억원(1.02%)이 감소하였음. 이는 적립금 및 잉여금 감소 553억원(재정운영결과 5,153억원 손실, 출연금 전입 4,601억), 순자산조정 증가 74억원의 결과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25,786	△10,254	15,532	22,871	△6,924	15,947
1.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471	△23	448	471	△20	451
2.창업환경조성	13,647	△5,313	8,333	13,645	△3,456	10,189
3.벤처기업활성화지원	10	△23	△12	16	△32	△17
4.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1,226	△4,855	6,371	7,904	△3,373	4,531
5.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	-	-	116	-	116
6.중소기업육성지원	-	-	-	30	△3	27
7.중소기업인력지원	432	△40	392	689	△40	649
Ⅱ.관리운영비			523			485
1.인건비			376			344
2.경비			147			141
(1)복리후생비			34			30
(2)소모품비			5			5
(3)인쇄비			1			1
(4)광고선전비			0			-
(5)지급수수료			41			38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6)세금과공과			12			13
(7)수도광열비			1			1
(8)지급보험료			1			1
(9)교육훈련비			3			3
(10)지급임차료			17			13
(11)유류비			1			0
(12)수선유지비			1			2
(13)여비교통비			3			4
(14)업무추진비			2			2
(15)기타이전비용			-			3
(16)감가상각비			25			24
Ⅲ.비배분비용			116			279
1.재화및용역제공원가			-			0
2.대손상각비			24			22
3.이자비용			83			256
4.평가손실			9			1
5.기타비용			0			0
Ⅳ.비배분수익			387			429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264			314
2.이자수익			68			78
3.평가이익			0			0
4.자산처분이익			-			0
5.기타수익			55			36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5,784			16,281
Ⅵ.비교환수익 등			10,630			9,536
1.제재금수익			25			28
2.기타재원조달및이전			10,605			9,508
Ⅶ.재정운영결과(Ⅴ-Ⅵ)			5,153			6,745

2024회계연도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순원가는 총 1조 5,5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인 415억원이 감소함. 주요 프로그램별 순원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6,371억원, 창업환경조성 8,333억원, 중소기업인력지원 392억원,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448억원,

벤처기업활성화지원 △12억원임.

개별 프로그램에 배분되지 않는 관리운영비는 지원부서 인건비 등 523억원임. 기타 현행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의 경우, 비배분비용은 116억원으로 전년대비 58.4%인 163억원이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387억원으로 전년대비 9.8%인 4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비교환수익은 수익 처리되는 일반회계출연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094억원이 증가한 1조 630억원임.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2024년 기초순자산	20,571	23,560	2,786	46,917
1. 보고금액	20,571	23,560	2,786	46,917
Ⅱ. 재정운영결과	-	5,153	-	5,153
Ⅲ. 조정항목	-	4,601	74	4,674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134	134
2. 파생상품평가손익	-	-	△47	△47
3. 자산재평가이익	-	-	△13	△13
4. 기타순자산의증감	-	4,601	-	4,601
Ⅳ. 2024년 기말순자산(Ⅰ-Ⅱ+Ⅲ)	20,571	23,007	2,860	46,438
Ⅴ. 2023년 기초순자산	20,571	27,382	2,621	50,574
1. 보고금액	20,571	27,382	2,621	50,574
Ⅵ. 재정운영결과	-	6,745	-	6,745
Ⅶ. 조정항목	-	2,923	165	3,089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195	195
2. 파생상품평가손익	-	-	△5	△5
3. 자산재평가이익	-	-	△24	△24
4. 기타순자산의증감	-	2,923	-	2,923
Ⅷ. 2023년 기말순자산(Ⅴ-Ⅵ+Ⅶ)	20,571	23,560	2,786	46,917

2024회계연도 순자산변동은 기말순자산(4조 6,438억원)과 기초순자산(4조 6,917억원)의 차액인 479억원 감소이며, 이는 재정운영결과 5,153억원 손실, 출연금 자본전입 4,601억원, 순자산조정 74억원으로 구성됨.

Ⅱ. 검토의견

1. 재도약지원자금 융자(516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재도약지원자금 융자’(2007~, 융자)는 산업 구조전환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직접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5,718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도 재도약지원자금 융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재도약지원자금 융자	531,800	571,800	-	571,800	571,800	-	-	750,100

□ 검토의견

(1) 대손비율 관리 필요

동 사업을 통한 직접 융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짐.

먼저, 사업전환자금은 급격한 사업·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 구

조전환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을 의미하며, 재창업자금은 민간 금융권이 지원을 회피하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 지원,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위기징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을 의미함.

2024년도 재도약지원자금 융자 세부내역별 계획 내역

구분	2024년도 예산 편성 내역
사업전환자금	○ 사업전환자금 : 610개사 × 512백만원(312,500백만원)
재창업자금	○ 재창업자금 : 606개사 × 165백만원(100,000백만원)
구조개선전용자금	○ (당초) 468개사 × 255백만원(119,300백만원) ○ (변경) 추가 지원에 따른 400억원 증액 변경 - 123개사 × 325백만원(40,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융자자산에 관한 재무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1~2024년 모두 동 사업 수행에 따라 기초융자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2021년 5,618억 1,300만원에서 2024년 9,121억 3,500만원으로 62.4% 증가하였고, 구조개선전용자금의 경우 2021년 1,111억 2,200만원에서 2024년 2,549억 6,700만으로 129.4%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1～2024년도 융자자금별 융자 세부내역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융자자산 기초 대비 기말 변동 내역					
		기초 융자 잔액 (A)	융자 집행액 (B)	대손액 (C)	융자 원금 상환액 (D)	기말 융자 잔액 (A+B-C-D)	융자 보조 원가 충당금 기초 대비 기말 증감
21년	사업전환자금	561,813	100,000	8,704	88,155	564,954	-
	재창업자금	514,388	100,000	26,773	49,980	537,635	-
	구조개선전용자금	111,122	50,000	6,989	14,741	139,392	-
	합계	1,187,323	250,000	42,466	152,876	1,241,981	-
22년	사업전환자금	564,954	250,000	1,233	77,490	736,231	-
	재창업자금	537,635	100,000	14,199	60,170	563,267	-
	구조개선전용자금	139,392	70,000	4,888	19,689	184,815	-
	합계	1,241,981	420,000	20,320	157,348	1,484,313	-
23년	사업전환자금	736,231	250,000	7,004	67,092	912,135	34,895
	재창업자금	563,267	75,000	25,479	66,089	546,698	6,609
	구조개선전용자금	184,815	98,000	5,077	22,771	254,967	3,657
	합계	1,484,313	423,000	37,561	155,953	1,713,800	45,161
24년	사업전환자금	912,135	312,500	15,080	98,477	1,111,078	6,631
	재창업자금	546,698	100,000	44,398	72,987	529,312	511
	구조개선전용자금	254,967	159,300	10,534	31,805	371,928	777
	합계	1,713,800	571,800	70,013	203,269	2,012,318	7,91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같은 기간 기초융자잔액 대비 대손액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총 기초융자잔액의 1조 1,873억 2,300만원 대비 대손액이 424억 6,600만원으로 대손액 비율이 3.6% 수준에서 2024년 1조 7,138억원 대비 700억 1,300만원인 4.1%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재창업자금의 경우 2024년 대손처리된 채권 금액이 443억 9,800만원에 달하여, 기초 융자잔액 5,466억 9,800만원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2021～2024년 자금유형별 대손액 비율

(단위: 천원, %)

년도		기초융자잔액 (A)	대손액 (B)	기초융자잔액 대비 대손액 (B/A)
2021년	사업전환자금	561,812,893	8,704,231	1.5
	재창업자금	514,387,970	26,772,727	5.2
	구조개선전용자금	111,122,375	6,989,007	6.3
2022년	사업전환자금	564,953,971	1,232,846	0.2
	재창업자금	537,635,188	14,198,974	2.6
	구조개선전용자금	139,392,204	4,888,270	3.5
2023년	사업전환자금	736,231,333	7,004,325	1.0
	재창업자금	563,266,634	25,479,344	4.5
	구조개선전용자금	184,815,075	5,076,834	2.7
2024년	사업전환자금	912,135,224	15,080,384	1.7
	재창업자금	546,697,817	44,398,229	8.1
	구조개선전용자금	254,966,781	10,534,180	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2022년 코로나19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유동성 지원 확대에 따른 부실이연의 효과가 2024년 대손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77],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에 대해 각각 유망기업 선별 및 사후관리 강화, 재창업기업의 역량 제고, 민간 협업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총 700억 1,300만원의 융자잔액이 대손처리 되는 등 원리금의 회수 및 수납 실적이 개선되

77)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재창업자금은 정책목적 상 민간금융권 등이 기피하는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부실률이 他정책자금 대비 높은 특성을 보인다는 설명임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동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정책자금 효과 감소 문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매분기별 공시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자금유형별 대출조건

구분	대출조건
사업전환자금	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유형: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통상변화대응: 2.0% 고정
재창업자금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구조개선전용자금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2.5% 고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재도약지원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에 직접대출하는 직접대출 방식과 은행을 통해 기업에 대출하는 대리대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여 금리가 결정됨[78].

7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모두 중소기업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동일함. 다만, 대리대출의 경우 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차입할 때 기업에게 대출할 금리에서 1%(취급수수료)를 제외함.

2024년 재도약지원자금 직접대출·대리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직접대출	대리대출	합계
재도약지원자금(융자)	4,239(74.1)	1,479(25.9)	5,718(100.0)
재창업자금	764(76.4)	236(23.6)	1,000(100.0)
구조개선전용자금	1,593(100.0)	-	1,593(100.0)
사업전환자금	1,882(60.2)	1,243(39.8)	3,125(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준 자금유형별 대출조건

구분	대출조건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기준금리-0.3%p
■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 **■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사업전환 등)** ■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 등)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협동화 등))	기준금리
■ 신성장기반자금(Net-Zero 유망기업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기준금리+0.5%p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결정되는 대출금리는 정책자금이 실제 자금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위기 극복에 효과를 발휘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사업관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통화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2024년 10월 기존 3.50%에서 3.25%로 인하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3.0%, 2025년 2월

2.75%로 추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79],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024년도 한 해간 2.9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도 1분기 3.15%로 0.25%p 상승하였음.

2023년 1분기 이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현황

(단위: %)

구분	20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20	3.20	2.90	2.90
체감금리	2.75	2.59	2.65	2.79
중진채 누적 평균 조달금리	2.34	2.45	2.61	2.73
공자기금 예탁금리	4.04	3.57	3.47	3.81
구분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90	2.90	2.90	2.90
체감금리	2.68	2.68	2.64	2.69
중진채 누적 평균 조달금리	2.80	2.88	2.93	2.96
공자기금 예탁금리	3.89	3.43	3.51	3.12
구분	**2025년도**			
	1분기	**2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15	3.15		
체감금리	2.96	2.98		
중진채 누적 평균 조달금리	2.99	2.99		
공자기금 예탁금리	2.98	2.79		

주1: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25.6월 기준 73.8%), 체감금리는 직접대출 수혜기업에게 책정된 실제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주2: 공자기금 예탁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되는 금리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79) 이와 같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개별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때에 적용되는 예탁금리가 2024년도 1분기 기준 3.89%에서 2025년도 1분기 2.98%로 하락하였음.

이에 따라 정책자금 수요자들이 실제 대출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는 체감금리는 2024년도 1분기 기준 2.68%에서 2025년도 1분기 2.96%로 상승하였음.

이와 같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그에 따른 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동결 및 2025년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부 규정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요강」에 따라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의 자금조달 수단인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이하 “중진채”라 함)의 누적평균 조달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구조로, 코로나 19, 복합위기 상황 속 고금리 시기 발행한 중진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했으나, 2023년 3분기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다가 2025년 1분기에 불가피하게 인상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및 이자지출의 균형을 통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였음.

다만, 이러한 정책자금 금리 결정 방식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통화완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기조가 시작되는 등 시장여건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오히려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나, 경기부양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에 대해 성과창출 중소기업 금리 인하,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을 통한 채무부담 완화 노력과 대내외 경제상황 및 중소기업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금리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005~, 출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에 기금을 출자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 4,5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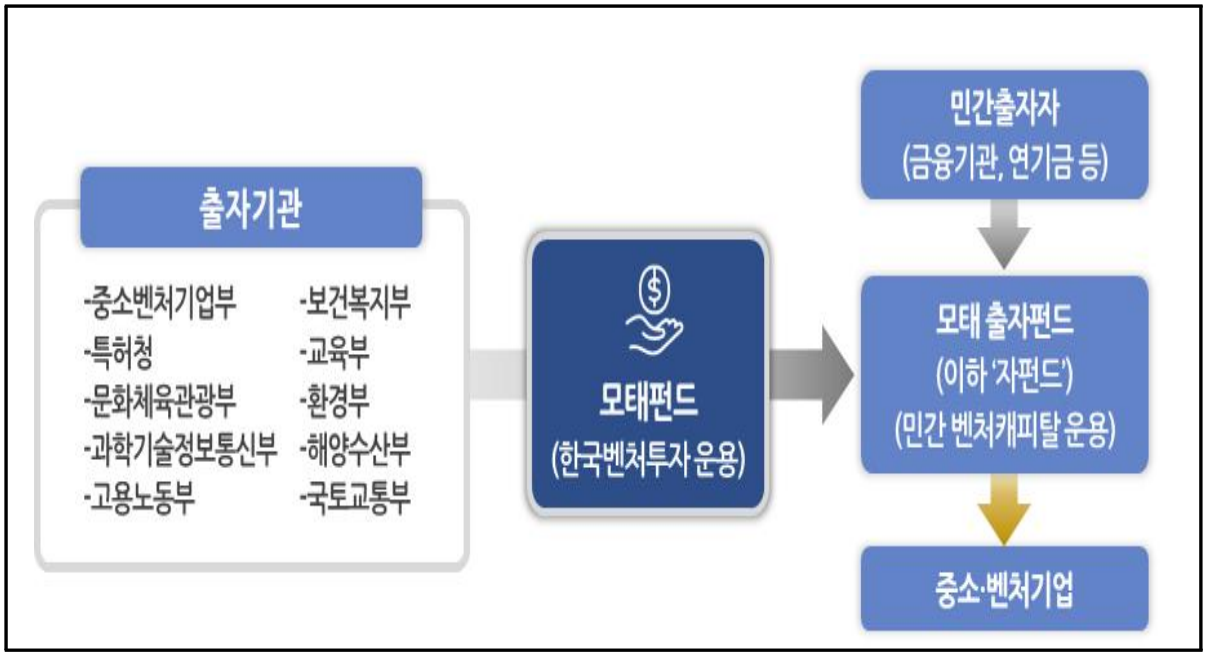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450,000	450,000	-	450,000	450,000	-	-	500,000

□ 검토의견

(1) 민간부문 출자비중 및 결성실적 제고 필요

동 사업은 아래 개념도와 같이 모태펀드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 부처가 출자하고, 모태펀드는 다시 민간이 운용하는 자펀드에 출자하며, 자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임.

중소기업모태펀드 개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가 출범한 2005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포함 10개 부처)는 10조 8,513억원의 출자를 통해 총 1,344개, 44조 6,809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이러한 자펀드에서 10,929개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총 34조 4,303억원을 투자함[80].

한편, 최근 벤처투자펀드 결성 실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2021년 17조 8,481억원에서 2024년 10조 5,550억원으로 40.9% 줄었고, 결성 펀드 수는 2021년 1,198개에서 2024년 811개로 32.3% 감소하였음.

80) 308개 자펀드(8조 9,268억원) 청산을 통해 2조 9,341억원을 모태펀드에 배분

2020~2024년 벤처투자펀드 결성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결성금액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벤처투자조합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15.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23.0%
결성펀드 수	650	1,198	902	859	811	△5.6%
벤처투자조합	206	404	380	290	286	△1.4%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44	794	522	569	525	△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펀드 결성액의 출자자별 구성 현황을 보면, 2024년 전체 벤처투자펀드 결성액 10조 5,550억원 중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 3,516억원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며, 2021년 9.8%, 2022년 8.5%, 2023년 7.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자 비중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출자 비중이 2021년 80.9%, 2022년 81.9%, 2023년 83.3%로 상승세였다가 2024년 들어 77.0%로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정책자금 투입이 민간 투자를 실질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20~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의 출자자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11.3%
	비중	26.0%	19.1%	18.1%	16.7%	23.0%	-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37.8%
	비중	13.3%	9.8%	8.5%	7.5%	12.8%	-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4.2%
	비중	5.5%	5.0%	5.6%	2.7%	3.8%	-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26.8%
	비중	3.6%	2.3%	2.1%	3.4%	3.1%	-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14.4%
	비중	3.6%	2.1%	1.9%	3.1%	3.2%	-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25.1%
	비중	74.0%	80.9%	81.9%	83.3%	77.0%	-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23.5%
	비중	8.3%	16.2%	13.1%	11.0%	10.4%	-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5.0%
	비중	18.3%	22.4%	20.7%	20.9%	21.9%	-
금융기관(산은 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31.9%
	비중	23.3%	25.2%	27.8%	32.4%	27.2%	-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6.2%
	비중	11.2%	3.8%	7.5%	5.7%	3.1%	-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12.3%
	비중	9.8%	11.5%	10.6%	10.5%	11.4%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11.4%
	비중	3.0%	1.8%	2.1%	2.8%	3.0%	-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주: 2024년 기금출자액 4,500억원과 청산 후 재출자액을 합친 총 출자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모태펀드를 통한 정부의 출자가 민간 벤처투자 자금의 수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자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중요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81]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작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제18조[82]는 자펀드의 결성을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1차) 완료하도록 하되, 한국벤처투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2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결성시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계정 소관기관[83](참고자료 1 참조)과 협의하여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2024년 자펀드 결성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2차 결성시한을 도과해 추가 유예기간에 결성된 비중이 2020년 11.5%, 2021년 14.9%, 2022년 33.8%, 2023년 41.2%로 매년 증가[84]하다가 2024년에는 추가 유예기간(6개월 초과)에 결성된 자펀드 비중이 0%를 기록[85]하였음.

---

8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모태조합 출자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모태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82)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제18조(결성 시한) ① 자조합은 선정 발표일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서 조합 결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계정별로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결성시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계정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83)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제4조(출자 재원 및 계정 구분) 모태조합의 출자 재원별로 출자 가능한 계정과 계정별 모태조합 소관기관(이하 “계정 소관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고, 계정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한다.

84) 이에 국회는 모태조합에서 출자한 자펀드의 조기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0회계연도·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함.

85) 중소벤처기업부는 펀드 선정 평가시 펀드 결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펀드 결성시한 연장 요건을 명확화한 것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자펀드 조기결성의 원인을 펀드 선정 평가 시 펀드 결성 가능성 평가 비중을 상향한 점, 펀드 결성시한 연장 요건을 명확화(최대 2개월 연장 원칙, 펀드 결성목표액의 70% 이상 모집 시 1개월 연장, 90% 이상 모집 시 추가 1개월 연장)한 점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신속한 자펀드 결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음.

자펀드 결성 소요기간

('25.4월 기준, 단위: 개)

연도	펀드 수	펀드결성기간					
		결성시한 (3개월 이내)		연장기간 (6개월 이내)		추가 유예기간 (6개월 초과)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2020	78 (100.0)	50	64.1%	19	24.4%	9	11.5%
2021	87 (100.0)	30	34.5%	44	50.6%	13	14.9%
2022	74 (100.0)	11	14.9%	38	51.4%	25	33.8%
2023	34 (100.0)	2	5.9%	18	52.9%	14	41.2%
2024	64 (100.0)	32	50.0%	32	50.0%	-	-

주: 각 연도에 공고하여 결성된 자펀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자펀드 결성 이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투자 집행을 통해 미투자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펀드 미투자 잔액

(단위: 억원)

선정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미투자 잔액	-	2,478	9,458	7,610	16,341	**35,887**

주: 2025년에 선정된 펀드는 현재 결성이 진행 중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 표와 같이 2020~2024년 선정된 자펀드 중 현재 투자기간이 남아있는 펀드의 미투자 잔액[86]은 3조 5,887억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나타났을 때 집행하기 위한 대기 자금으로 볼 수도 있기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Dry Powder)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최근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경기 불확실성, 회수시장 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자펀드의 투자 지연과 미투자 잔액 증가는 유망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자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성장 기회 상실과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투자 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86) 펀드의 미투자액에서 펀드 운용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참고자료 1]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 별표1

출자 재원별 출자 가능한 계정 및 계정 소관기관(제4조 관련)

출자 재원	출자 가능 계정	계정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진계정, 엔젤계정, 지방계정, 청년계정, 혁신모험계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계정	
일반회계	중진계정(고용)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영화발전기금	문화계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계정	
일반회계	영화계정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계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과기정통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계정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계정	특허청
일반회계	보건계정, 중진계정(복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교육계정	교육부
기후대응기금	환경계정	환경부
일반회계	해양계정	해양수산부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계정, 국토교통혁신계정 (공유주택 분야)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국토교통혁신계정	

3. 연수사업(5451-307)

□ 사업 및 결산 개요

‘연수사업’(1982~, 직접 및 보조)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연수원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 239억 1,000만원 중 236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연수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연수사업	23,910	23,910	-	23,910	23,667	-	243	23,785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300	300	-	300	224	-	76	-

□ 검토의견

(1) 국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지연추진 재발방지 필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은 경남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87][88]와 연계하여 교육과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K-기업가정신 기념관을 건축하려는 2024년도 신규 사업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동 사업 계획액을 경남 진주시에 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계획현액 3억원 중 2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다음의 표는 동 내역사업(‘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의 실집행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자인 경남 진주시에 3억원의 계획액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인 경남 진주시는 교부된 계획액 3억원 중 2억 2,4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74.7%)하고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7,6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파악됨.

---

87) 2022년에 개소한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는 기업가정신 함양과 관련된 전시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공간임. 경남 진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 CEO, 예비창업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K-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수행 중임.

88)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연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 2019. 02월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업무협약식(진주시-한국경영학회)
- 2019. 07월 진주 K-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운영 업무협약(진주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0. 11월 리모델링 공사 시행(진주시 지수면 소재 옛 지수초등학교 리모델링)
- 2022. 03월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개소
- 2022. 04월 K-기업가정신 교육 운영 시작

2024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시행주체(경남 진주시)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당초	수정 (A)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사업	300	300	300	300	-	300	224	-	76	74.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내역사업('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액 3억원이 반영됨.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결과(연수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정부안	국회 증액	확정
연수사업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23,610 (-)	300 (300)	23,910 (300)

즉,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의 필요성 및 역할 도출,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분석, 건립 기본구상(안) 제시, 운영방안 제시 및 검토, 건립 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민감도 분석, 정책적 분석 등) 및 비용 추정 등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관련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가 계획됨.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신규로 반영된 취지를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경남 진주시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어야 함.

그런데 사업자 공모 절차에 따라 2024년 4월에 보조사업자로 경남 진주시가 선정되었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은 2024년 7월에 이르러 발주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에야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할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됨.

그 결과 2025년 1월 말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도출[89]되었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90]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관련 설계비 등 관련 계획액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관련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 것은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차례 시행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8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150일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되어 2025년 1월말 완료되었다고 함.

9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련 계획액을 반영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규모 및 총 사업비, 사업추진 여부 및 연차별 소요액을 확정한 후 재정당국 등과의 계획액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조속히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건립사업의 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향후 국회에서 신규로 계획액이 반영된 사업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예산편성 취지가 적기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기술보증기금

Ⅰ. 기술보증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기술보증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은 3조 1,543억원 규모로, 수입·지출규모의 변동없는 세부항목간 변동만 실시하여,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과 동일한 3조 1,543억원으로 운용함.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간 변경 내역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도약 전략('24.4.29)」 등에 따른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구축 소요 반영으로 기보IT운영(정보화)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수시인력증원에 따른 무기직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채용기간 확대로 상용임금 2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법원의 현금공탁명령 증가에 따른 공탁금 지출소요 증가로 2회차에 걸쳐 구상권관리를 총 98억원 증액하였고, 의무지출사업의 추가 지출소요가 발생하여 보증료환급과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를 각각 47억원과 72억원 증액하였으며, 영업조직 신설 등에 따른 제경비 추가 소요 발생에 따라 기금관리비(공공요금및제세 등) 8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상승분을 여유자금운용 내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기금관리비에서 감액하여 전체 지출규모에 변동이 없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6.24	변동없음	-	기보IT운영(정보화)	3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도약 전략('24.4.29)」등에 따른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구축 소요 반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3	
7.3	변동없음	-	기금관리비 [상용임금]	2	기획재정부 수시인력증원에 따른 무기직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채용기간 확대에 따른 상용임금 증액 소요 반영
			기금관리비 [고용부담금]	△2	
7.23	변동없음	-	구상권관리	69	법원의 현금공탁명령 급증에 따른 공탁금 예산 증액 소요 반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69	
10.30	변동없음	-	보증료환급	47	보증 만기前 보증해지 급증으로 보증료환급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 예상분 증액소요 반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47	
11.6	변동없음	-	기금관리비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국외업무여비]	8	영업점 신설 등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증액소요 반영
			기금관리비 [무형자산]	△8	
11.26	변동없음	-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72	유동화회사보증의 사고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대위변제 사업비 부족 예상분 증액소요 반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72	
12.4	변동없음	-	구상권관리	29	법원의 현금공탁명령 급증에 따른 공탁금 예산 증액 소요 반영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29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계획현액의 115.7%인 3조 6,486억원을 실현하고 지출은 계획현액의 115.7%인 3조 6,486억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5 이월 (f)	차액 (e+f-d)
		2024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14,792	-	-	14,792	15,919	107.6	-	1,127
	▪ 금융기관출연금	6,235	-	-	6,235	7,357	118.0	-	1,122
	▪ 이자수입	907	-	-	907	1,084	119.5	-	177
	▪ 구상채권회수	1,570	-	-	1,570	1,552	98.9	-	△18
	▪ 보증료 등 수입	3,479	-	-	3,479	3,469	99.7	-	△10
	▪ 기타수입	2,601	-	-	2,601	2,457	94.5	-	△144
	2. 정부내부수입	2,251	-	-	2,251	2,221	98.7	-	△30
	▪ 일반회계전입금	200	-	-	200	200	100.0	-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기금전입금	-	-	-	-	-	-	-	-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1,950	-	-	1,950	1,950	100.0	-	-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101	-	-	101	71	70.3	-	△30
	3. 여유자금회수 등	14,500	-	-	14,500	18,346	126.5	-	3,846
	합계	31,543	-	-	31,543	36,486	115.7	-	4,943
지출	1. 사업비	15,728	220	-	15,948	15,899	99.7	-	△49
	▪ 대위변제	13,340	72	-	13,412	13,407	100.0	-	△5
	▪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751	-	-	751	743	98.9	-	△8
	▪ 기타사업비	1,637	148	-	1,785	1,749	98.0	-	△36
	2. 기금운영비	2,160	-	-	2,160	2,141	99.1	-	△19
	▪ 인건비	1,580	-	-	1,580	1,575	99.7	-	△5
	▪ 기금관리비	580	-	-	580	566	97.6	-	△14
	3. 정부내부지출	1,950	-	-	1,950	1,950	100.0	-	-
	▪ 공자기금예탁금	1,950	-	-	1,950	1,950	100.0	-	-
	4. 여유자금운용	11,705	△220	-	11,485	16,496	143.6	-	5,011
	합계	31,543	-	-	31,543	36,486	115.7	-	4,943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3조 1,543억원이며, 실현된 수입액은 계획현액의 115.7%에 해당하는 3조 6,486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4,943억원이 증가함.

2024년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증감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14,792	-	-	14,792	15,919	1,127
○ 금융기관출연금	6,235	-	-	6,235	7,357	1,122
○ 이자수입	907	-	-	907	1,084	177
○ 구상채권회수	1,570	-	-	1,570	1,552	△18
○ 보증료 등 수입	3,479	-	-	3,479	3,469	△10
○ 기타수입	2,601	-	-	2,601	2,457	△144
□ 정부내부수입	2,251	-	-	2,251	2,221	△30
○ 일반회계전입금	200	-	-	200	200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기금전입금	-	-	-	-	-	-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1,950	-	-	1,950	1,950	-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101	-	-	101	71	△30
□ 여유자금회수 등	14,500	-	-	14,500	18,346	3,846
합계	31,543	-	-	31,543	36,486	4,943

금융기관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91]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92]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수입[93]으로, 2024년에는 7,357억원을 수납하였음.[94]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직원 주택대여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4년에는 1,084억원을 수납하였음.

구상채권회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95]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법 제37조[96]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2024년에는 1,552억원을 수납하였음.

보증료 등 수입은 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

---

9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92)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은행 등을 의미함.

93)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등)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출연기준융자금(은행계정 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한 금액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요율(기준요율은 13.5bp이며, 직전반기 출연금액 대비 대위변제금액에 따라 최대 ±2bp 차등요율이 가감됨)을 곱하여 산출된 출연료에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감액 금액(동일 군 내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합산한 출연금을 수납하고 있음.

94)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으로부터 7,357억원을 수납함.

95)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96)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술보증료와 기술평가료 등으로 2024년에는 3,469억원을 수납하였음.

기타수입은 민간출연금[97] 712억원, 팩토링매출채권회수 774억원, 중소기업 투자주식 매각 등에 따른 매각대 156억원 및 매각익 617억원 등으로 2024년에는 2,457억원을 수납하였음.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221억원을 수납하였음.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4년도 기술보증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3조 1,543억원이며, 이 중 집행실적은 3조 6,486억원으로 계획 대비 4,943억원이 증가함.

사업비는 기술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1조 3,407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743억원, 구상권관리와 기술평가 등의 기타사업비 1,749억원 등 총 1조 5,899억원을 지출하였음.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1,575억원, 기금관리비 566억원, 총 2,141억원을 지출하였음.

97) 민간출연금은 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금, INNO-BIZ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지자체 협약 특별출연 등으로 구성됨.

2024년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A)	계획변경(B)		계획현액(C=A+B)	지출액(D)	차년도 이월(E)	증감(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사업비	15,728	-	220	15,948	15,899	-	49
○ 기술보증대위변제	13,302	-	-	13,302	13,297	-	5
○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38	-	72	110	110	-	-
○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751	-	-	751	743	-	8
○ 구상권관리	167	-	98	265	251	-	14
○ 기술평가	70	-	-	70	67	-	3
○ 기술·경영지도	34	-	-	34	26	-	8
○ 보증료환급	245	-	47	292	283	-	9
○ 업무용부동산취득	21	-	-	21	21	-	-
○ 팩토링금융	995	-	-	995	993	-	2
○ 기보IT운영(정보화)	105	-	3	108	108	-	-
□ 기금운영비	2,160	-	-	2,160	2,141	-	19
○ 인건비	1,580	-	-	1,580	1,575	-	5
○ 기금관리비	580	-	-	580	566	-	14
□ 정부내부지출	1,950	-	-	1,950	1,950	-	-
○ 공자기금예탁금	1,950	-	-	1,950	1,950	-	-
□ 여유자금운용	11,705	-	△220	11,485	16,496	-	△5,011
합계	31,543	-	-	31,543	36,486	-	△4,943

불용액은 68억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구상권관리 14억원, 보증료 환급 9억원 등임.

2024년도 기금운용(지출) 불용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49	기술보증대위변제(5),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8), 구상권관리(14), 기술평가(3), 기술·경영지도(8), 보증료환급(9), 팩토링금융(2),
【기금운영비】	19	인건비(5), 기타운영비(14)
합 계	68	

주: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 제외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4			2023		
자산						
Ⅰ.유동자산			37,682			40,2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2			133
1) 보통예금		30			58	
2) 기타현금성자산		172			75	
2. 단기금융상품			12,487			13,328
1) 정기예금		12,454			13,300	
2) 기타의단기금융상품		33			28	
3. 단기투자증권			23,744			23,589
1) 채무증권		3,090			3,020	
2) 지분증권		20,654			20,569	
4. 미수채권		637			755	
1) 미수이자수익	318			663		
2) 기타의미수금	319			92		
미수채권대손충당금		93	544		57	698
1)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93			57		
5. 단기대여금		4			1,954	
1) 정부내단기예탁금	-			1,950		
2) 단기융자금	4			4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4		-	1,954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			-		
2)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		
6. 기타유동자산			701			543
Ⅱ.투자자산			6,620			4,447
1. 장기금융상품			540			790
1) 정기예금		540			790	
2 장기투자증권			4,095			3,616
1)채무증권		-			-	
2)지분증권		3,979			3,516	
3)기타의장기투자증권		116			100	
3. 장기대여금		1,980			36	
1) 정부내장기대여금	1,950			-		
2) 정부외장기대여금	30			3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2	1,978		2	34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			-		
2)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2			2		

	2024			2023		
4. 기타투자자산			7			7
1) 회원권		7			7	
Ⅲ.일반유형자산			1,369			1,318
1. 토지			742			737
2. 건물		571			549	
1)건물	571			549		
건물감가상각누계액		56	515		37	512
1)건물감가상각누계액	56			37		
3. 기계장치		201			195	
1)기계장치	201			19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78	23		166	29
1)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78			166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424			415	
1)집기・비품・차량운반구	424			415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92	32		375	40
1)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92			375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57			-
1)건설중인건물		57			-	
Ⅳ.무형자산			40			44
1.산업재산권		-			-	
2.소프트웨어		40			44	
Ⅴ.기타비유동자산			3,663			3,387
1.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3,657			3,387	
2.장기미수채권		6			-	
자산계			49,374			49,441
부채						
Ⅰ.유동부채			2,206			2,003
1.기타유동부채		2,206			2,003	
Ⅱ.장기충당부채			13,399			12,089
1. 퇴직급여충당부채		394			383	
2. 소송충당부채		4			62	
3. 보증충당부채		12,980			11,623	
4. 기타장기충당부채		21			21	
Ⅲ.기타비유동부채			9			8
부채계			15,614			14,100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03,609			103,609
Ⅱ.적립금및잉여금			(70,676)			(69,243)
Ⅲ.순자산조정			827			975
순자산계			33,760			35,341
부채와순자산계			49,374			49,441

2024년말 기술보증기금의 총자산은 4조 9,374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억원 감소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전년대비 자산처분이익 959억원, 금융기관 등 출연금 342억원, 보증수익 95억원 등 증가에도, 대위변제 2,191억원 증가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유동자산이 2,563억원 감소하였으며, 투자자산은 보증연계투자 확대에 따른 장기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2,173억원 증가함. 일반유형자산은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51억원 증가하였고,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4억원 감소하였으며, 기타비유동자산은 현금공탁 증가추세에 따른 공탁금 증가 등으로 276억원 증가함.

2024년말 총부채는 1조 5,61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514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유동부채는 직전년도 대비 보증료 관련 선수수익 113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3억원이 증가하였고, 장기충당부채는 보증잔액 및 보증사고발생 증가로 대위변제준비금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3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장기선수수익의 증가로 1억원 증가함.

2024년도 순자산 조성 및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 활동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1,633억원 손실,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조정항목 52억원 반영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1,581억원이 감소한 3조 3,760억원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14,958	(3,949)	11,009	12,130	(3,906)	8,224
1. 기술금융지원	14,958	(3,949)	11,009	12,130	(3,906)	8,224
Ⅱ. 관리운영비			722			672
1. 인건비			400			334
2. 경비			322			338
(1) 복리후생비			45			68
(2) 소모품비			5			5
(3) 인쇄비			2			3
(4) 광고선전비			11			11
(5) 지급수수료			13			14
(6) 세금과공과			19			19
(7) 수도광열비			7			6
(8) 지급보험료			-			-
(9) 교육훈련비			21			19
(10) 지급임차료			13			11
(11) 유류비			-			-
(12) 수선유지비			1			1
(13) 여비교통비			9			8
(14) 업무추진비			9			9
(15) 외주용역비			124			117
(16) 감가상각비			42			44
(17) 평가손실			-			2
(18) 기타비용			1			1
Ⅲ. 비배분비용			24			100
1. 자산처분손실			21			97
2. 기타비용			3			3
Ⅳ. 비배분수익			2,053			1,237
1. 이자수익			806			949
2. 자산처분이익			1,244			285
3. 기타수익			3			3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702			7,759
Ⅵ. 비교환수익등			8,069			7,726
1. 부담금수익			7,357			6,723
2. 기타재원조달및이전			712			1,003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633			33

2024년 프로그램순원가는 1조 1,009억원으로 전년대비 2,785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프로그램순원가 구성요소인 프로그램총원가는 보증사고금액 증가 등에 따른 대손상각비 2,622억원 증가, 대위변제준비비 105억원 증가 등으로 총 2,828억원이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투자주식 등 처분에 따른 자산처분이익이 14억원 감소하였으나 보증수익 95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총 43억원이 증가하였음.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자산운용 관련 처분손실 감소 등의 영향으로 76억원이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자산운용 관련 이자수익 143억원 감소하였으나, 처분이익 959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816억원이 증가하였음.

비교환수익은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7,357억원 및 특별협약출연금 712억원으로 구성되며, 전기대비 출연금수익 증가로 비교환수익이 총 343억원 증가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103,609	(69,210)	(184)	34,215
1. 보고금액	103,609	(69,210)	(184)	34,215
Ⅱ. 재정운영결과		33		33
Ⅲ. 조정항목			1,159	1,159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1,165	1,165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손익			(6)	(6)
5. 기타순자산의증감				
Ⅳ.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	103,609	(69,243)	975	35,341
Ⅴ. 당기 기초순자산	103,609	(69,243)	975	35,341
1. 보고금액	103,609	(69,243)	975	35,341
Ⅵ. 재정운영결과		1,633		1,633
Ⅶ. 조정항목		200	(148)	52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147)	(147)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손익			(1)	(1)
5. 기타순자산의증감		200		200
Ⅷ. 당기 기말순자산(Ⅴ-Ⅵ+Ⅶ)	103,609	(70,676)	827	33,760

기초순자산은 기본순자산 10조 3,609억원에서 결손금 누계액 6조 9,243억원 및 순자산조정 금액 975억원을 감안한 3조 5,341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 1,633억원 손실이 발생하였음.

조정항목은 정부출연금 200억원 발생, 투자증권평가손익 147억원 및 자산재평가손익 1억원 감소를 반영한 52억원이며, 기초순자산에 재정운영결과 및 조정항목을 감안한 기말순자산은 전년대비 1,581억원이 감소한 3조 3,760억원임.

Ⅱ. 검토의견

1. 민간출연금(59-594) 수입결산

□ 사업 및 결산 개요

‘민간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법」[98]에 따라 법정출연금 외에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특별출연을 받는 수입과목임.

2024년도 계획액은 1,073억원이었으나 711억 5,4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음.

2024년도 민간출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민간출연금	107,300	107,300	-	107,300	71,154	71,154	-	-	85,550

98)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 검토의견

(1)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민간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의 하나로서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른 특별출연금을 징수하는 수입과목임.

기술보증기금은 2024년도 계획으로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금 1,064억 5,000만원, 이노비즈[99]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금 3억 5,000만원, 한국벤처투자 협약 특별출연금 5억원 등 총 1,073억원을 계상하였음.

2024년도 민간출연금 계획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계획액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기관의 BIS비율 제고를 위해 법정부담금 외에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특별출연	106,450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이노비즈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기보는 전액보증을 지원하고, 협약금융기관은 보증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출연	350
지자체 등 협약 특별출연	지자체 등이 특정분야 보증지원실적 등에 따라 특별출연	-
한국벤처투자 협약 특별출연	한국벤처투자(KVIC)가 기보에 자금을 출연하고,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대상 특별 보증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출연	500
합계		107,300

자료: 기술보증기금

99) 이노비즈 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은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등과 같은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원을 출연받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은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재원 규모에 대한 조건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재원을 출연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그런데 '민간출연금'의 202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계획은 1,073억원으로 세웠으나 711억 5,4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66.3%로 저조함.

2019~2024년 민간출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당초	수정				
'19	40,900	40,900	40,900	110,953	110,953	271.3
'20	55,200	55,200	55,200	125,348	125,348	227.1
'21	100,000	100,000	100,000	128,258	128,258	128.3
'22	100,000	100,000	100,000	68,107	68,107	68.1
'23	100,000	100,000	100,000	100,380	100,380	100.4
'24	107,300	107,300	107,300	71,154	71,154	66.3

자료: 기술보증기금

최근 '민간출연금'의 결산내역을 보면 수납실적이 당초 계획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2019년에 당초 409억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1,109억 5,3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271.3%이고, 2020년 계획은

552억원인데 실적은 1,253억 4,800만원으로 수납률이 227.1%이며, 2021년 계획은 1,000억원인데 실적은 1,282억 5,800만원으로 수납률이 128.3%이고, 2022년 계획은 1,000억원인데 실적은 681억 700만원으로 수납률이 68.1%임.

당초 계획과 실제 수납에 차이(과소 또는 과다 수납)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에서 계속하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2024년에 1,064억 5,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계획액의 61.7%인 656억 3,800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음.

또한, 이노비즈 금융지원협약 특별출연은 2024년에 3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26억 8,3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이 766.6%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한편, 지방자치단체 협약 특별출연에서 매년 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3년 계획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 수입계획안에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2024년 역시 수입계획에 없었으나 23억 3,3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됨.

2019~2024년 민간출연금 결산내역(상세)

(단위: 백만원, %)

출연 종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	20,000	85,160	33,900	99,443	99,100	116,274	99,300	61,223	98,760	94,361	106,450	65,638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400	370	400	270	400	274	400	379	240	1,072	350	2,683
지자체 등 협약 특별출연	-	3,150	-	22,000	-	10,707	-	6,505	1,000	4,447	-	2,333
한국벤처투자 특별출연	-	-	-	-	-	-	-	-	-	500	500	500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특별출연	1,000	1,568	1,300	96	500	1,003	300	-	-	-	-	-
농·수협 임의출연*	19,500	20,705	19,600	3,539	-	-	-	-	-	-	-	-
합계 (수납률)	40,900	110,953 (271.3)	55,200	125,348 (227.1)	100,000	128,258 (128.3)	100,000	68,107 (68.1)	100,000	100,380 (100.4)	107,300	71,154 (66.3)

주: 농·수협 임의출연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20.3월부터 법정출연금으로 수납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민간출연금'은 과거 3개년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입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은행과의 특별출연 확대[100] 등으로 2019~2021년 민간출연금 수입 규모가 증가하였다가 최근에는 수납액이 감소하고 있고,

2024년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어 금융권·대기업·공공기관 등이

100)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555억원),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106억원) 등

재정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협약 출연 의지가 다소 낮아짐에 따라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이 계획 대비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또한, 출연금 先 수납 후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공급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과 달리, 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협약보증 대출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이 차년도에 정산하여 출연하는 구조로 운영되기에 정확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민간출연금은 경제상황과 금융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당초 계획과 실제 수납에 계속하여 괴리가 발생하면 기술보증기금의 효율적인 계획안 작성 및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술보증대위변제’(1989～)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 1조 3,301억 9,500만원 중 1조 3,29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기술보증대위변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술보증대위변제	1,330,195	1,330,195	-	1,330,195	1,329,686	-	509	1,330,200

□ 검토의견

(1) 사고율 급증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필요

동 사업은 2021·2022회계연도에 계획액의 절반 정도만 소진하였는데, 이는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편성 시 추정한 사고율보다 실제 사고율이 낮았기 때문임.

그러나, 2023년부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23년은 당초 계획액인 1조 535억원에서 자체변경을 통하여 560억원을 증액시킨 계획현액 1조 1,095억원 중 1조 1,05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이고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04.9%였으며, 2024년은 당초 계획액 1조 3,301억 9,500만원 중 1조 3,296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임.

최근 기술보증대위변제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구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액	1,008,300	965,318	1,017,000	822,491	1,213,000	663,512	1,291,500	662,649	1,053,500	1,105,880	1,330,195	1,329,686
집행률	95.7		80.9		54.7		51.3		104.9*		99.9	

주: 2023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음.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정부의 금융권 상환유예조치 현황

구분	기간	대책	관련 지침
최초	2020.4.1. ~ 2020.9.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2020.3.19.,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2020.3월 중기부)
1차 연장	2020.10.1.~ 2021.3.31.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2020.8.27.,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0.9월 중기부)
2차 연장	2021.4.1.~ 2021.9.3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2021.3.2.,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1.3월 중기부)
3차 연장	2021.10.1.~ 2022.3.3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2021.9.16.,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1.9월 중기부)
4차 연장	2022.4.1. ~ 2022.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권 간담회」 (2022.3.23., 금융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운용지침 개정 (2022.3월 중기부)
5차 연장	2022.10.1.~ 2025.9.30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2022.9.27., 금융위)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운용 지침(2022.9월 중기부)

자료: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3년 및 2024년에는 이러한 조치가 2025년 9월까지로 연장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보증기업의 채무불이행(즉, 사고)에 따른 보증해지가 당초 추정치보다 높게 발생한 것임.

최근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3월
신규보증		52,859	52,465	48,480	78,208	49,276	42,638	60,957	55,156	13,202
보증잔액(A)		213,306	220,334	218,052	254,453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86,388
사고금액(B)		9,430	9,921	9,848	8,611	6,693	7,197	11,832	13,473	4,248
사고율	추정	4.8	4.8	4.8	4.8	4.5	4.8	4.0	4.6	4.9
	실제(B/A)	4.4	4.5	4.5	3.4	2.5	2.7	4.2	4.7	1.5
기본재산(C)		18,397	15,579	15,570	21,100	29,176	33,670	34,424	33,174	29,809
운용배수(A/C)		11.6	14.1	14.0	12.1	9.0	7.9	8.1	8.6	9.6

자료: 기술보증기금

최근 기술보증대위변제 사고율을 보면, 2019년에는 4.8%로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4.5%였고, 2020년에는 4.8%로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3.4%였으며, 2021년에는 4.5%를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2.5%, 2022년에는 4.8%를 추정하고 실제 사고율은 2.7%를 기록하여 2019~2022년의 4년 동안 모두 추정 대비 낮은 사고율을 보인 반면,

2023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0.8%p 낮은 4.0%의 추정사고율과 이에 상응하는 계획액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사고율은 추정치보다 0.2%p 높은 4.2%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사고율 상승 추세를 감안하여 전년도 보다 0.6%p 높은 4.6%로 추정사고율 및 해당 계획액을 편성하였음에도 실제 사고율은 추정치보다 0.1%p 높은 4.7%를 기록함.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및 연장, 그리고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져 코로나19 기간 동안(2020~2022년)의 보증 사고율은 과거 대비 1~2%p 낮았으나, 최근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 지속과 경기침체 등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보증 사고율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이를 코로나19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사고율은 2.5%~3.4%였지만, 2024년 사고율은 4.7%로서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고치인 4.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 전·후 기술보증 사고율 비교

(단위: %)

구 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기간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7월
사고율	4.4	4.5	4.5	3.4	2.5	2.7	4.2	4.7	3.23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금운용주체인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 사고율을 추정치(4.9%)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2025년 9월에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 복합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피보증기업 중 일부는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2025년 월간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보증잔액(A)	284,078	284,527	286,388	289,801	292,851	292,053	293,515
사고금액(B)	1,593	2,832	4,248	5,588	6,692	8,022	9,476
사고율(B/A)	0.56	1.00	1.48	1.93	2.29	2.75	3.23

주: 월별 사고금액은 누적 사고금액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술보증기금은 2020년부터 시작된 만기연장 조치가 2025년 9월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피보증기업의 부실이 동시에 현실화되어 사고율 급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014～)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101] 중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SPC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용공여 약정에 대하여 기금이 보증하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기한 내 상환되지 않거나 신용공여에 대한 보증 기한 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 110억 4,600만원 중 110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3,821	11,046	-	11,046	11,044	-	2	-

101) 기술중소·중견기업 등이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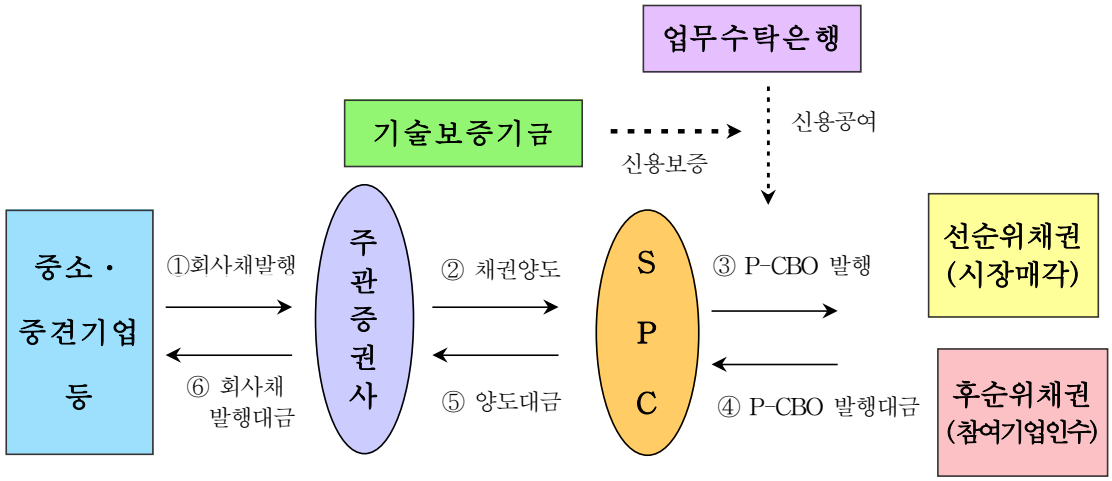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유동화증권 특수성에 기반한 사고율 예측 등 정교한 계획 수립 필요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운 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중소·중견기업 등에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102]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자금을 개별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임.

유동화회사보증 세부내용

○ **(편입지원가능 등급)**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회사채등급 BB- 이상
○ **(편입지원결정)**
- (중소기업) 기술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등을 평가
- (중견기업*) 기술평가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 등급 적용
  * 총자산 5천억원 미만



자료: 기술보증기금

102) 유동화회사가 매입한 회사채를 바탕으로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을 발행함.

최근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2019년 83.6%에서 하락하여 2021년 19.4%, 2022년 24.0%, 2023년 40.4% 등 낮은 집행률과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런데, 2024년에는 추세가 반전되어 당초 계획액으로 3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고율 상승으로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10억 4,600만원으로 증액 수정되었고, 110억 4,4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289.0%를 기록하였음.

최근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19	28,800	24,070	83.6	4,730
2020	18,700	12,577	67.3	6,123
2021	16,500	3,209	19.4	13,291
2022	9,811	2,355	24.0	7,456
2023	11,724	4,733	40.4	6,991
2024	3,821	11,044	289.0	-

주: 2024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과거 5개년의 평균 사고율 및 평균 대위변제보증해지율 등을 기반으로 2024년 사고금액 및 대위변제 지출소요를 산정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 복합위기 장기화 등으로 실제 사고금액 및 대위변제보증해지율이 상승하여 계획액과 실제 지출에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아래 표를 보면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의 기준이 된 사고율과 실제 발생한 사고율에는 지속적인 괴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다시 낮은 집행실적으로 나타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임.

최근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편성 사고율 및 실제 사고율

(단위: %)

구 분	편성 사고율	실제 사고율	괴 리(%p)
2019	7.2	7.9	0.7
2020	5.6	4.9	△0.7
2021	6.7	1.4	△5.3
2022	6.1	1.2	△4.9
2023	3.3	1.3	△2.0
2024	0.5	1.5	1.0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동 사업의 사고율 괴리(편성 사고율과 실제 사고율의 차이)는 기술보증대위변제의 사고율 괴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 사고율 괴리를 비교해 보면 기술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평균 1.0%p인데 반해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1.4%p 높은 2.4%p이고, 2024년의 경우만 따로 떼어 보면 기술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0.1%p인데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괴리율은 0.9%p 높은 1.0%p임.

유동화회사보증-기술보증 대위변제 편성 대비 실제 사고율 괴리 비교

(단위: %p)

구 분	유동화회사(A)	기술보증(B)	괴리 비교(A-B)
2019	0.7	△0.3	0.4
2020	△0.7	△1.4	0.7
2021	△5.3	△2.0	3.3
2022	△4.9	△2.1	2.8
2023	△2.0	0.2	1.8
2024	1.0	0.1	0.9
괴리 평균(절대값)	**2.4**	**1.0**	**1.4**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와 같은 현상은 유동화회사보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첫째, 유동화회사보증은 일반보증과는 달리 차환발생 시 2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가 기술보증에 대비하여 유동화회사보증에 더욱 크게 작용한 점,

둘째,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일반 보증부대출과 달리 유동화회사보증은 분기별로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경색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점,

셋째, 편입기업에 고액('23~'24 업체당 평균 신규보증 지원금액: 유

동화보증 19억원, 기술보증 4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유동화회사보증의 특성상,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사고만으로도 전체 사고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넷째, 유동화회사보증은 보증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만기 이후에 대위변제로 현실화(만기 : 유동화보증 3년, 기술보증 1년)되기 때문에, 기업부실이 단기에 파악되는 기술보증과 달리 사고 영향이 여러 해에 누적되어 만기 시점에 일괄적으로 대위변제로 이어지는 점 등이 있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대위변제와는 다른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만의 특수성과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동 사업 도입 이후 10여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산출한 계획액을 계상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2441-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2005~, 직접수행)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금은 투자수익을 통해 신규 보증여력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 751억 4,300만원 중 742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8,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	75,143	75,143	-	75,143	74,255	-	888	75,263

□ 검토의견

(1) 민간투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는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투자를 수행하

는 사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103]에 규정된 고유업무임.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거래 중인 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전문 투자조직과 자체 기술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짐.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투자대상·방식·한도

구 분	주요 내용
투자대상	▪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 중인 기업 ▪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기업(단,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제외) ▪ 투자용 기술사업평가등급 “TI8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투자방식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통합한도(보증+투자)는 200억원 이내)

자료: 기술보증기금

「2024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영향으로 전체 창업기업수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체 창업기업에서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03)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3의2.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 관련 통계

(단위 : 개,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증감 (23-24)
전체 창업기업수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55,712
기술기반 기업수 (비중)	228,949 (15.4)	239,620 (16.9)	229,416 (17.4)	221,436 (17.9)	214,917 (18.2)	△6,519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시장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기술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기금은 투자 수익을 통해 신규 보증여력과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동 사업 시작연도인 2005년부터 2024년까지 637개 기업에 총 5,962억원을 투자하여 2,336억원의 누적 투자수익(누적수익률 39.2%)을 거두었고 투자를 받은 기업 중 41개 기업이 IPO에 성공함.

보증연계투자 실적

(단위: 억원, 개)

구 분	2005~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투자금액	3,353	394	493	981	741	5,962
투자기업수	345	50	57	97	92	637

자료: 기술보증기금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는 민간투자시장의 소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지방기업, 기계장비·소재·화학 기업(소위 굴뚝 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민간 벤처캐피탈과 분야별 투자비중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기술보증기금 VS 민간 분야 및 투자방식별 투자금액 비중 비교

(단위: %)

구 분	기술보증기금				민간 벤처캐피탈			
	분야			투자방식	분야			투자방식
	창업	지방소재	기계장비·소재·화학	주식인수/SAFE방식	창업	지방소재	기계장비·소재·화학	주식인수/SAFE방식
2019	96.2	54.3	34.5	100.0	73.8	20.6	7.6	85.3
2020	100.0	60.9	16.4	100.0	70.8	21.8	10.5	85.7
2021	93.7	58.5	30.5	100.0	69.5	18.2	9.7	91.7
2022	89.7	70.4	40.4	100.0	70.0	19.4	10.3	91.0
2023	88.4	61.3	34.1	100.0	62.2	26.7	17.9	87.8
2024	89.8	71.7	38.1	100.0	53.9	24.7	19.8	87.8
평 균	**93.0**	**62.9**	**32.3**	**100.0**	**66.7**	**21.9**	**12.6**	**88.2**

주1.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에 우선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임.
2.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출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 KVCA YEARBOOK(2025.4월)”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의 6개년(‘19년~‘24년) 평균 창업기업 투자비중은 93.0%로 민간 벤처캐피탈의 66.7%보다 26.3%p 높았고, 지방소재 기업 투자 비중 역시 62.9%로 민간 벤처캐피탈의 21.9%보다 41.0%p 높았으며, 기계장비·소재·화학 등 전통 제조업 투자비중도 민간 벤처캐피탈의 12.6%보다 19.7%p 높은 32.3%임.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경우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

는 전환사채 등 사채성 투자[104]가 아닌 주식인수방식[105] 또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등 100% 지분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지방기업에 직접금융 조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선제적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은 축적된 기술평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위험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증연계투자를 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정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104) 사채(社債)성 투자: 기업이 투자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투자자(채권자)에게 부여해 주는 것으로 투자자는 유불리를 따져 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 사채성 투자 유치는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주식인수 방식과 달리 재무제표상 부채에 해당함.

105) 주식인수방식: 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투자주식의 매각,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해당함.

(2)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필요

동 사업을 통해 지난 5년동안 투자한 기업 통계를 보면 창업 후 1년 미만인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231억원으로 1년 평균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평균 9.4%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창업기업 투자액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합계 (평균)
1년 미만	35	33	68	53	42	231(46)
1~3년 이내	148	128	165	305	204	950(190)
3~7년 이내	72	208	209	509	419	1,417(283)
7년 초과	-	25	51	114	76	266(53)
계	255	394	493	981	741	2,864(573)

자료: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창업기업 투자비중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년평균
1년 미만	13.7	8.3	13.8	5.4	5.7	9.4
1~3년 이내	58.1	32.5	33.5	31.1	27.5	36.6
3~7년 이내	28.2	52.8	42.4	51.9	56.5	46.3
7년 초과	-	6.4	10.3	11.6	10.3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기술보증기금

한편, 창업 후 1~3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36.6%,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46.3%로, 창업 후 1년 이상 7년 미만 업력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비중이 82.9%에 달할 정도로 투자대상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창업한 지 1년 미만의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9.4% 투자비중을 보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1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기업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기업 지분 취득에 대한 현실적 제약[106]이 있으며, 1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민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함(2024년 기준 민간: 5.6%, 기술보증기금: 5.7%).

민간 VS 기술보증기금의 업력별 신규투자금액 비중 현황

(단위 :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민간	기보	민간	기보	민간	기보	민간	기보	민간	기보
1년 미만	6.3	13.7	6.1	8.3	9.5	13.8	6.1	5.4	5.6	5.7
1~3년 이내	24.4	58.1	18.1	32.5	20.2	33.5	18.5	31.1	13.4	27.5
3~7년 이내	40.1	28.2	45.3	52.8	40.4	42.4	37.6	51.9	34.9	56.5
7년 초과	29.2	-	30.5	6.4	29.9	10.3	37.8	11.6	46.1	10.3

민간 신규투자금액 비중 출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 KVCA YEARBOOK(‘25.4월)”
자료 : 기술보증기금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5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 비중도 신용보증기

10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경우 20% 이상 지분 취득시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 여부를 결정함.

금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음(2024년 기준 신용보증기금: 67.4%, 기술보증기금: 75.1%).

신용보증기금 VS 기술보증기금 투자금액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설립후 5년 이내	투자금액	37,479	22,333	44,573	32,872	38,078	38,982	41,381	69,180	42,291	55,643
	투자비중	63.4	87.5	75.4	83.5	72.3	79.1	65.8	70.6	67.4	75.1
설립후 5년 초과	투자금액	21,596	3,200	14,567	6,495	14,588	10,287	21,526	28,886	20,498	18,497
	투자비중	36.6	12.5	24.6	16.5	27.7	20.9	34.2	29.4	32.6	24.9

자료: 기술보증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이 높은 기술형 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일수록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하나, 낮은 신용도와 높은 사업 리스크로 인하여 기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의 방법으로는 투자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팩토링금융(2441-311)

□ 사업 및 결산 개요

‘팩토링금융’(2022~)은 기술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 995억 4,100만원 중 99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4년도 팩토링금융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팩토링금융	99,541	99,541	-	99,541	99,338	-	203	99,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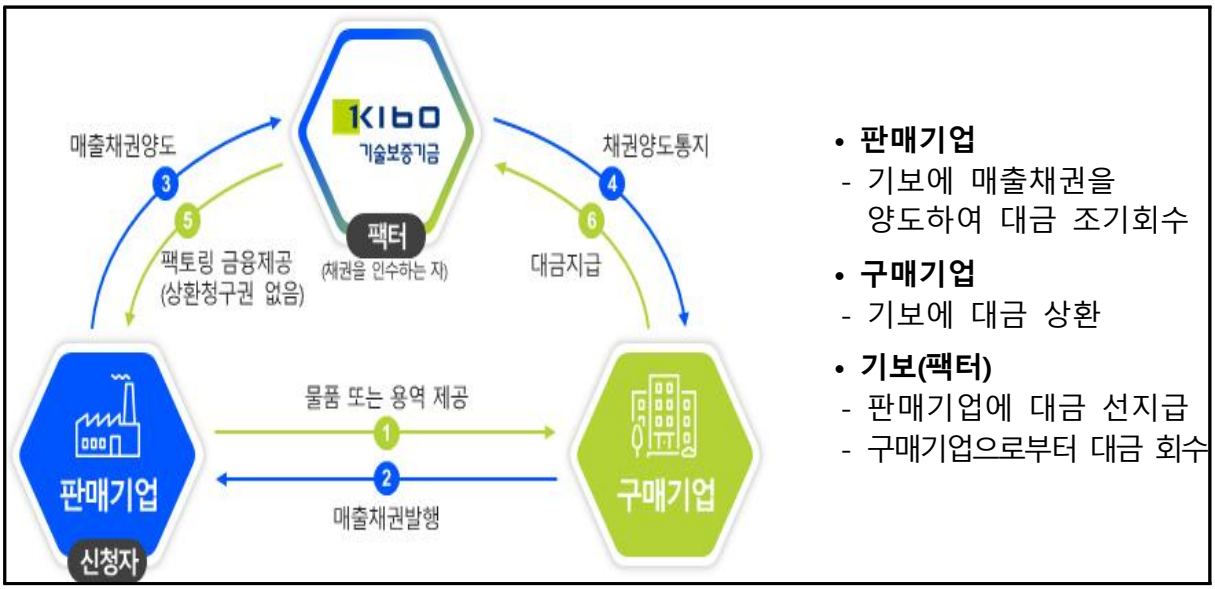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매입심사 강화를 통해 부실 사고율 등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팩토링금융’은 판매기업이 팩터(factor)인 기술보증기금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단기금융서비스이며 2022년부터 기술보증

기금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팩토링금융 개념도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 사업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중 물품공급 등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행일로부터 결제기일이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을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팩토링금융 내용

구분	내용
판매기업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중 물품공급 등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중소기업
구매기업	◦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등
매출채권	◦ 발행일부터 결제기일이 90일 이내인 매출채권 (전자세금계산서 한정)
지원한도	◦ 매출액×1회전기간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이내
할인율	◦ 구매기업의 팩토링 평가등급별 차등 부여(3.1%~7.0%)

자료: 기술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절차



자료: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2024년도 계획안에 매출채권 매입, 이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9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음.

2024년도 팩토링금융 계획안 세부내역

○ 24년도 계획안: 99,541백만원 - 매출채권 매입 = 99,240백만원 · {25,000백만원(1회 매입액) × 4회전(평균 만기 90일 기준)} - {(25,000백만원 × 3.04%(연할인율)) - 이용수수료 등 = 301백만원 · 팩토링 전산시스템 이용수수료(294백만원), 운영비(7백만원)

자료: 기술보증기금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이 팩토링금융 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말까지 매입한 매출채권 1,981억 100만원 중 104억 8,000만원이 부실화되어 사고율이 5.3%임.

이와 같은 사고율은 기술보증기금의 팩토링금융과 유사하게 매출채권팩토링을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의 사고율보다 높은 수치임[107].

107)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2021.6.)」에 따라 매출채권팩토링을 3개의 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진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말까지 매입한 매출채권 1,725억원 중 66억 7,900만원이 부실화되어 사고율이 3.8%이고, 신용보증기금은 매입한 매출채권 3,197억 8,800만원 중 13억 2,700만원이 부실화되어 사고율이 0.4%임.

매출채권팩토링 사고율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누계, A)	사고금액(B)	사고율(B/A)	할인율
기술보증기금	198,101	10,480	5.3%	4.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72,500	6,679	3.8%	3.8%
신용보증기금	319,788	1,327	0.4%	3.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기술보증기금 팩토링금융의 할인율은 4.1%로 사고율인 5.3%보다 1.2%p 낮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할인율 3.8%보다 0.3%p 높고, 신용보증기금 할인율 3.4%보다 0.7%p 높은 수준임.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시장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팩토링금융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나 아직 시장 평가는 부족한 성장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매출채권팩토링보다 사고율이 높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매출채권팩토링 기관별 비교

구 분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대상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판매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1] (신용도는 최소한도만 심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2]	신용도 보통이하 등급인 중소·중견기업[3]
매입한도	(구매기업) 30억원 (판매기업) 3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50억원 (판매기업) 100억원

주1: 기술평가 결과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 기업(신용도는 국세 체납 여부, 연체 대출금 보유 여부 등 최소한도만 심사)
주2: 신용등급 BB등급 이상 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중진공 신용등급 최상위(CR1) 등급기업,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을 제외한 기업
주3: 신용보증기금의 유효신용등급 AR14 이상인 기업
자료: 기술보증기금

팩토링금융은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판매기업은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 중 할인율을 차감한 부분을 전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이 부담하는 구조임.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은 업종별·기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정교한 할인율 분석, 매입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팩토링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은 7조 5,085억원 규모로, 수입·지출규모의 변동없는 사업간 지출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과 동일한 7조 5,085억원으로 운용됨.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폐업수요 증가에 따라 원스톱폐업지원 지원기간 연장을 위하여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 133억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성장지원 예산 133억원을 감액하였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10.29.	-	-	소상공인 성장지원	△133	폐업수요 증가에 따라 원스톱폐업지원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기금변경
10.29.	-	-	소상공인 재기지원	133	
	합계	-	**합계**	-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111.9%인 8조 4,035억원을 실현하고, 지출도 111.9%인 8조 4,035억원을 집행하였음. 수입 대비 지출 차액은 없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4 이월 (f)	차액 (e+f-d)
		2024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32,763	-	-	32,763	46,013	140.4	-	13,250
	▪ 융자원금회수	28,801	-	-	28,801	37,365	129.7	-	8,564
	▪ 재산수입	3,434	-	-	3,434	3,397	98.9	-	△37
	- 융자이자수입	3,265	-	-	3,265	2,633	80.6	-	△632
	- 기타재산이자수입	170	-	-	170	764	450.5	-	595
	- 기타잡수입	-	-	-	-	-	-	-	-
	▪ 경상이전수입	527	-	-	527	5,251	995.6	-	4,724
	- 기타경상이전수입	527	-	-	527	5,251	995.6	-	4,724
	2. 정부내부수입	42,322	-	-	42,322	38,022	89.8	-	△4,300
	▪ 일반회계전입금	16,350	-	-	16,350	16,350	100.0	-	-
	▪ 기금예수금	25,971	-	-	25,971	21,671	83.4	-	△4,300
	3. 여유자금회수 등	-	-	-	-	-	-	-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	-	-	-	-
	합계	75,085	-	-	75,085	84,035	111.9	-	8,950
지출	1. 사업비	50,510	-	-	50,510	49,000	97.0	-	△1,510
	▪ 융자사업	37,100	-	-	37,100	35,592	95.9	-	△1,509
	▪ 경상사업	13,410	-	-	13,410	13,409	100.0	-	△1
	2. 기금운영비	586	-	-	586	586	100.0	-	-
	3. 정부내부지출	23,989	-	-	23,989	23,704	98.8	-	△285
	▪ 공자기금예수원금	18,738	-	-	18,738	18,738	100.0	-	-
	▪ 공자기금예수이자	5,251	-	-	5,251	4,966	94.6	-	△285
	4. 여유자금운용 등	-	-	-	-	10,745	순증	-	10,745
	합계	75,085	-	-	75,085	84,035	111.9	-	8,950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4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7조 5,085억원으로 당초 계획 7조 5,085억원과 동일함. 실현된 수입액은 8조 4,035억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111.9%로 8,950억원이 초과 수입됨.

2024년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과부족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32,763	-	-	32,763	46,013	13,250
○ 융자원금회수	28,801	-	-	28,801	37,365	8,564
○ 재산수입	3,434	-	-	3,434	3,397	△37
- 융자이자수입	3,265	-	-	3,265	2,633	△632
- 기타재산이자수입	170	-	-	170	764	594
- 기타잡수입	-	-	-	-	-	-
○ 경상이전수입	527	-	-	527	5,251	4,724
- 기타경상이전수입	527	-	-	527	5,251	4,724
□ 정부내부수입	42,322	-	-	42,322	38,022	△4,300
○ 일반회계전입금	16,350	-	-	16,350	16,350	-
○ 기금예수금	25,971	-	-	25,971	21,671	△4,300
□ 여유자금회수 등	-	-	-	-	-	
합계	75,085	-	-	75,085	84,035	8,950

2024년도 계획현액을 초과한 주요 조달(수입) 내역을 보면 융자 사업에 따른 원금회수액에서 8,564억원, 보조사업 집행정산(정산 후 반납금 등)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4,724억원, 사업대기성 자금[108] 운용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항목에서 594억원을 초과 실현함. 계획현액 대비 과소 조달(수입) 내역을 보면 융자사업에 따른 융자 이자가 632억원 과소 실현됨.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4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 7조 5,085억원과 동일함. 이 중 111.9%에 해당하는 8조 4,035억원을 집행함.

다만, 2024년 폐업수요 증가에 따라 원스톱폐업지원 지원기간 연장을 위하여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을 133억원 증액하고, 소상공인 성장지원 예산을 133억원 감액하였음.

108) 재원 조달과 기금 집행 시기 차이로 인한 일시성 대기자금

2024년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융자사업	37,100	-	-	37,100	35,592	-	1,509
○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	-	-	37,100	35,592	-	1,509
□ 경상지출사업	13,410	-	-	13,410	13,409	-	1
○ 지역신용보증재보증	1,254	-	-	1,254	1,254	-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524	-	-	524	524	-	-
○ 소상공인성장지원	2,946	-	△133	2,813	2,812	-	1
○ 소공인특화지원	317	-	-	317	317	-	-
○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	-	133	1,796	1,796	-	-
○ 시장경영혁신지원	4,207	-	-	4,207	4,207	-	-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144	-	-	144	144	-	-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2,245	-	-	2,245	2,245	-	-
○ 소상공인스마트기술 육성R&D	12	-	-	12	12	-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23	-	-	23	23	-	-
○ 소진기금정보화경비	75	-	-	75	75	-	-
<사업비 총계>	50,510	-	-	50,510	49,000	-	1,510
□ 기금운영비	586	-	-	586	586	-	-
□ 정부내부지출	23,989	-	-	23,989	23,704	-	285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8,738	-	-	18,738	18,738	-	-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5,251	-	-	5,251	4,966	-	285
□ 여유자금운용	-	-	-	-	10,745	-	△10,745
합계	75,085	-	-	75,085	84,035	-	△8,950

불용액은 1,795억원으로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서 1,509억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에서 285억원 불용이 발생함.

2024년도 기금운용(지출) 불용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1,510	
융자사업	1,509	- 융자사업 신청 저조
경상사업	1	- 소상공인 성장지원(온라인 판로지원) 일반용역비 잔액 발생
【정부내부지출】	285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액 잔액 발생(285억원)
합 계	**1,795**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4			2023		
자산						
Ⅰ.유동자산			59,679			49,185
1. 현금및현금성자산			891			631
1) 국고금		891			631	
2. 단기금융상품			30,592			19,734
1) 정기예금					-	
2) 기타의단기금융상품		30,592			19,734	
3. 미수채권		550			552	
1) 미수이자수익	279			209		
2) 기타의미수금	271			343		
미수채권대손충당금		89	461		48	504
1)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89			48		
4. 단기대여금		28,281			28,691	
1) 단기융자금	28,281			28,691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546	27,735		375	28,316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546			375		
5. 기타유동자산						
1) 구상채권	304			124		
구상채권대손충당금	304			124		
Ⅱ.투자자산			83,379			94,714
1. 장기금융상품			877			1,103
1) 정기예금		877			1,103	
2. 장기투자증권			11			11
1) 기타장기투자증권		11			11	
3. 장기대여금		99,677			104,901	
1) 장기융자금	99,677			104,901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17,187	82,491		11,300	93,601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17,187			11,300		
Ⅲ.일반유형자산			2,878			3,134
1. 토지			768			521

(단위: 억원)

	2024		2023	
2. 건물	824		72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62	762	48	673
3. 구축물	43		58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8	25	27	31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1		1	
1) 사무용집기	1		1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		1	
1)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1		1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323		1,908
1) 건설중인토지	1,323		1,908	
Ⅳ.사회기반시설				
Ⅴ.무형자산				
Ⅵ.기타비유동자산				
자산계		145,936		147,033
부채				
Ⅰ.유동부채		12,141		19,605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1,204		18,738
1)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11,204		18,738	
2. 기타유동부채		937		866
1) 선수금	4		1	
2) 미지급비용	933		865	
Ⅱ.장기차입부채		197,910		187,442
1. 장기차입금		197,910		187,442
1) 정부내장기차입금	197,910		187,442	
Ⅲ.장기충당부채		13		9
1. 기타장기충당부채		13		9
1) 보증충당부채	13		9	
Ⅳ.기타비유동부채				
부채계		210,063		207,056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Ⅱ.적립금 및 잉여금		△64,128		△60,023
Ⅲ.순자산조정				
순자산계		△64,128		△60,023
부채와순자산계		145,936		147,033

2024회계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산은 14조 5,936억원으로 전년대비 1,097억원 감소(0.7% 감소)하였고,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요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장·단기대여금은 12조 7,958억원(장기대여금 9조 9,677억원, 단기대여금 2조 8,281억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634억원이 감소함. 장·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은 1조 7,733억원(장·단기 대여금대손충당금 5,123억원, 장·단기 융자보조원가충당금 1조 2,609억원)으로, 직접대출로 인한 대손추계액 증가 및 저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융자 보조원가 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6,057억원이 증가함.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장·단기 대여금 잔액은 11조 225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1,692억원이 감소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891억원으로, 전년대비 260억원이 증가함.

미수채권은 550억원으로, 융자 규모 및 사업비 정산반납액의 증가로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함.

장기투자증권은 11억원으로, 사고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일반유형자산은 2,878억원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건물과 감가상각액 증가로 256억원이 감소함.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채는 21조 63억원으로 전년대비 1.5%인 3,007억원이 증가함.

장기차입금은 19조 7,910억원으로, 공자기금 예수에 따라 전년대비 1조 467억원이 증가함.

기타유동부채 미지급비용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미지급금으로 전년대비 71억원이 증가한 937억원임.

전환대출 보증을 위한 충당부채는 대환대출 신설로 인해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함.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 △6조 4,128억원이며 전년대비 4,10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재정운영결과를 반영한 금액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4			2023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23,960	(8,095)	15,865	15,149	(5,702)	9,447
1.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254	(88)	1,165	1,409	0	1,409
2.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22,707	(8,007)	14,700	13,741	(5,702)	8,039
Ⅱ.관리운영비			216			187
1.인건비			164			147
2.경비			52			40
(1)복리후생비			3			2
(2)소모품비			2			4
(3)인쇄비			0			0
(4)광고선전비			0			0
(5)지급수수료			2			1
(6)세금과공과			8			5
(7)지급임차료			15			12
(8)유류비			0			0
(9)수선유지비			1			1
(10)여비교통비			1			1
(11)업무추진비			18			12
(12)외주용 용역비			0			1
(13)감가상각비			0			0
(14)연구개발비			1			1
Ⅲ.비배분비용			5,034			4,565
1.이자비용			5,034			4,565
Ⅳ.비배분수익			661			522
1.이자수익			661			522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20,455			13,677
Ⅵ.비교환수익 등			16,350			5,700
1.기타재원조달및이전			16,350			5,700
Ⅶ.재정운영결과(Ⅴ-Ⅵ)			4,104			7,977

2024회계연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 순원가는 총 1조 5,865억원으로 전년대비 6,418억원이 감소함.

주요 프로그램별 순원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165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1조 4,700억원임.

개별 프로그램에 배분되지 않는 관리운영비는 지원부서 인건비 및 경비로 216억원임.

기타 현행 재정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의 경우, 비배분비용은 5,034억원으로 전년대비 469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추가 공자기금예수금 발생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며, 비배분수익은 전년대비 139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여유자금 평잔 규모 확대 및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에서 기인함.

비교환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전년대비 1조 650억원이 증가한 1조 6,350억원임.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	(52,046)	-	(52,046)
1. 보고금액	-	(52,049)	-	(52,049)
Ⅱ. 재정운영결과		7,977		7,977
Ⅲ. 조정항목	-	-	-	-
Ⅳ.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	-	(60,023)	-	(60,023)
Ⅴ. 당기 기초순자산	-	(60,023)	-	(60,023)
1. 보고금액	-	(60,023)	-	(60,023)
Ⅵ. 재정운영결과		4,104		4,104
Ⅶ. 조정항목	-	-	-	-
Ⅷ. 당기 기말순자산(Ⅴ-Ⅵ+Ⅶ)	-	(64,128)	-	(64,128)

기초순자산은 2023회계연도 기말순자산 △6조 23억원과 동일하며, 2024회계연도 기말 순자산은 당년 재정운영결과 4,104억원이 반영된 △6조 4,128억원임.

Ⅱ. 검토의견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1234-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2004~, 출연)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원보증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30%~80%)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실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는 동 사업 계획액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계획현액은 1,253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집행(출연)되었음.

2024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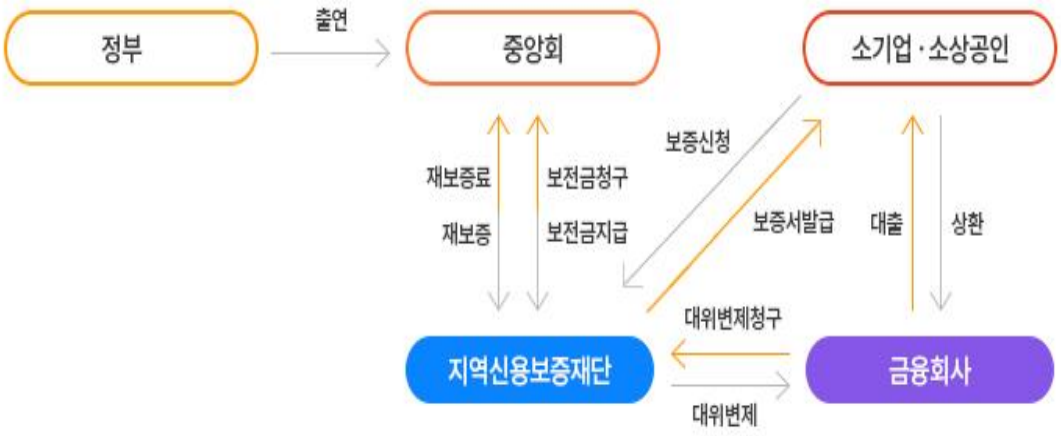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354	125,354	-	125,354	125,354	-	-	210,940

□ 검토의견

(1) 안정적인 재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산정방식 개선 필요

동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재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총 예상 지출에서 총 예상 수입을 차감한 부족 금액을 정부 재원으로 보전(수지차 지원방식)하는 사업임.

지역신용보증제도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의 표는 2024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결산 내역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입액은 당초 계획(2,787억원)보다 더 많은 5,571억원이고, 정부출연금(예상 수지차 보전을 위한 동 사업 예산)은 약 1,254억원이 계획대로 출연되었으나, 손실보전금 지출이 당초 예상(3,954억원)을 8,000억 이상 초과한 1조 2,175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출액이 1조 2,291억원에 달하였음. 그 결과 발생한 차손 5,466억

원이 전년도말 기본재산에서 차감되었고, 2024년말 기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 기본재산이 21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2024년도 재보증회계 결산 및 2025년도 계획 현황(6월말)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6월말 기준		
	계획	결산	당초 계획	변경 계획	산출근거
□ 보증잔액	410,000	427,917	410,000	430,000	신규공급 2조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액
□ 재보증잔액(A)	220,867	227,885	220,498	231,254	재보증비율 '23년 결산치 적용(53.78%)
□ 손실보전금 순지급율(B)	1.79%	5.34%	3.36%	4.68%	'23년~'24년 손실보전금 순지급율 가중평균치 ('23: 3.36%, '24 :5.34%)
□ 지 출(C)	4,041	12,291	7,506	10,920	-
• 손실보전금(A×B)	3,954	12,175	7,409	10,823	재보증잔액(A)×순지급률(B)
• 관리비용 등	87	116	98	98	'23년 결산치 적용
□ 수 입(D)	2,787	5,571	5,471	5,551	-
• 재보증료	1,789	1,675	1,632	1,711	'23년 결산치 적용 (재보증잔액의 0.74% 적용)
• 금융기관 출연금	596	1,184	1,472	1,472	'23년 출연금 결산치(645억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향 및 금융회사출연금 배분 비율 조정 반영
• 운용수익	275	306	514	514	'23년 결산치 적용
• 기타수익	127	2,406	1,853	1,853	'23년 결산치 적용(119억원) 및 새출발기금 매각 회수금 ('25년 추정치) 반영
□ 수지차(D-C)	△1,254	△6,720	△2,035	△5,370	-
□ 정부출연금	1,254	1,254	2,035	2,035	-
□ 당해연도 수지차	-	△5,466	-	△3,334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추가 출연(3,334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또한 2025년도(6월말 기준)에도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이 당초 계획치인 3.36%를 2.48%p 초과한 5.84%로 나타남에 따라,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손실보전금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말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 기본재산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109)]

이에 정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2025년 5월)을 통해 기본재산을 확충하였으며, 전체 증액분 약 3,334억원 중 ① 보증규모 2조원 추가 확대에 따른 예상 수지차 변동 대응을 위해 약 281억원[110)]을 증액하고, ② 순지급률 현실화에 따른 예상 수지차 변동 대응을 위해 약 3,053억원[111)]을 증액하였음.

정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예상지출액과 예상수입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지차 예측 및 동 사업 계획액[112)]을 편성함에 있어,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2년 전 결산 수

---

109)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금리 상황과 코로나 기간 시행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이연된 부실이 현실화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이 상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110) ① 보증규모 확대로 인한 손실보전금 예상치 증가분: 361억원
[추정근거: 보증규모 확대분 2조원 × 예상 재보증비율(53.78%, 2023년 결산수치 적용) × 손실보전금 순지급율 예상치(3.36%, 2023년 결산수치 적용)]
② 보증규모 확대로 인한 재보증료 수입 예상치 증가분: 80억원
[추정근거: 보증규모 확대분 2조원 × 예상 재보증비율(53.78%, 2023년 결산수치 적용) × 재보증요율 예상치(0.74%, 2023년 결산수치 적용)]
③ 예상 수지차 변동분: 수입 증가예상분(②) - 지출 증가예상분(①): △281억원
④ 수지차 악화에 따른 추가 정부출연 필요분: 281억원

111) ① 순지급률 현실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예상치 증가분: 3,053억원
[추정근거: 보증잔액 43조원 × 예상 재보증비율(53.78%, 2023년 결산수치 적용) × 손실보전금 순지급율 현실화분(1.32%p, 당초 3.36%에서 4.68%로 변경 적용)]
② 예상 수지차 변동분: 수입 증가예상분(해당없음) - 지출 증가예상분(①): △3,053억원
③ 수지차 악화에 따른 추가 정부출연 필요분: 3,053억원

112) 당해연도 총 예상 지출에서 총 예상 수입을 차감한 부족 금액을 보전

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액 산정 방식은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과도한 정부출연금 지원을 하게 되고 경기가 불황기일 때는 상대적으로 과소한 지원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113]

따라서 정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예상지출액과 예상수입액의 산출방식 및 동 사업 계획액의 편성방식을 최근의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2) 재정 외 운용 부담금의 국가재정 내 편입 검토 필요

수입항목 중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114]을 의미함. 이러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115]임.

---

113)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회계 기본재산이 수천억원 가량 적립되어 있기도 하고, 금번의 경우와 같이 기본재산의 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자금운용의 비효율성 및 사업수행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11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115)「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116]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경우 부과하게 되어 있음.

이러한 부담금 수입이 중앙행정기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경우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으므로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후 과정에 걸쳐 국회의 심사가 이루어져 민주적 재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과 같이 공공기관으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에는 해당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사업이나 공익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 외로 운용되어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약점을 보인다는 지적[117]이 있고, 재정 전반의 투명성 및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재정 내로 편입하여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도록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7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1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7)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2024, pp.203~205.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118].

재정 외로 운영되는 부담금 사례

재정 외로 운영되는 부담금	재원	소관 부처	귀속기관 등
서민금융 진흥원출연금	금융회사 가계대출 금액의 일정비율(0.03%)	금융 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	산업통상 자원부	지역난방공사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금융회사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비율(0.1%)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2024, p.204.를 재정리

특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계정에 출연되는데, 이러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계정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총 예상 지출에서 총 예상 수입을 차감한 부족 금액을 예측하여 그 수지차액만큼 정부출연금의 지원(‘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내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부담금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의 징수는 정부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내역사업 계획액) 규모와 직결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계정에서 계획대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면 정부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내역사업 계획액)의 확대가 발생되는 구조인데,

국회의 결산심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금융기관출연

118)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2025, pp.203~205.

금 수입")과 정부출연금이 각각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계정에 출연된 규모에 대하여만 보고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재원으로 조성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계정에서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계정이 재정 외로 운용됨에 따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출연금 수입"을 징수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국가재정 내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임.

참고로 공공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직접 부과·징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징수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119]이 있었고, 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는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편입(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재정 내로 운영되고 있음[120].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에 대해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의 사례와 같이 기금 등의 국가재정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9)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201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13, pp.63~67.
120)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2024, pp.203~205.

2.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4131-316)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2017~, 보조)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유도와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교육,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524억 3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508억 9,900만원임. 동 사업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2024년도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업가형소상공인 육성	52,403	52,403	-	52,403	52,403 [50,899]	-	-	83,422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19,641	19,641	-	19,641	19,641 [18,317]	-	-	19,288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23,986	23,986	-	23,986	23,986 [23,911]	-	-	34,13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6,848	6,848	-	6,848	6,848 [6,826]	-	-	-
로컬브랜드 창출	1,928	1,928	-	1,928	1,928 [1,845]	-	-	-
혁신소상공인 도약지원	-	-	-	-	-	-	-	30,000

□ 검토의견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연 및 보조금 이월 주의 필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내역사업은 지역 유휴자산(우체국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예비 소상공인(창업자)의 준비된 창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을 지원하는 직주락(職住樂)형 혁신 창업공간(라이콘 타운)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641	19,641	18,317	1,324
민간경상보조(320-01)	18,141	18,141	17,993	148
민간자본보조(320-07)	1,500	1,500	324	1,1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계획액 중 민간자본보조(320-07목) 15억원은 2024년에 라이콘 타운 2개소를 신규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는데, 계획현액 15억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이 중 3억 2,400만원만 실집행되고 11억 7,6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5월에 라이콘 타운 신규 구축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한 결과 대구와 청주가 선정되어 각각 7억 5,000만원과 4억원의 보조금을 배정하였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부

된 보조금(총 11억 5,0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121]

라이콘 타운 신규 구축 사업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실집행액		구축일정	구축 지역사유
		2024년	2025년 (6월말)		
대구점	750	-	213	-공고: '24. 5월 -신청: '24. 6월 -선정: '24. 7월 -설계: '24. 8월~'25. 3월 -공사: '25. 5월~'25. 9월 -개소: '25. 10월(예정)	구축 예정 건물의 노후화로 안정성 증대를 위한 구조보강 공사 진행
청주점	400	-	-	-공고: '24. 5월 -신청: '24. 6월 -선정: '24. 7월 -설계: '24. 7월~'25. 2월 -공사: '25. 6월~'25. 10월 -개소: '25. 10월(예정)	공사 주체인 지자체(청주시)의 구축 예정지 보상 문제 및 구조안전진단 지연 등
합계	1,150	-	21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에 신규 라이콘 타운 구축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와 청주의 경우 지역별로 구축 예정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부지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2025년에도 6월말 기준 이월된 보조금의 실집행률은 대구의 경우 28.4%[122]이고 청주의 경우 보조금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

121) 동 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라이콘 타운 구축지(건물, 공간)을 제공하고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라이콘 타운 구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조금의 실집행주체임.

122) 계획액(7억 5,000만원) 중 2억 1,300만원이 실집행됨.

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123]

정부가 작성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이 장이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신규 라이콘 타운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해당 보조금을 전액 교부[124]하여 미집행 이월한 것은 정부 집행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동 내역사업의 보조금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에 지출된 3억 2,400만원은 신규 라이콘 타운 구축이 아닌 기존 라이콘 타운 지점[125]의 시설·설비 및 가구 구매 비용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

1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24)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의 민간자본보조를 3차례에 나누어 교부하였음.
-1차(2024.2.14.) 12억원, 2차(2024.7.26.) 1억 5,000만원, 3차(2024.10.23.) 1억 5,000만원
125) 부산점, 대전점, 강릉점, 세종점, 원주점, 마포점

되는바,[126] 당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 근거의 세부내역에는 라이콘 타운 2개소 신규 구축 소요로 민간자본보조 1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은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체험점포 신규 구축 사업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보조금의 연례적 미집행 이월 등 유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사업 지연 및 보조금의 미집행 이월 등 문제점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126)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기존 라이콘 타운의 집기류 교체 및 개·보수 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다고 설명함.

3.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성장지원’(2006~, 보조)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컨설팅, 조직화·협업화,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2,813억 3,9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2,643억 2,400만원임. 동 사업은 ‘소상공인역량강화’, ‘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 ‘소상공인협업활성화’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임.

2024년도 소상공인성장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성장지원	294,625	281,339	-	281,339	281,339 [264,324]	-	-	265,085
소상공인 역량강화	21,542	21,542	-	21,542	21,542 [21,058]	-	-	240,674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7,416	7,416	-	7,416	7,416 [6,039]	-	-	2,22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11,540	11,540	-	11,540	11,540 [11,005]	-	-	11,540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427	427	-	427	427 [271]	-	-	-
지역상권 역량강화	1,700	1,700	-	1,700	1,700 [1,527]	-	-	-*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 (한시)	252,000	238,714	-	238,714	238,714 [224,423]	-	-	-
소상공인 통계 전담연구센터	-	-	-	-	-	-	-	10,650

주: '지역상권역량강화' 내역사업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어 편성됨.

□ 검토의견

(1) 지역상권역량강화: 보조금의 이월 요건 준수 필요

'지역상권역량강화' 내역사업은 주관기관(상권기획자 등),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주민의 협의체로 구성된 예비 상권구역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동네상권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역상권역량강화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전연도 이월액	실집행액	불용액
지역상권역량강화	1,700	1,700	1,527	173	-	173	167	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계획액 17억원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권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10억원과 지역상권실태조사[127]를 수행하기 위한 7억원으로 구성됨.

지역상권역량강화 내역사업 예산 편성근거(2024년)

○지역상권역량강화: 1,700백만원 -동네상권발전소: 1,000백만원=10곳×200백만원×50% -지역상권실태조사: 7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에 계획현액 17억원 중 15억 2,700만원을 실집행하고 1억 7,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25년에 이월액 중 1억 6,7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그런데 이월된 보조금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의 이월 집행 사례가 발견됨.

지역상권역량강화 내역사업 실집행내역(2024년 보조금 이월 지출)

지출건명	지출일자	지출금액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토론회 행사 운영대행 용역	2025.3.7.	20,000,000원
상권전문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2025.5.29.	22,000,000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국가재정법」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128]

12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또한, 동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12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및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30]

---

128)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29)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3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이월 집행 사례

계약명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식	비고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토론회 행사 운영대행 용역	2025.2.21.	2025.2.21. ~2025.2.28.	20,000,000원	수의계약	2024년 보조금 (이월)
상권전문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	2025.4.1.	2025.4.1. ~2025.5.9.	22,000,000원	수의계약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인 2025년에 지출원인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2건의 용역 계약에 대하여 2024년 보조금을 이월하여 대금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보조금 집행방식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상 적절하지 않고, 동법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기금사업 및 보조금의 이월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임.

아울러,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하여야 하는데,[13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연도로 이월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낭비적 지출 발생 및 기금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조사업자로서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의 이월 요건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공인특화지원’(2015~, 보조)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판로개척과 소공인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협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316억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308억 8,300만원임. 동 사업은 ‘판로개척지원’, ‘클린제조환경조성’,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사업수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임.

2024년도 소공인특화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공인특화지원	31,670	31,670	-	31,670	31,670 [30,883]	-	-	119,870
판로개척지원	7,650	7,650	-	7,650	7,650 [7,642]	-	-	7,650
클린제조 환경조성	8,400	8,400	-	8,400	8,400 [8,392]	-	-	8,400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5,620	15,620	-	15,620	15,620 [14,849]	-	-	15,620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	-	-	-	-	-	-	88,200

□ 검토의견

(1)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연 및 보조금 집행관리 주의 필요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역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지역 소공인 육성을 위해 소공인지원센터(특화지원센터 및 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132]하여 소공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공동장비·공동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소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5,620	15,620	14,849	764	7
민간경상보조(320-01)	13,620	13,620	13,613	-	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000	2,000	1,236	76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계획액 중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20억원은 2023~2024년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3개소(서울 종로구, 전북

13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안군, 강원 원주시)를 신규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는데, 교부된 계획현액 20억원 중 12억 3,600만원이 실집행되고 7억 6,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2023년(1차년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국비 총 30억원이 교부되었고 2024년(2차년도)에는 총 20억원이 교부되었음. 2023~2024년 지역별 사업비(국비 및 지방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역별 사업비 편성 현황(2023~2024년)

(단위: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소계	2023년	2024년	소계	
서울 종로구	426	284	710	-	750	750	1,460
전북 부안군	1,146	764	1,910	229	1,681*	1,910	3,820
강원 원주시	1,428	952	2,380	-	2,380	2,380	4,760
합계	**3,000**	**2,000**	**5,000**	**229**	**4,811**	**5,040**	**10,040**

주: 전북 부안군의 경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24년에 당초 편성된 지방비(16억 8,100만원) 중 연도 내 미집행된 금액(15억 2,700만원)을 추경예산에 감액한 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함. 지방비 편성 총액은 변동 없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지방자치단체별 2024년 보조금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와 강원 원주시에 교부된 보조금은 각각 전액 실집행되었으나 전북 부안군에 교부된 7억 6,4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25년 6월말 기준 이월된 보조금의 실집행률도 30.6%[133]에 그치고 있음.

133) 이월된 보조금(7억 6,4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이 집행됨.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보조금 실집행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전연도 이월액	실집행액 (6월말)
서울 종로구	284	284	284	-	-	-	-
전북 부안군	764	764	-	764	-	764	234
강원 원주시	952	952	952	-	-	-	-
합계	2,000	2,000	1,236	764	-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부안군의 경우 2023년에도 교부된 보조금 11억 4,600만원 중 미집행된 11억 3,600만원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보조금 중 4억 5,200만원이 실집행되고 6억 8,000만원은 2025년으로 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134] 부안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재이월) 요청서에 따르면 행정절차 및 사업발주 지연 등으로 공기 부족에 따라 사업 완료 시점이 2025년 말까지 연기되었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보조금 실집행현황(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전연도 이월액	실집행액 (24년말)	다음연도 재이월액	불용액
서울 종로구	426	7	419	-	419	396	-	23
전북 부안군	1,146	10	1,136	-	1,136	452	680	4
강원 원주시	1,428	5	1,423	-	1,423	537	886	-
합계	3,000	22	2,978	-	2,978	1,385	1,566	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134)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재이월된 보조금 6억 8,000만원 중 2025년 6월말 기준 실집행된 금액은 6,600만원임.

원주시의 경우 2023년에 교부받은 보조금 14억 2,800만원 중 14억 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이월된 보조금 중 5억 3,700만원이 실집행되고 8억 8,600만원은 2025년으로 재이월[135]되었는바, 원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재이월) 요청서에 따르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증가, 인허가 및 건축물 구조 재계산에 따른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완료 시점이 2025년 11월로 연기되었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보조금의 실집행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2024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구축 완료 예정 시기에 비하여 실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계획

구분	구축 완료 예정 시기		비고
	당초(2024년 5월 제시)	변경(2025년)	
서울 종로구	2024년 10월	2025년 1월	3개월 연장
전북 부안군	2024년 12월	2025년 12월	12개월 연장
강원 원주시	2025년 5월	2025년 11월	6개월 연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원칙적

135)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재이월된 보조금 8억 8,600만원 중 2025년 6월말 기준 실집행된 금액은 2억 5,100만원임.

으로 보조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136]

정부가 작성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기간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부안군의 경우 2024년 보조금에 대한 실집행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된 보조금 전액을 교부[137]하여 미집행 이월로 이어진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한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이월 또는 재이월 하기 위해서는

---

13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37)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에 각 지자체로 2차례에 걸쳐 편성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서울 종로구(2.84억원): 1차(2024.8.16.) 2억원, 2차(2024.10.11.) 8,400만원
-전북 부안군(7.64억원): 1차(2024.8.26.) 5억 4,000만원, 2차(2024.10.11.) 2억 2,400만원
-강원 원주시(9.52억원): 1차(2024.7.31.) 6억 6,000만원, 2차(2024.10.11.) 2억 9,200만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부안군의 경우 보조금 이월 및 재이월 승인 신청을 회계연도가 바뀐 2025년 1월에 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도 확인되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지연 및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재이월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소공인복합지원센터(11개소) 구축 현황

선정연도	시·도	집적지구	분야
2019년	충남 공주시	유구읍	섬유제품
	서울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의류봉제
2020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식료품
	경기 화성시	봉담읍	금속가공
2021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식료품
2022년	경기 화성시	동탄5동	반도체 가공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의류봉제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의류봉제
2023년	서울 종로구	종로구	의류
	전북 부안군	진서면	식료품
	강원 원주시	우산동	기타기계장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5. 소상공인재기지원(4131-319)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재기지원’(2015~, 보조)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개선,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폐업에서 재창업·재취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1,795억 9,400만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793억 9,100만원임. 동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2024년도 소상공인재기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08	179,594	-	179,594	179,594 [179,391]	-	-	274,806
희망리턴패키지	151,300	168,386	-	168,386	168,386 [168,186]	-	-	245,01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08	11,208	-	11,208	11,208 [11,205]	-	-	14,827
손실보상 한시지원	-	-	-	-	-	-	-	10,400
회복상담·채무조정제도 운영	-	-	-	-	-	-	-	4,569

□ 검토의견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금 집행 필요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경영개선 및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내역별 2024년도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희망리턴 패키지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사업내용
경영개선지원	37,375	37,375	37,375	위기 소상공인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진단 후 취약분야별 교육 및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67,900	84,986*	84,889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신속·안전한 폐업지원
재취업지원	20,400	20,400	20,318	재취업교육 및 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25,625	25,625	25,604	업종별 재창업 교육, 인큐베이팅, 자금 지원을 통한 유망분야 중심 재창업 지원
합계	151,300	168,386	168,186	

주: 2024년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인한 폐업지원 예산 부족을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의 방범·출입통제 시스템 이용료 명목으로 집행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편성된 ‘소진기금 기본경비’[138] 세부사업과 혼용하여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38) 사업코드: 7277-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범·출입통제 시스템 이용료 집행내역(2024년)

(단위: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출건명	지출금액	경비업체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공단] 1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710,690	S○ 쉴○스
	[공단] 2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710,690	
	[공단] 3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710,690	
	[공단] 4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710,690	
	[공단] 5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743,690	
	[공단] 6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710,690	
	[공단] 7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710,690	
	[공단] 8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1,525,050	
	[공단] 9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3,384,060	
	[공단] 10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1,590,690	
	[공단] 11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1,051,690	
소진기금 기본경비	[공단] 12월 무인경비, CCTV, 비상벨 월정료 통합 지출	10,644,690	
소계		133,204,010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대구, 구미] 1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제○원
	[대구, 구미] 2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3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4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5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6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7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8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9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10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대구, 구미] 11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소진기금 기본경비	[대구, 구미] 12월 무인경비 서비스 월정료 지출	198,000	
소계		2,376,000	
소진기금 기본경비	[경주, 청주, 제주]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료 지급	4,120,000	에○원
소진기금 기본경비	[경기남부, 수원]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료 지급	1,980,000	왓○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부의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료 명목으로 2024년에 약 1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구·구미 지역본부의 무인

경비 서비스 이용료로 약 23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용료는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로 집행하였고, 12월 이용료만 ‘소진기금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보조사업비로 집행하였음. 한편, 다른 지역본부(경주, 청주, 제주 등)의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료는 모두 ‘소진기금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집행하였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러한 보조금 집행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1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14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의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료 지출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보기 어려움.

그리고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의 무인경비 서비스 등 방범·출입통제 시스템 이용료 지출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인 공단의 기본적인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운영비성 지출이므로 주요사업비인 ‘희망리

13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턴패키지' 내역사업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기금운영비성 세부사업이 별도로 편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출 구조[141]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1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본부 등의 방범·출입통제 시스템 이용료 집행과 관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나 보조사업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음.

둘째,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44] 소상공인

14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는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력 운용을 위한 '소진기금 인건비'(7277-100), 기본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소진기금 기본경비'(7277-200),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소진기금 정보화경비'(7277-201) 등 총 3개의 기금운영비성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142)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1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4)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시장진흥공단은 ‘소진기금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배정된 기금운용계획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를 하고 부족한 금액을 주요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집행방식은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사업추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1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른 세부사업[146]에서도 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금운영비성 지출(직원채용 대행용역)을 주요사업비로 일부 집행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채용 대행용역 집행내역(2024년)

(단위: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출건명	지출금액	계약업체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채용 대행용역 선금 지출	10,000,000	㈜ 커○어넷
소진기금 기본경비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채용 대행용역 선금 지출	111,195,550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채용 대행용역 잔금 지급	69,243,950	
합계		190,439,5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45) 공단 본부 및 대구·구미 지역본부의 1월분 무인경비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2024년 2월에 ‘소진기금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 우선 지출된 후 같은 해 10월에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로 지출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보조금 집행방식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146) 사업명(사업코드):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당초 사업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금운영 비성 지출을 주요사업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집행 사례가 반복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임.[147]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적정 지원규모를 반영한 기금운용 계획 작성 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역사업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 150억 800만원 대비 38억원이 감액변경[148]된 112억 800만원으로, 이 중 112억 500만원이 실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5,008	11,208	11,205	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14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48) 2024년 소상공인 폐업 증가로 인한 폐업지원 예산 부족을 사유로 동 내역사업에서 38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세부사업 내 '희망리턴패키지' 내역사업에서 38억원을 증액함.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149]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150]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준보수 등급별로 납부한 보험료(보험료율 2.25%)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기준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비율 및 금액

(단위: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지원	지원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주: 월 보수액(기준보수)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3년마다 고시하고,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계획액은 2023년 50억원에서 2024년 150억 800만원

1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5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으로 200% 이상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원규모는 25,000명(2023년)에서 40,000명(2024년)으로 확대되었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납부한 보험료의 20~50%(2023년)에서 50~80%(2024년)로 확대되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비교(2023년 대비 2024년)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50억원	150억 800만원
산출근거	-기가입자: 16,000명×20천원×12개월 -신규가입자: 9,000명×20천원×7개월	-기가입자: 23,000명×38천원×12개월 -신규가입자: 17,000명×38천원×7개월
보험료 지원비율	납부한 보험료의 20~50%	납부한 보험료의 50~80%
소상공인 월 자부담액	20,475~60,840원	8,190~38,025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었던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접근성을 제고[151]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2024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에서 38억원이 감액변경되어 집행되었으며, 계획현액이 줄어듦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도 당초 목표인 40,000명에 못 미치는 31,000명으로 축소되어 최종적으로는 31,162명을 지원하는 데 그침.

15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2024년 11월부터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료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고용보험료 지원 간소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내역(2024년)

구분	2024년(당초)	2024년(변경)
계획액	150억 800만원	112억 800만원(△38억원)
산출근거	-기가입자: 23,000명×38천원×12개월 -신규가입자: 17,000명×38천원×7개월	-기가입자: 16,000명×38천원×12개월 -신규가입자: 15,000명×38천원×7개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 당시에는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기존 가입자 23,000명과 신규 가입자 17,000명으로 설정하였는데, 기존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보험 해지 증가 및 신규 보험료 지원 수혜자 감소로 보조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기금운용계획을 감액변경하였다고 설명함.

다만, 이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보험료 지원규모가 면밀한 수요 파악을 통하지 않고 과다하게 설정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 참고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당초) 대비 1억 8,100만원이 감액된 148억 2,700만원(지원규모 39,600명)[152]이 반영되어 있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17,360	21,287	29,281	35,598	40,970	45,888	51,958
고용보험료 지원 수혜 소상공인	2,489	5,547	10,145	14,679	18,012	24,884	31,1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152) -기가입자: 22,600명×38천원×12개월
-신규가입자: 17,000명×38천원×7개월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로 제도의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보험료 지원신청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아 보험 가입규모과 보험료 지원규모 간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또한, 현재는 고용보험료 지원방식이 소상공인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환급하는 사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향후 보험료를 사전에 차감하여 부과하도록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엄격하여[153] 보험 가입 유인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지원규모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고용보험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수혜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음.

15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 대비 최소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 요건이 엄격한 편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교>

구분	최소 가입기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최대 수급기간
임금근로자	6개월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악화 등	9개월
자영업자	12개월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발생 등	7개월

6.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

□ 사업 및 결산 개요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2002~, 보조・민간위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2024년도 계획현액은 4,206억 6,9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4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4,106억 1,900만원임. 동 사업은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온누리상품권발행’, ‘특성화시장육성’, ‘전통시장시설및안전관리’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시행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임.

2024년도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0,669	420,669	-	420,669	420,669 [410,619]	-	-	465,205
시장경영패키지지원	16,142	16,142	-	16,142	16,142 [15,686]	-	-	16,142
전통시장 홍보 및 조사평가	-	-	-	-	-	-	-	4,315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51,348	-	351,348	351,348 [343,994]	-	-	390,748
특성화시장육성	30,100	30,100	-	30,100	30,100 [29,573]	-	-	35,720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13,853	13,853	-	13,853	13,853 [12,381]	-	-	13,853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	-	-	-	-	-	-	4,427
전통시장홍보	2,906	2,906	-	2,906	2,906 [2,878]	-	-	-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5,620	5,620	-	5,620	5,620 [5,427]	-	-	-
조사 및 평가	700	700	-	700	700 [680]	-	-	-

□ 검토의견

(1) 온누리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금 집행 필요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154]으로, 2024년 말 기준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 실집행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	351,348	343,994	7,354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계획액 3,513억 4,800만원은 지류・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2024년 발행액 5조원)에 필요한 수수료 및 할인보전금 3,401억 2,000만원과 상품권 홍보・판촉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기타 운영비 112억 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역사업 예산 편성근거(2024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백만원
-(비할인판매, 지류) 0.8조원×발행·운영수수료 2.8%=22,400백만원
-(5%할인판매, 지류) 0.6조원×(발행·운영수수료 2.8%+할인보전금 5%)=46,800백만원
-(5%할인판매, 카드) 1.7조원×(발행·운영수수료 0.42%+할인보전금 5%)=92,140백만원
-(5%할인판매, 모바일) 0.5조원×(발행·운영수수료 1.0%+할인보전금 5%)=30,000백만원
-(10%할인판매, 카드) 0.9조원×(발행·운영수수료 0.42%+할인보전금 10%)=93,780백만원
-(10%할인판매, 모바일) 0.5조원×(발행·운영수수료 1.0%+할인보전금 10%)=55,000백만원
-(기타 운영비) 11,228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 보조금 실집행내역에 따르면, 사업시행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4년에 전국상인연합회[155] 및 광역자치단체별 지회에 대하여 약 10억 4,400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5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활성화
2.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보
3.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4.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6월)
전국상인연합회	100,000	95,000	100,000	50,000
서울지회	60,000	57,000	60,000	30,000
부산지회	60,000	57,000	57,570	30,000
인천지회	60,000	60,000	60,000	30,000
대구지회	60,000	55,210	57,220	28,500
광주지회	60,000	53,430	53,030	30,000
대전지회	60,000	58,610	60,000	30,000
울산지회	60,000	60,000	60,000	30,000
세종지회	21,215	19,630	20,540	16,840
경기지회	60,000	51,810	56,900	28,500
강원지회	60,000	59,870	58,540	30,000
충북지회	60,000	54,000	60,000	30,000
충남지회	60,000	54,000	59,120	30,000
전북지회	60,000	52,370	48,930	30,000
전남지회	60,000	58,440	52,600	30,000
경북지회	60,000	54,720	60,000	30,000
경남지회	60,000	59,860	59,390	30,000
제주지회	60,000	54,000	60,000	30,000
합계	**1,081,215**	**1,014,950**	**1,043,840**	**543,8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156] 온누리상품권 발행자로

1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상인회, 연합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2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157]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규정)[158]에 근거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와 지회에 판매촉진금을 지급[159]하고 있다고 설명함.

동 규정에 따라 판매촉진금을 지원받으려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회는 판매촉진금 집행계획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판매촉진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교부된 판매촉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을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상인연합회 및 각 지회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집행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일부 금액이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상인연합회의 사무실·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경상적인 운영비로 집행된 사례가 확인됨.

---

157)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0조(기타사항) ① 발행자는 상품권의 발행번호·제작·교부, 환전, 판매촉진·회수대행지원금, 상품권의 수거, 사고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58)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규정)
제16조(판매촉진금) ① 공단은 상품권 판매 촉진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국상인연합회와 광역자치단체 지회에게 상품권 판매촉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판매촉진금은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공단과 협의 하에 시장 등을 위한 재난구호 및 복구, 방역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홍보
2. 지역기업·기관 등에 상품권 구매 권유 등 판촉활동
3. 사용편의 제고를 위한 상인 교육
4. 상품권 판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상인연합회의 상품권 판촉활동 및 상품권사업 관련 교육
6.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159) 전국상인연합회에는 연간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각 지회에는 연간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함.

2024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집행내역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전국 상인 연합회	<판촉비> -간담회 및 회의비: 13,200,000원 -워크숍: 12,080,000원 <홍보비> -상품권 홍보 현수막: 1,450,000원 -언론 홍보(신문): 4,000,000원 -홍보용 전단지: 4,000,000원 -상품권 홍보 장바구니: 2,000,000원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6개월): 300,000원 -전화, 전기 등 공과금(6개월): 1,200,000원 -사무실 임대료(6개월): 3,420,000원 -컴퓨터 등 행정장비 임차료(6개월): 1,485,000원 -업무용 차량 임차료(6개월): 6,480,000원 -기타: 385,000원	<판촉비> -회의비: 6,000,000원 -출장비: 4,000,000원 <홍보비> -현수막, 배너 제작: 2,000,000원 -언론 홍보: 6,000,000원 -홍보물품 제작: 9,000,000원 -홍보용 전단지 등: 3,000,000원 <운영비> -공공요금(6개월): 600,000원 -사무실 임대료(6개월): 6,600,000원 -사무용품 임차료(6개월): 2,400,000원 -업무용 차량 임차료(6개월): 6,000,000원 -사무용품 구입비(6개월): 300,000원 -인쇄비: 3,500,000원
	-신청금액: 50,000,000원 -정산금액: 46,440,195원	-신청금액: 50,000,000원 -정산금액: 53,498,314원
서울 특별시 상인 연합회	<판촉비> -회의비 및 교통비: 359,000원 <홍보비> -현수막 및 배너 지원: 4,770,000원 -전광판 홍보: 4,000,000원 <운영비> -인건비(1인, 4개월): 4,800,000원 -컴퓨터 렌탈비(3개월): 825,000원 -사무실 임대료(6개월): 15,246,000원	<홍보비> -장바구니 제작: 3,645,000원 -달력 제작: 5,355,000원 <운영비> -인건비(1인, 4개월): 4,800,000원 -컴퓨터 렌탈비(3개월): 660,000원 -사무실 임대료(6개월): 15,246,000원 -정수기 렌탈비(6개월): 257,400원 -우편료: 36,600원
	-신청금액: 30,000,000원 -정산금액: 21,083,700원	-신청금액: 30,000,000원 -정산금액: 38,874,440원

주: 전국상인연합회와 서울지회의 집행내역을 대표 사례로서 제시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판매촉진금은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촉진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그 사용 용도는 상품권 가맹시장 확대 홍보, 상품권 사용편의 제고를 위한 상인 교육 등이고, 상품권 판매 촉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상인연합회 및 지회의 운영비로 사

용할 수 있음.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가 아닌 상인연합회 및 지회의 연간 사무실·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집기 이용료 등 경상적인 운영비 소요분 전액을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60]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임.

한편, 상인연합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상인연합회 및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는바, 2025년 11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법률[161]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및 지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86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66조(상인연합회)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인연합회 및 지회에 대하여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이 상품권 판매 촉진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이라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상인연합회 및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보조사업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자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 규모기준(국제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EU(권고안)
중소기업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800억원 이하	300명 또는 자본금 3억엔 (약 29억원)	종업원 500명~1,500명 미만	250명 미만&매출액 5천만 유로(약 811억원) 미만 또는 총자산 43백만 유로(약 698억원) 미만
	광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5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6백만불	
	건설업			매출액 6~28.5백만불 미만	
	도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100명 또는 자본금 1억엔 (약 9억원)	종업원 100명 미만	
	소매업		50명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약 5억원)	매출액 6~24.5백만불 미만	
	서비스업	매출액 800억원~400억원 이하	100명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약 5억원)	매출액 4~30백만불 미만	
소기업		제조업 120억~80억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 이하,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30억 이하, 이외 업종 10억 이하	소규모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20명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5명 미만		Small 기업 : 50명 미만 & 매출 또는 총자산 1천만 유로(약 162억원) 미만 Micro 기업 : 10명 미만 & 매출 또는 총자산 2백만 유로(약 32억원) 미만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4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정의

국제기구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
World Bank	300명	15백만불	15백만불
MIF-IADB(미주개발은행)	100명	3백만불	-
African Development Bank	50명	-	-
Asian Development Bank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없음		
UNDP(유엔개발계획)	200명	-	-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 창업·벤처</td><td>○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등
-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4년간(청년창업·청년창업벤처는 5년간) 취득세 75%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재산세 50~100%(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벤투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인이 벤투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10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의 5% 법인세 공제</td></tr>
<tr><td>□ 경영안정</td><td>○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1억원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table><tr><th>소기업</th><th>중기업</th></tr><tr><td>• 도매업·소매업·의료업(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td><td>•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일반서적 출판업 : 10%</td></tr></table>※ 장수성실기업은 10% 추가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일부(200~600만원) 공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td></tr>
<tr><td>□ 연구·인력개발</td><td>○ 연구·인력개발비의 25~50% 법인세(소득세) 공제
- 일반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30~40%,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40~50%, 그 밖의 경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름
○ 특허권 등 기술 취득금액의 10% 및 대여금액의 25%,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소득세) 공제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추후 익금 산입)
○ 연구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는 3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td></tr>
</table>

구 분	지 원 내 용
□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지식재산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기본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은 12%) + 투자증가분 10% 세액공제(추가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 후 국내 복귀 시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100%(50%) 감면
□ 고용	○ 상시근로자 등 고용증대 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수도권 내 1,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법인세(소득세) 공제 ○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 감면(200만원 한도) ○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 10%)를 법인세(소득세)공제
□ 상생협력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를 세액공제
□ 가업승계	○ 10년 이상 영위기업의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상당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0년 이상 영위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각 한도)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600억원 한도) 시 10억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120억원 초과시 20%) 저율과세
□ 구조조정 및 지방이전	○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취득세 50% 감면 ○ 수도권 밖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기업 현황

□ 연도별 중소기업현황

○ 기업 수 (2017~2022년)

(단위: 개,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 감 ('21~'22)
전체 기업	6,301,013	6,643,756	6,893,706	7,295,451	7,723,867	8,053,163	329,296 (4.3)
- 중소기업	6,296,210	6,638,694	6,888,435	7,286,082	7,713,895	8,042,726	328,831
(비중)	(99.9)	(99.9)	(99.9)	(99.9)	(99.9)	(99.9)	(4.3)
· 소상공인	5,875,091	6,199,980	6,441,928	6,924,292	7,335,397	7,656,718	321,321
(비중)	(93.3)	(93.4)	(93.5)	(95.0)	(95.1)	(95.2)	(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종사자 수 (2017~2022년)

(단위: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 감 ('21~'22)
전체 기업	20,094,913	20,591,641	21,543,534	21,935,003	22,865,491	23,410,899	545,408 (2.4)
- 중소기업	16,689,525	17,103,938	17,460,668	17,791,969	18,492,614	18,956,294	463,680
(비중)	(83.1)	(83.1)	(81.0)	(81.1)	(80.9)	(81.0)	(2.5)
· 소상공인	8,535,841	8,969,291	9,763,052	10,018,424	10,461,890	10,740,812	278,922
(비중)	(51.1)	(52.4)	(55.9)	(56.3)	(56.6)	(56.7)	(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주요업종의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전 체 (A+B+C)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기업 수	8,053,163	7,656,718	7,919,079	123,647	8,042,726	10,437
	(100.0)	(95.1)	(98.3)	(1.5)	(99.9)	(0.1)
제조업	633,182	562,672	615,971	14,395	630,366	2,816
(8.0)*	(100.0)	(88.9)	(97.3)	(2.3)	(99.6)	(0.4)
건설업	580,947	551,148	573,851	6,504	580,355	592
(7.1)*	(100.0)	(94.9)	(98.8)	(1.1)	(99.9)	(0.1)
서비스업	6,568,106	6,281,328	6,460,980	100,487	6,561,467	6,639
(81.7)*	(100.0)	(95.6)	(98.4)	(1.5)	(99.9)	(0.1)
기타	270,928	261,570	268,277	2,261	270,538	390
(3.2)*	(100.0)	(96.5)	(99.0)	(0.8)	(99.9)	(0.1)
종사자 수	23,410,899	10,740,812	14,653,019	4,303,275	18,956,294	4,454,605
	(100.0)	(45.9)	(62.6)	(18.4)	(81.0)	(19.0)
제조업	4,995,457	1,284,042	2,492,634	918,527	3,411,161	1,584,296
(21.5)*	(100.0)	(25.7)	(49.9)	(18.4)	(68.3)	(31.7)
건설업	2,235,903	954,309	1,425,286	494,947	1,920,233	315,670
(9.5)*	(100.0)	(42.7)	(63.7)	(22.1)	(85.9)	(14.1)
서비스업	15,686,848	8,215,889	10,366,348	2,822,102	13,188,450	2,498,398
(67.0)*	(100.0)	(52.4)	(66.1)	(18.0)	(84.1)	(15.9)
기타	492,691	286,572	368,751	67,699	436,450	56,241
(2.0)*	(100.0)	(58.2)	(74.8)	(13.7)	(88.6)	(11.4)

주: 각 업종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종사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주요국별 중소제조업 현황

(단위: 개, 천명)

구 분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비고
한국(Korea)	제조업 전체	633,182	4,995	2,623,433	Establishment
(2022년)	중소기업	630,366	3,411	834,623	10억원
	%	(99.6)	(68.3)	(31.8)	
일본(Japan)	제조업 전체	223,391	7,752	361.775	Establishment
(2022년)	중소기업	219,891	5,183	170,305	10억엔(億円)
	%	(96.3)	(66.9)	(47.1)	
대만(Taiwan)	제조업 전체	149,227	3,001	18,320,412	Enterprise
(2023년)	중소기업	143,665	2,017	5,073,771	백만원(百萬元)
	%	(96.3)	(67.2)	(27.7)	
미국(U.S.)	제조업 전체	238,851	11,710	-	Firm
(2021년)	중소기업	234,931	4,807	-	
	%	(98.3)	(41.0)	-	

주: 1. 한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1인이상 기업체 대상이며,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상이함.
2. 일본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4~299인 사업체 대상이며, 매출액은 출하액 기준임.
3. 대만의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 1억 NT$ 미만 기업체 대상임.
4. 미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500인 미만 기업체 대상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4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경영지표분석(제조업)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기자본비율	전체	52.84	53.97	55.49	56.50	57.62	57.64	56.73	56.01	56.51	56.86
	중소기업	38.69	39.67	41.55	42.07	42.27	41.46	43.46	43.50	44.40	45.60
	대 기 업	58.44	58.92	60.89	61.92	63.01	63.17	61.91	60.54	60.81	60.88
부채비율	전체	89.24	85.28	80.20	76.99	73.55	73.49	76.27	78.55	76.95	75.87
	중소기업	158.46	152.09	140.65	137.72	136.60	141.17	130.10	129.87	125.21	119.30
	대 기 업	71.12	69.72	64.24	61.51	58.69	58.29	61.53	65.19	64.44	64.27
차입금의존도	전체	25.30	24.92	23.69	22.68	22.28	22.78	23.43	22.61	22.13	22.49
	중소기업	40.62	41.00	38.78	38.60	39.06	39.92	38.48	38.11	37.55	36.52
	대 기 업	19.99	19.84	18.41	17.19	16.71	17.25	17.84	17.13	16.78	17.66
부가가치율	전체	21.12	24.00	25.61	26.53	26.16	24.28	25.58	25.89	23.60	21.79
	중소기업	25.23	26.43	27.24	26.64	27.33	27.05	27.56	26.99	26.55	26.22
	대 기 업	18.73	22.24	24.37	26.11	25.64	22.31	23.87	25.39	22.37	19.40
총자산증가율	전체	3.97	4.04	5.07	6.49	5.13	3.27	5.91	10.38	7.54	6.93
	중소기업	7.82	7.85	7.92	6.49	6.00	6.82	7.43	9.84	7.39	6.07
	대 기 업	2.53	2.63	3.82	6.34	4.71	2.09	4.98	9.55	7.18	7.24
자기자본증가율	전체	6.24	5.94	7.49	8.92	7.38	3.12	5.02	9.03	8.24	7.43
	중소기업	9.54	11.11	10.72	9.20	8.93	8.07	8.84	11.21	8.53	8.33
	대 기 업	4.55	4.33	6.71	8.73	6.61	1.85	3.71	7.95	7.44	7.25
매출액증가율	전체	-1.58	-2.82	-0.55	9.01	4.00	-1.72	-2.34	18.10	14.63	-2.27
	중소기업	7.72	3.83	3.01	5.89	2.92	2.89	1.83	13.58	10.82	2.15
	대 기 업	-3.98	-5.60	-2.54	9.65	4.57	-3.29	-4.21	19.67	15.76	-3.89

주: 1. 2015~16년 전체 및 대기업 자료는 갱신되어 이전 발표수치와 다름.
2. 2016년부터 중소기업은 모집단 기준변경으로 인해 이전수치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전체 및 대기업 수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 수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영지표」

4. 창업기업 현황

□ 신규 창업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계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형태	개인	1,361,362	1,291,068	1,203,590	1,140,323	1,083,150
	법인	123,305	126,905	113,889	98,294	99,755
성별	남성	790,241	756,441	711,637	673,891	645,855
	여성	693,927	660,616	604,425	562,750	532,357
	확인불가	499	916	1,417	1,976	4,69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 전체 창업기업 현황

○ **(기업 수)** '22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업력 7년 이하)는 4,829,665개

○ **(매출)** '22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매출은 1,186.1조원

○ **(종사자 수)** '22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는 8,514,549명

*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조사방식 변경(행정자료&조사확인 자료 → 행정자료, '23.12)에 따라 2021년 이전의 통계와 시계열 분석이 불가

5. 벤처기업 현황

□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증가			감소				증감	연말 (월말)
	신규	재확인	소계	기간 만료	휴폐업	기타 (취소 등)	소계		
1998년	2,049	-	2,049	-	3	4	7	2,042	2,042
1999년	3,676	33	3,709	729	63	25	817	2,892	4,934
2000년	5,532	1,055	6,587	2,601	62	60	2,723	3,864	8,798
2001년	3,914	2,479	6,393	3,489	221	89	3,799	2,594	11,392
2002년	1,672	4,781	6,453	8,419	261	387	9,067	-2,614	8,778
2003년	1,272	2,945	4,217	5,113	145	35	5,293	-1,076	7,702
2004년	1,886	2,718	4,604	4,221	100	18	4,339	265	7,967
2005년	2,823	2,957	5,780	3,935	62	18	4,015	1,765	9,732
2006년	4,127	2,955	7,082	4,467	59	70	4,596	2,486	12,218
2007년	5,286	3,952	9,238	7,274	163	4	7,441	1,797	14,015
2008년	6,276	8,243	14,519	13,123	2	8	13,133	1,386	15,401
2009년	7,762	10,184	17,946	14,351	-	103	14,454	3,492	18,893
2010년	6,899	6,647	13,546	7,776	-	18	7,794	5,752	24,645
2011년	6,369	7,436	13,805	12,238	-	64	12,302	1,503	26,148
2012년	6,574	7,847	14,421	12,340	-	36	12,376	2,045	28,193
2013년	6,326	8,830	15,156	14,097	45	72	14,214	942	29,135
2014년	5,500	9,524	15,024	14,007	1	241	14,249	775	29,910
2015년	6,681	10,096	16,777	15,220	-	207	15,427	1,350	31,260
2016년	6,837	10,084	16,921	14,606	182	33	14,821	2,100	33,360
2017년	7,419	11,298	18,717	16,434	175	186	16,795	1,922	35,282
2018년	6,827	11,587	18,414	16,742	121	13	16,876	1,538	36,820
2019년	6,194	12,870	19,064	18,821	45	10	18,876	188	37,008
2020년	6,992	13,902	20,894	18,310	67	14	18,391	2,503	39,511
2021년	5,910	12,042	17,952	19,127	1	16	19,144	-1,192	38,319
2022년	5,308	12,200	17,508	20,603	48	53	20,704	-3,196	35,123
2023년	5,176	3,540	8,716	3,180	242	336	3,758	4,958	40,081
2024년	4,988	8,403	13,391	14,533	298	425	15,256	-1,865	38,216
2025년 6월	2,367	6,087	8,454	8,954	122	175	9,251	-797	37,41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별 현황('25.6월)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업체수	10,772	1,615	452	1,200	1,295	663	683	1,504	1,218	12,004	1,757	670	913	863	1,335	276	199	37,419
비율(%)	28.8	4.3	1.2	3.2	3.5	1.8	1.8	4.0	3.3	32.1	4.7	1.8	2.4	2.3	3.6	0.7	0.5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단위: 개, %)

연도별	현황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6
벤처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38,319	35,123	40,081	38,216	37,419
Inno-biz	16,243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18,920	20,205	21,392	22,383	22,902	23,056
Main-biz	16,642	17,558	14,867	12,606	12,001	13,898	14,841	15,230	16,733	18,017	19,078	20,313	21,659	22,892	23,973	24,452
계	**57,530**	**60,650**	**60,358**	**58,821**	**58,789**	**62,630**	**65,909**	**68,603**	**71,646**	**73,370**	**77,509**	**78,837**	**78,174**	**85,356**	85,091	84,927
중복업체 (중복률)	14,393 (25.0)	14,348 (23.7)	13,216 (21.9)	11,485 (19.5)	11,841 (20.1)	11,897 (19.0)	12,195 (18.5)	12,042 (17.6)	12,448 (17.4)	12,786 (17.4)	14,156 (18.2)	15,403 (19.5)	16,294 (20.8)	18,245 (21.4)	14,511 (17.1)	13,883 (16.3)
합계 (중복제외)	**43,137**	**46,302**	**47,142**	**47,336**	**46,948**	**50,733**	**53,714**	**56,561**	**59,198**	**60,584**	**63,353**	**63,434**	**61,880**	**67,111**	67,276	67,756

주: 1. 중복현황('25.6) : 벤처+이노(10,188), 벤처+메인(4,769), 이노+메인(5,502), 벤처+이노+메인(3,288)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06.7월부터 시행
3. '11년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통계는 휴폐업기업 등을 일부 미반영

□ 업종별 현황 ('25.6월말 기준)

○ 총 괄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48,471	11,004	1,866	4,631	8,223	219	10,513	84,927
비율	57.1	13.0	2.2	5.5	9.7	0.3	12.4	100.0

주: 기타(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인증 유형별

<벤처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20,861	8,267	1,515	928	1,631	172	4,045	37,419
비율	55.7	22.1	4.0	2.5	4.4	0.5	10.8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15,219	2,737	-	686	1,629	47	2,738	23,056
비율	66.0	11.9	-	3.0	7.1	0.2	11.9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메인비즈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 광업	기타	계
업체수	12,391	-	351	3,017	4,963	-	3,730	24,452
비율	50.7	-	1.4	12.3	20.3	-	15.3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 수

○ 전 기업 수의 95.1%(765만개), 종사자 수의 45.9%(1,074만명)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소상공인	비중	소기업	비중	중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기업체	8,053,163	7,656,718	95.1	7,919,079	98.3	123,647	1.5	8,042,726	99.9
종사자	23,410,899	10,740,812	45.9	14,653,019	62.6	4,303,272	18.4	18,956,294	8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2022

□ 업종별 분포

○ 도·소매업(26.2%)과 음식·숙박업(11.0%)이 약 37.2% 차지

(단위: 개, 명, %)

구분	기업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全) 산업	7,656,718	100.0	10,740,812	100.0
도·소매업	2,007,388	26.2	2,696,084	25.1
부동산업	1,210,551	15.8	1,314,911	12.2
음식·숙박업	841,639	11.0	1,343,746	12.5
운수·창고업	658,227	8.6	751,670	7.0
제조업	562,672	7.3	1,284,042	12.0
건설업	551,148	7.2	954,309	8.9
기타	1,825,093	23.8	2,396,050	22.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2022

□ 업종별 기업규모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전체 (A+B+C)	중 소 기 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전산업		**8,053,163 (100.0)**	**7,656,718 (95.1)**	**262,361 (3.3)**	**123,647 (1.5)**	**8,042,726 (99.9)**	**10,437 (0.1)**
A	농업,임업 및 어업	110,990 (100.0)	106,449 (95.9)	4,128 (3.7)	337 (0.3)	110,914 (99.9)	76 (0.1)
B	광업	2,492 (100.0)	2,228 (89.4)	153 (6.4)	98 (3.9)	2,479 (99.5)	13 (0.5)
C	제조업	633,182 (100.0)	562,672 (88.9)	53,299 (8.7)	14,395 (2.3)	630,366 (99.5)	2,816 (0.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43,846 (100.0)	143,387 (99.7)	207 (0.1)	58 (0.0)	143,652 (99.9)	194 (0.1)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600 (100.0)	9,506 (69.9)	2,219 (18.9)	1,768 (13.0)	13,493 (99.2)	107 (0.8)
F	건설업	580,947 (100.0)	551,148 (94.9)	22,703 (4.0)	6,504 (1.1)	580,355 (99.9)	592 (0.1)
G	도매 및 소매업	2,098,966 (100.0)	2,007,388 (95.6)	52,654 (2.6)	37,285 (1.8)	2,097,327 (99.9)	1,639 (0.1)
H	운수 및 창고업	668,169 (100.0)	658,227 (98.5)	7,091 (1.1)	2,386 (0.4)	667,704 (99.9)	465 (0.1)
I	숙박 및 음식점업	884,625 (100.0)	841,639 (95.1)	29,819 (3.4)	13,015 (1.5)	884,473 (100.0)	152 (0.0)
J	정보통신업	194,334 (100.0)	174,324 (89.7)	15,986 (8.4)	3,199 (1.6)	193,509 (99.6)	825 (0.4)
K	금융 및 보험업	62,789 (100.0)	58,979 (93.9)	2,112 (3.5)	739 (1.2)	61,830 (98.5)	959 (1.5)
L	부동산업	1,224,897 (100.0)	1,210,551 (98.8)	6,717 (0.6)	6,338 (0.5)	1,223,606 (99.9)	1,291 (0.1)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11,356 (100.0)	278,417 (89.4)	26,253 (8.6)	6,144 (2.0)	310,814 (99.8)	542 (0.2)
N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5,847 (100.0)	167,357 (90.1)	13,572 (7.5)	4,433 (2.4)	185,362 (99.7)	485 (0.3)
P	교육서비스	272,248 (100.0)	264,952 (97.3)	4,423 (1.6)	2,809 (1.0)	272,184 (100.0)	64 (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649 (100.0)	53,520 (63.2)	12,596 (19.1)	18,512 (21.9)	84,628 (100.0)	21 (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1,202 (100.0)	157,436 (97.7)	2,991 (1.9)	628 (0.4)	161,055 (99.9)	147 (0.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9,024 (100.0)	408,538 (97.5)	5,438 (1.3)	4,999 (1.2)	418,975 (100.0)	49 (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통계」, 2022

8. 전통시장 현황

□ 전국 1,393개 시장, 22.7만개 점포, 상인 30.9만명

*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자료('23)

○ 연도별 현황 : ('18) 1,437개→('19) 1,413개→('20) 1,401개→
('21) 1,408개→('22) 1,388개→('23) 1,393개

○ 점포 수

(단위: 개, %)

구분	전체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노점
			빈점포	기타 점포 (창고, 사무실 등)	
점포 수	226,995 (100.0)	171,529 (75.6)	22,846 (10.1)	4,539 (2.0)	28,081 (1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상인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종사자		노점상인
		점포상인	종업원	
상인 수	308,697 (100.0)	171,529 (55.6)	109,087 (35.3)	28,081 (9.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연도별 매출액

(단위: 조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액	19.9	20.1	21.1	21.8	22.6	23.9	25.8	25.1	25.3	25.3	28.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024년 12월 기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예산	예산비중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035,800	44.6	2,035,800	9,505	214
신성장기반자금	1,488,750	32.6	1,488,750	2,048	72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34,370	5.1	234,370	1,288	182
긴급경영안정자금	235,000	5.1	235,000	1,190	197
재도약지원자금	571,800	12.5	571,800	1,726	331
합계	4,565,720	100.0	4,565,720	15,757	29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직대/대리, 신용/담보, 시설/운전 지원액(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직대	대리	신용	담보	시설	운전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84,023	351,777	1,392,443	643,357	725,803	1,309,997	2,035,800
신성장기반자금	838,938	649,812	543,865	944,885	1,122,968	365,782	1,488,75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34,370	0	234,370	0	5,397	228,973	234,370
긴급경영안정자금	235,000	0	235,000	0	0	235,000	235,000
재도약지원자금	423,848	147,952	403,430	168,370	200,986	370,814	571,800
합계	3,416,179	1,149,541	2,809,108	1,756,612	2,055,154	2,510,566	4,565,7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지원 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63,778	558,469	521,611	467,221	88,629	55,320	34,887	45,886	2,035,800
신성장기반자금	31,925	27,937	43,199	48,218	220,847	377,343	237,834	501,447	1,488,75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680	17,169	17,972	18,300	33,771	48,506	31,980	64,992	234,370
긴급경영안정자금	450	5,670	16,006	21,433	46,554	53,878	31,227	59,782	235,000
재도약지원자금	5,490	35,066	47,313	64,562	79,594	121,984	81,447	136,344	571,800
합계	303,323	644,311	646,100	619,734	469,395	657,031	417,375	808,451	4,565,7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지원 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73,503	123,405	98,350	86,961	65,134	47,421	61,588	478,072	55,195
신성장기반자금	161,135	95,278	75,626	84,045	59,688	39,730	50,550	333,502	41,844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0,330	15,200	11,000	9,550	7,921	4,000	6,950	54,970	7,150
긴급경영안정자금	68,614	9,796	7,565	6,306	9,980	5,145	3,550	55,296	3,550
재도약지원자금	72,820	33,100	25,120	34,198	14,350	13,475	17,147	127,000	18,500
합계	606,402	276,779	217,661	221,060	157,073	109,771	139,785	1,048,840	126,239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01,258	85,475	81,299	80,102	163,349	201,182	19,750	13,755	2,035,800
신성장기반자금	70,108	74,283	65,198	46,741	126,055	149,229	9,739	6,000	1,488,75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2,150	13,450	9,249	7,750	19,750	22,250	1,900	800	234,370
긴급경영안정자금	7,267	8,709	8,987	7,384	16,660	14,441	1,400	350	235,000
재도약지원자금	25,850	29,100	21,800	24,650	47,190	60,025	4,550	2,925	571,800
합계	216,633	211,017	186,534	166,627	373,005	447,127	37,339	23,830	4,565,7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지원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5인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718,722	483,212	438,374	285,997	79,172	29,023	1,300	2,035,800
신성장기반자금	136,433	193,573	327,226	486,291	225,459	110,763	9,004	1,488,75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4,999	49,947	53,179	59,445	20,400	5,600	800	234,370
긴급경영안정자금	45,506	64,297	58,816	52,422	9,505	4,454	-	235,000
재도약지원자금	76,391	86,676	127,107	183,358	65,743	31,825	700	571,800
합계	1,022,051	877,705	1,004,702	1,067,514	400,279	181,665	11,804	4,565,7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공급액(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공급 목표	공급 비중	공급액	건수	건별 평균 공급액	이차보전 예산	집행 예산
신성장기반자금	266,267	28.8	266,267	671	397	20,194	19,576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28,000	24.7	228,000	533	428	11,130	11,130
혁신창업사업화자금	430,000	46.5	148,073	753	197	12,000	4,170
합계	924,267	100.0	642,340	1,957	328	43,324	34,8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200	1,700	3,600	5,188	37,670	63,260	46,279	108,370	266,26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00	3,500	7,525	11,070	22,891	47,449	37,165	97,900	228,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951	16,500	18,605	23,422	33,922	16,691	35,982	148,073
합계	700	8,151	27,625	34,863	83,983	144,631	100,135	242,252	642,3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신성장기반자금	32,280	17,900	14,300	13,100	9,900	6,800	7,650	59,437	8,3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7,700	14,200	10,300	9,600	8,400	4,800	6,900	52,200	7,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8,308	6,337	4,213	7,650	3,454	12,303	2,341	48,364	1,786
합계	88,288	38,437	28,813	30,350	21,754	23,903	16,891	160,001	17,086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12,300	11,200	11,200	9,000	20,800	27,900	2,000	2,200	266,26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1,900	11,200	9,900	7,600	20,000	22,300	2,000	2,000	228,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895	7,048	4,568	2,554	4,697	7,703	400	3,452	148,073
합계	27,095	29,448	25,668	19,154	45,497	57,903	4,400	7,652	642,3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5인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10,980	35,857	77,665	101,873	32,642	7,250	-	266,26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870	25,375	53,449	88,356	28,950	10,500	500	228,0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985	27,751	38,576	43,098	14,761	5,902	1,000	148,073
합계	48,835	88,983	169,690	233,327	76,353	23,652	1,500	642,3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억원)

변경 시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사유
		변경전	증감	변경후	
'24.8.2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	17,958	400	18,358	초격차·신산업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대상 스타트업 자금애로 해소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글로벌화)	1,005	500	1,505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변동성 증가로 인한 中企 수출애로 해소
	재도약지원자금(융자) (구조개선전용자금)	1,193	400	1,593	복합위기 취약 중소기업 증가 대응을 위한 경영정상화 지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혁신성장지원)	8,061	300	8,361	제조업 생산설비 확충 및 신산업분야 투자 가속화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	800	2,300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밸류체인안정화자금(융자)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382	300	682	높은 단기 유동성 수요 및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증액
	재도약촉진 (구조개선촉진)	23	8	31	구조개선전용자금 증액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수립 경비 증액
	중진기금기본경비 (중진기금기본경비)	291	4	295	추가 융자집행을 위한 평가경비 및 채권발행 수수료 등 증액
'24.11.28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300	50	2,350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피해를 입은 재해 피해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글로벌화)	1,505	△50	1,45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025년 6월 기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예산	예산비중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성장기반자금	970,000	22.7	495,560	9,100	54
일반경영안정자금	1,360,000	31.9	1,352,562	37,026	37
특별경영안정자금	1,840,000	43.1	1,157,429	40,604	29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00	2.3	-	-	-
합계	4,270,000	100.0	3,005,551	86,730	3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직대/대리, 신용/담보, 시설/운전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직대	대리	직대		대리		합계
			시설	운전	보증서	신용/담보	
성장기반자금	353,805	141,755	250	353,555	85,717	56,038	495,560
일반경영안정자금	-	1,352,562	-	-	1,187,036	165,527	1,352,562
특별경영안정자금	773,949	383,480	-	773,949	238,946	144,533	1,157,429
상생성장지원자금	-	-	-	-	-	-	-
합계	1,127,754	1,877,797	250	1,127,504	1,511,699	366,098	3,005,55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성장기반자금	40,527	123,167	99,911	65,923	53,114	51,247	25,574	36,098	495,560
일반경영안정자금	122,713	328,825	210,480	174,223	190,070	164,517	78,634	83,100	1,352,562
특별경영안정자금	203,672	351,909	192,905	141,780	97,470	82,048	44,571	43,073	1,157,429
상생성장지원자금	-	-	-	-	-	-	-	-	-
합계	366,912	803,901	503,296	381,927	340,654	297,812	148,778	162,271	3,005,55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성장기반자금	59,629	38,025	35,702	17,111	21,145	7,441	8,115	125,557	27,701
일반경영안정자금	47,129	84,051	82,769	43,289	37,868	23,902	20,448	455,754	58,540
특별경영안정자금	138,656	77,090	53,824	54,218	38,122	29,241	21,841	306,741	37,901
상생성장지원자금	-	-	-	-	-	-	-	-	-
합계	245,414	199,166	172,295	114,618	97,135	60,584	50,403	888,051	124,142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성장기반자금	13,880	21,783	14,210	19,703	31,828	41,628	7,508	4,595	495,560
일반경영안정자금	38,898	90,937	75,419	99,489	65,509	98,187	15,276	15,099	1,352,562
특별경영안정자금	34,587	44,640	55,417	47,971	111,023	79,036	19,419	7,702	1,157,429
상생성장지원자금	-	-	-	-	-	-	-	-	-
합계	87,365	157,360	145,045	167,162	208,360	218,851	42,203	27,396	3,005,55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5인 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합계
성장기반자금	448,404	44,881	2,275	-	-	-	-	495,560
일반경영안정자금	1,343,499	8,699	294	70	-	-	-	1,352,562
특별경영안정자금	1,146,333	10,036	1,060	-	-	-	-	1,157,429
합계	2,938,236	63,616	3,629	70	-	-	-	3,005,55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해당없음

11. 신보, 기보, 지신보의 보증대상 및 한도, 총 보증금액 비교

(2025.6월말 기준)

구분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설립시기		'96.3～'21.11	'76.6	'89.4
보증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수출 중소기업 등	혁신형기업
보증한도		8억원	30억원	30억원
건별 보증금액		0.23억원	2.01억원	2.12억원
점유율	금액	32.1%(43.6조)	46.4%(62.9조)	21.5%(29.2조)
	건수	81.4%(192.6만건)	12.8%(30.3만건)	5.8%(13.8만건)

* 지역신보 : 일반보증 기준 (햇살론 제외)　　** 신보·기보 : 일반보증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